

기억, 추모 그리고 진실을 향한 다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일시 : 2023. 10. 23. (월) 10:00~12:00

장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주최 :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프로그램 (사회 : 양성우 변호사)

## 1 개회사 및 인사말

- 이정민 -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한상희 -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 / 참여연대 공동대표
- 조영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윤복남 부회장 대독)

## 2 주요 진상규명과제 총론 발표 : 최희천 박사

## 3 정부기관별 주요 진상규명과제 발표

- 경찰(1) : 신재운 변호사
- 경찰(2) : 전수진 변호사
- 소방, 보건복지부(응급의료) : 천윤석 변호사
- 행정안전부 : 임한결 변호사
- 서울특별시 : 백민 변호사
- 용산구 : 최종연 변호사

## 4 피해자 지원대책의 한계와 과제 : 조인영 변호사

## 5 질의응답



##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순서

---

- 사회

양성우 | 민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

---

- 인사말

이정민 |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한상희 |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참여연대 공동대표

조영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 주요 진상규명과제 총론 발표 주요 | 최희천 박사

---

- 정부기관별 주요 진상규명과제 발표

---

경찰(1) | 신재운 변호사

경찰(2) | 전수진 변호사

소방, 보건복지부 | 천윤석 변호사

행정안전부 | 임한결 변호사

서울특별시 | 백민 변호사

용산구 | 최종연 변호사

---

- 피해자 지원대책의 한계와 과제 : 조인영 변호사

---

- 질의응답

---

## [인사말]

### 우리의 애도할 권리를 위하여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의 분향소 뿐만 아니라, 이 서울이라는 도시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강역 도처에서 참사 희생자들의 영령들을 봅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들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해 주겠노라 다짐했던 바로 그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주기를 맞이하는 오늘은 너무도 부끄럽고 참담한 심경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시간이 지나도록 그들과 우리를 위해 이루어놓은 것이 너무도 없습니다. 참사로 인한 정치적, 행정적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하는지, 그 아픔을 덜기 위한 조치는 어떠한지, 재발방지책인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등 숏한 과제들이 미완의 상태로 방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최우선적으로 규명되어야 하는 참사의 진상은 아직도, 아니 처음부터 은폐, 옹호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입니다. 아니, 근대 이래 국가를 만들고 그에게 최고의 권력을 부여한 궁극의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자신이 져야 하는 이러한 존재목적에 내팽개쳐 왔습니다. 실제 이 의무에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사후 구조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참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혀 응분의 조치를 하는 것에서부터 피해를 구제하고 배보상하며, 재발방지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그 의무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그에 상응하여 피해자나 유가족들은 물론 사회구성원들에게는 국가에 대하여 그러한 일련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가집니다. 아니, 의무와 권리를 따지기 전에, 바로 그렇게 함이 이 시대 우리가 져야 하는 절박한 윤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남은 자의 도리를 말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실, 아직도 숨겨져 있는 진실들을 찾아내어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구성해내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 패널들이 진실의 작은 조각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못 했고 무엇을 해야 했었는지 말할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항목들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과 살아남게 된 우리 모두의 슬픔이고 아픔일 것입니다. 더불어 그것은 이 무책임하며 그래서 부도덕한

정부를 향한 분노와 저항의 외침이 됩니다.

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한 우리의 애도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보고회를 바탕으로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그 애도의 길을 열 것입니다. 애도할 권리를 위한 이 절박한 경로에 모든 이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찾아온 10.29를 맞이하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의 슬픔과 아픔을 같이 하는 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 가열찬 연대의 의지를 전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 /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 [인사말]

### 진상규명과제 보고회를 맞이하여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의 빛 바랜 영정사진을 보며 참담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처럼 무책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진상 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무심하게 1주기를 맞을 수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민변과 시민대책회의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조금이라도 타개하고 진상규명을 더 진전시키기 위해 진상규명 추가 조사과제가 무엇인지, 몇 개월 동안 자료를 검토하고, 숙의를 거친 끝에 이번 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책임 규명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추후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조사과제 또한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보고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부족한 작업결과물이 나와 발표합니다.

일각에서는 국회 국정조사도 하였고, 경찰 특수본 수사도 하였으며, 법원에서 재판도 하고 있으니 진상조사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특별법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번 보고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진상규명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지, 왜 유가족들이 지금까지의 진상조사가 부족하게 느끼고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변해야 합니다. 사회적 참사와 재난 대책 마련에는 여도 야도, 보수도 진보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지혜를 모아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향후 재발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 속에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상조사 여정에 첫걸음을 떼는 마음으로 이번 보고회를 준비했습니다. 향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의견들이 모여 더 심도깊고 명확하게 진상조사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 영 선

## -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조사과제 보고서 차례 -

### I. 주요 진상규명과제 총론.....8

#### 1.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추가 조사의 기준 / 8

- 가. (참사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기존 조사들의 한계
- 나. 추가과제 조사 시 판단의 핵심 준거기준: '인명피해 최소화'의 기여

#### 2. 추가조사과제의 구성 및 개요 / 10

- 가. 기존 인파사고 대비체계 및 전년도까지의 헬러윈 축제 대비체계
- 나. 10.29. 헬러윈 축제 인파사고 위험 예측·사전 인지 및 대비
- 다. 참사 당일 현장위험이 무시, 간과된 과정과 이유
- 라. 희생자들의 피해가 확대된 과정과 이유
- 마. 정부 기관들의 각 대응 활동(피해 최소화 관점)
- 바. 희생자들의 사망판정, 임시안치, 장례식장 이송, 신원확인 과정
- 사. 피해자의 2차 피해 및 권리침해
- 아. 지역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 II. 경찰에 대한 추가조사과제.....20

- 1. 경찰조직의 수장인 경찰청장의 용인될 수 없는 무능과 무책임
- 2. 참사 전·후 서울경찰청장의 대응은 적절했나
- 3. 골든타임이 중요했던 참사 초기, 용산경찰서장은 왜 느장대응을 하고 있었나
- 4. 예년과 달리 참사 당일 이태원에 정보관이 파견되지 않은 이유는
- 5.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은 헬러윈 데이 대비 보고서를 확인하였나
- 6. 용산경찰서 작성 정보보고서는 서울경찰청/경찰청에 보고되었나
- 7. 헬러윈 데이 대비 정보보고서를 보고받았음에도 조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참사 직후 조직적으로 보고서를 은폐한 이유는
- 8. 서울경찰청장은 왜 헬러윈 데이 사전 대비를 하지 않았나
- 9. 그동안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대비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해명은 사실인가
- 10. 대통령실 이전이 경찰 배치 등 안전사고 대비에 영향을 미쳤는가

### III. 소방 및 보건복지부(응급의료)에 대한 추가조사과제.....70

- 1. 현장의 눈이 되었어야 할 영상 송출 시스템은 왜 먹통이었나

2. 1조 5천억의 사업비가 투입된 재난안전통신망은 왜 무용지물이 되었나
3. 구조 및 응급조치 지연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4. 희생자들은 생사의 기로에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았나
5. 중증분류 및 병원이송조치, 사망 판정 등에서의 의문점들
6. 참사 당시 신속한 응급의료체계가 작동하였나
7. 참사 당일 용산소방서 책임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 IV. 행정안전부에 대한 추가조사과제.....86

1. 국가재난대응체계의 총책임자로서 참사 예방·대비에 관하여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2. “상황관리 철저”라는 추상적 지시 외에 참사 발생 전·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였나
3. 기타 추가조사 과제

#### V. 서울특별시에 대한 추가조사과제 .....97

1. 인파 운집에 따른 참사 징후를 조기에 확인하거나 대처하는데 실패한 이유
2. 서울시는 참사 대응 과정에서 무엇을 하였나
3. 6호선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는 왜 이루어지지 않았나, 무정차 통과했다면 무엇이 달라졌나

#### VI. 용산구에 대한 추가조사과제.....112

1. 헬러윈 데이 인파 밀집을 예견하고도 왜 안전대책에 소홀했나
2. 초기 재난 대응 실패와 임시영안소 운영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3. 참사 발생 후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 운영 경위

#### VII. 피해자지원에 대한 추가조사과제.....125

1. 유가족에 대한 정보제공이 지연된 문제점
2. 유가족의 신원확인 및 시신인도 과정에서의 문제점
3. 참사 직후 유가족 지원의 문제점
4. 피해자지원체계의 문제점
5.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혐오표현으로 인한 2차가해

## 10·29 이태원참사 추가조사과제 보고서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되어가는 지금,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2022. 11. 24.부터 2023. 1. 17.까지 국회에서 진행된 ‘용산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와 이에 따른 책임의 내용이 밝혀지기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진상규명이 필요한 많은 과제들이 도출되고 있다. 참사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각 기관별로 무엇을 했어야 했는지, 무엇을 했고 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은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는 무엇인지, 참사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피해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었는지 되짚어보고,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정리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참사가 남긴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온전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피해자지원을 위한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번 진상규명과제 보고회를 통해 재난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존재의의를 누구에게 어떻게 물어야 할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참사 발생 이전의 재난 예방 단계, 참사 발생 전후 대비와 대응 및 이후 복구 단계에서 관련 기관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총론에서 확인하고, 이후 경찰, 소방 및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등 각 기관별로 그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고 수행하였는지, 기관별 진상규명과제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었고, 피해자 지원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본 추가조사과제 보고서의 작성과 검토에는 민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의 상당한 노력이 들어 있다. 본 보고서의 실무총괄을 맡은 TF 간사 양성우 변호사, 기관별



과제의 작성과 검토에 참여한 TF 구성원들과 최희천 박사의 헌신적인 내용정리와 지원, 여러 감수위원들의 조언과 의견 등이 함께 한 결과이다. 이 자리를 빌어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TF는 앞으로도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 추궁 및 재발방지를 위한 온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10.29 이태원 참사를 과거의 사건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안전 사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도리이자 책무이다.

2023년 10월 23일

민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단장 윤복남

## ■ 기존 조사 주요 타임라인

일자	조사명	주요 일정
2022. 11. 1. - 2023. 1. 13.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	2023. 11. 1. 출범 2023. 1. 13. 수사결과 보고
2022. 11. 24. - 2023. 1. 17.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정조사” )	2022. 11. 24. 제1차 전체회의 2022. 12. 19. 제2차 전체회의 2022. 12. 21. 현장조사 (1차) 2022. 12. 23. 현장조사 (2차) 2022. 12. 27. 제3차 전체회의 - 기관보고 (1차) 2022. 12. 29. 제4차 전체회의 - 기관보고 (2차) 2023. 1. 4. 제5차 전체회의 - 국정조사 청문회 (1차) 2023. 1. 6. 제6차 전체회의 - 국정조사 청문회 (2차) 2023. 1. 10. 제7차 전체회의 - 국정조사 공청회 (1차) 2023. 1. 12. 제8차 전체회의 - 국정조사 공청회 (2차) 2023. 1. 17.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
2023. 1. 26. - 현재	이임재, 송병주, 박인혁, 최용원, 정현우 공판(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합25, 이하 “이임재 외 공판” )	2023. 1. 26. 공소장 접수 2023. 3. 17. 제1회 공판준비기일 2023. 4. 10. 제2회 공판준비기일 2023. 5. 8. 제1회 공판기일 2023. 6. 12. 제2회 공판기일 2023. 7. 10. 제3회 공판기일 2023. 8. 21. 제4회 공판기일 2023. 9. 11. 제5회 공판기일 2023. 10. 30. 제6회 공판기일(예정)
2023. 1. 26. - 현재	박희영, 유승재, 문인환, 최원준 공판(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합26, 이하 “박희영 외 공판” )	2023. 1. 26. 공소장 접수 2023. 3. 17. 제1회 공판준비기일 2023. 4. 17. 제2회 공판준비기일 2023. 5. 15. 제1회 공판기일 2023. 6. 26. 제2회 공판기일 2023. 7. 17. 제3회 공판기일 2023. 8. 28. 제4회 공판기일

		2023. 9. 18. 제5회 공판기일 2023. 11. 6. 제6회 공판기일(예정)
2023. 1. 27. - 현재	이상용, 안준혁, 박정근, 해밀 톤관광(주), (주)디스트릭트 공 판(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 172, 이하 “이상용 외 공 판” )	2023. 1. 27. 공소장 접수 2023. 3. 10. 제1회 공판기일 2023. 4. 5. 제2회 공판기일 2023. 7. 14. 제3회 공판기일 2023. 9. 6. 제4회 공판기일 2023. 11. 29. 선고기일(예정)
2023. 2. 6. - 2023. 7. 5.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심판(2023헌나1, 이하 “탄핵 심판” )	2023. 2. 6. 탄핵소추안 발의 2023. 2. 8. 탄핵소추안 의결 2023. 2. 9. 탄핵심판 청구 2023. 4. 4. 제1차 변론준비기일 2023. 4. 18. 제2차 변론준비기일 2023. 5. 9. 제1차 변론기일 2023. 5. 23. 제2차 변론기일 2023. 6. 13. 제3차 변론기일 2023. 6. 27. 제4차 변론기일 2023. 7. 25. 결정 선고 (기각)
2023. 3. 3. - 현재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공판(서 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490, 이하 “최재원 공판” )	2023. 3. 3. 공소장 접수 2023. 4. 28. 제1회 공판기일 2023. 6. 2. 제2회 공판기일 2023. 8. 9. 제3회 공판기일 2023. 9. 27. 제4회 공판기일(예정)
2023. 3. 14. - 현재	박성민, 김진호, 곽영석 공판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합 74, 2023고합75(병합), 이하 “박성민 외 공판” )	2023. 3. 14. 공소장 접수 2023. 4. 3. 제1회 공판준비기일 2023. 4. 24. 제2회 공판준비기일 2023. 5. 22. 제1회 공판기일 2023. 7. 3. 제2회 공판기일 2023. 8. 7. 제3회 공판기일 2023. 9. 4. 제4회 공판기일 2023. 10. 23. 제5회 공판기일(예정)

## ■ 조사 대상 기관

순번	기관명	유관 기관명
1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2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3	행정안전부	
4	보건복지부	
5	서울특별시청	서울교통공사
6	용산구청	
7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이태원파출소
8	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9	대검찰청	
10	기타	해밀턴호텔

## 1. 주요 진상규명과제 총론<sup>1)</sup>

### 1.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추가 조사의 기준

#### 가. (참사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기존 조사들의 한계

##### (1) 참사의 이해를 위한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파악되지 않았음

참사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유사한 참사를 예방하고 (유사한 참사가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희생이 확대되었던 전체 과정을 온전하게 이해해야 함.

참사의 원인규명을 위한 첫 단계는 참사의 발생과 전개과정에 있었던 광범위한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점에 있어 기존의 조사들(특수본, 검찰, 국정조사 등)이 가지는 한계는 명확함.

기존의 조사들에서는 필요한 사실관계가 극히 일부분만 확인되었고, 아직도 다수의 사항들은 확인조차 되지 않았음. 예를 들어, 기존 조사들에서는 참사 당일 현장에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몇 명이 있었고, 어떤 임무를 갖고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등 현장에서의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음.

##### (2) 조사 목적이나 문제의식에 따라 특정 사안에 치중

기존의 조사들은 각자가 가지는 특정한 목적이나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참사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일관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기존 특수본과 검찰의 조사는 참사와 관련된 형법적 책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법 조항의 위반을 찾는 것이 직접적 목적이었고 희생자들보다는 처벌할 수 있는 대상에게 집중되었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또한 형사사건의 논리구조처럼 인과관계의 엄밀성을 중요하게 보았던 것으로 보임.

특수본과 검찰의 조사는 희생이 확대된 실제적 원인보다는 각각의 행위들을 위법으로

---

1) 본 ‘총론’ 부분에서는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추가과제 조사 시 필요한 기준을 설명하는 한편, 시간적 흐름[예방-대비-대응-복구]에 따른 전반적인 조사과제의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었고, 참사의 과정 중 위법행위를 부각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특정한 주제들에 치중하였다는 한계가 있음.

국정조사를 통해 많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지만, 물리적·시간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피해자들의 희생이 확대되었던 과정과 관련하여 다수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채 종료<sup>2)</sup>됨. 특히, 피해자들이 받았던 응급 조치의 내역이나 이송 사항 등도 확인되지 않아 현재 응급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없음.

또한 국정조사에서는 사실관계의 확인이 정치적 공방이나 법적 책임과 연계되어 출석자들의 답변 또한 추상적이고 방어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피해자들의 희생이나 재난관리 시스템의 작동을 검토하는 데 매우 부족하였음

#### 나. 추가과제 조사 시 판단의 핵심 준거기준: ‘인명피해 최소화’의 기여

이번 참사는 여러 기관들의 활동이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개별 기관별로 대응 활동을 확인함과 동시에 각 기관들의 활동이 어떻게 연계된 것인지 파악해야 현재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개별 기관들의 활동을 파악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연동되고 현재의 대응시스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필요조건도 됨.

각각의 기관들과 책임자·담당자들이 행하였던 위법을 포함하여 다수의 개별적 활동의 문제를 파악·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수본·검찰 조사가 가지는 법 위반 관점의 한계를 넘어서는 훨씬 포괄적인 시각과 함께 명확한 문제의식과 일관된 관점이 필요함(일관된 기준이 부재할 경우에는 수많은 개별 사안들이 정리되지 않고 혼돈을 유발할 수 있음).

모든 원인 규명 활동의 최종 목적은 또 다른 참사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따라서, 개별 기관들의 활동들이 전체 시스템에서 어떠한 효용이 있었는지 파악해야 하며, 모든 기관의 활동을 관통하는 일관된 판단 기준으로서 “피해자들의 희생이 확대되었던 과정”과 어떻게 연동되었고 “피해를 줄이는 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염두에 두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야 함. 기관 간 협업이나 조정 활동들이 적절하였는지를 판단

---

2) 국정조사결과보고서에서도 종합의견으로 ‘자료제출 미흡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비협조, 짧은 조사 기간 등으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린 바 있음.

하는 기준도 마찬가지로임.

주요 책임자와 담당자의 대응 활동 또한 (단순히 보고나 지시 여부에 집중하여 법령상 의무를 체크리스트처럼 OX의 개념처럼 활용하기보다는) 지시가 있었다면, 실제 지시들이 어떻게 작동하였고 현장의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가를 판단의 핵심적 준거 기준으로 삼아야 함.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향후의 추가과제 조사는 모든 기관 및 기관 간 활동을 ‘피해 최소화’라는 일관된 관점에서 빠짐없이 확인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향후 재난관리 시스템의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으로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재난관리 개념과도 부합하게 추진해야 함.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조사과제를 개괄적으로 구성해보았으며, 이러한 개괄적인 과제(관점)를 중심으로 ‘정부 기관별 주요 진상규명과제’를 세부적으로 도출, 정리하였음.

## 2. 추가조사과제의 구성 및 개요<sup>3)</sup>

가. 기존 인파사고 대비체계 및 전년도까지의 헬러윈 축제 대비체계
나. 10.29. 헬러윈 축제 인파사고 위험 예측·사전 인지 및 대비
다. 참사 당일 현장위험이 무시, 간과된 과정과 이유
라. 희생자들의 피해가 확대된 과정과 이유
마. 정부 기관들의 각 대응 활동(피해 최소화 관점)
바. 희생자들의 사망판정, 임시안치, 장례식장 이송, 신원확인 과정
사. 피해자의 2차 피해 및 권리침해
아. 지역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가. 기존 인파사고 대비체계 및 전년도까지의 헬러윈 축제 대비체계

### (1) 각 정부기관의 인파사고(전반) 대비 현황

3) 각 항목은 문제의식과 의미 위주로 개괄적으로 서술하였음.

인파사고 전반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여야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기관들의 '준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음

기존의 관련 자료들, 즉 각 기관들(행정안전부, 서울시, 용산구, 경찰, 소방 등)의 인파사고 기존 매뉴얼·지침, 인파사고 관리 체계, 기존 인파사고의 조사나 대책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2) 전년도(2021년)까지 이태원 핼러윈 축제 대비 계획

이번 참사와 관련한 기관들의 '준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인 2021년까지 작성되었던 계획들이 2022년도에도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실제 전년도에 존재하였던 제목과 유사한 문서가 2022년도에도 존재하는지 및 인력배치 계획 등 그 세부 내역을 비교해야 2022년도의 준비를 판단할 수 있음)

## (3) 2022년도 이태원 지구촌 축제 관련 계획 검토

2022년도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전(약 1주일 전)에 행해졌던 이태원 지구촌 축제의 계획들을 확인하고, 핼러윈데이에는 왜 그와 같은 계획과 조치들이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 나. 10.29. 핼러윈 축제 인파사고 위험 예측·사전 인지 및 대비

#### (1) 각 정부 기관의 10.29. 인파사고 위험의 사전 파악(예측) 과정

다수의 정부 기관들은 다중인파 운집은 예상하였지만, 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 발생 우려나 인파 관리와 안전대책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

(만일 위 진술들이 사실이라면)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 파악이 계획으로 작성, 보고되지 못한 과정과 관련하여, 관련자(실무자, 책임자)들의 인식과 보고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인파 사고의 위험'이 어떻게 무시 또는 과소평가되었고 실질적으로 별다른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던 과정을 확인하여야 함.



## (2) 인파사고 위험이 무시·축소된 채 수립된 인력 배치 계획

(대책이 세워졌더라도) 현장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였던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각종 보고서에서 인파사고 위험이 (일부라도) 예측되었는데, 당일 현장에서의 인력배치에 있어 인파사고 대비가 왜 후순위로 밀렸는지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더 나아가, 마약수사,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집회 대비 등이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증도 필요함).

## (3) 확인할 수 없는 10.29. 당일 각 기관의 실제 인력 배치와 활동

현장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일 실제 경찰 등 관련 기관 담당자들의 인력의 배치 현황, 임무, 활동 내역을 파악해야 하지만,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도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등 파악되지 않으므로 조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국정조사에서 제공된 정보는 과도하게 추상화된 단 몇 줄에 불과함).

### 다. 참사 당일 현장위험이 무시, 간과된 과정과 이유

#### (1) 참사 당일 인파가 급증하는 현장에서 직원들의 활동 내역 (~22:14경)

참사 당일 오후 들어 인파의 혼잡이 증가함에 따라 압사사고의 위험이 증가하였지만, 당일 현장에 배치된 인력들이 있었고, 여러 차례 112 신고 등이 있었음에도 22시 15분 경 119 신고가 있기까지 각 기관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음. (당일과 전일의 경찰 112 및 소방 119 신고 등도 전부 공개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

참사 당일 인력배치가 확인되면, 참사 당일 현장에서 경찰, 소방, 구청, 지하철 등 관계 기관별 담당자의 당시 현장 동선과 활동 내역 등 추가조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함.

#### (2) 인파가 급증하는 시간, 현장 이외 각 기관에서의 활동내역 (~22:14경)

참사 당일 인파가 급증하였던 시간에서 현장 이외에도 같은 시간 각 기관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도 확인해야 함

용산구청의 전단지 제거나 주차단속, 경찰의 코드제로 상황 등의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함.

## 라. 희생자들의 피해가 확대된 과정과 이유

※ 재발방지를 통한 인명피해 방지가 조사의 최우선 목적 중 하나이므로 희생자들의 피해가 확대된 과정이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도 밝혀진 바가 거의 없음. 향후 관련 조사 시 최우선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1) 참사 당일 생명 위협이 증가한 상황과 피해자들이 받았던 응급조치

① 피해자들이 골목에 갇혀 있었던 때부터 밀집 상태가 해제된 이후까지 피해자들의 상태를 시간대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 인파에 갇혀 있던 피해자들의 구조와 응급조치에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골든타임이 소모되었음. 영국 힐즈버러 참사의 조사결과와 같이, 각 정부기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피해를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함. 그래야 이번 참사에서 각 정부 기관들의 시간대별 활동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기도 함.

②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해밀턴 골목에 갇혀 있었던 때부터 소방이 현장에 도착한 시점, 소방이 현장에 도착한 시점부터 구조가 시작된 시점, 첫 번째 구조자가 구조된 시점부터 마지막 구조자가 구조된 시점으로 구분하여 피해자들의 상태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③ 더 나아가, 피해자들이 참사 현장에서 받았던 응급조치도 최대한 정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거의 없음. 영상자료를 통해 피해자들이 어떤 응급조치를 받았는지, 해당 응급조치는 응급환자 관련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 현장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소방, 복지부 등)

초기 현장의 긴급구조와 응급(의료) 조치는 주로 소방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고, 소방 긴급구조의 활동의 개요는 일부라도 알 수 있는데 비해, 당시 현장의 다른 기관 구성원들의 긴급구조 활동은 알려진 바 없으므로, 그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현장의 응급의료는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받았던 응급의료이므로, 각 기관별로 장비의 활용이나 판단의 근거 등 활동 내역을 확인, 정리할 필요가 있음

### (3) 긴급구조·응급의료 지연 원인인 도로통제 지연

응급(의료) 조치가 지연되어 피해가 확대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도로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도로 통제가 이루어진 시각에 대해서도 자료가 제각각이며, 증언들도 엇갈리기 때문에 당시 CCTV 등을 통해 기초적인 사실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마. 정부 기관들의 각 대응 활동(피해 최소화 관점)

※ 각 기관들의 현장대응 활동이 실제 재난 피해를 얼마나 줄이는데 기여했는가를 중심으로 면밀히 조사해야 함.

### (1) 경찰의 조치 사항

경찰의 배치 현황이나 임무, 활동 내역 등의 자료가 대부분 공개되지 않아 현장에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 현장 활동 중 중요한 부분은 교통(도로) 통제에 관한 부분인데,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당시 영상 자료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함.

기동대 출동 과정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 서울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이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 어떠한 재난대응 활동을 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임. 경찰 본부(서울청, 경찰청) 차원에서 보고나 대응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확인이 필요함.

### (2) 참사 초반 소방의 현장의 구조·구급 활동

참사 초기 현장의 인명구조 및 구급 활동은 주로 소방이 전담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기관들의 활동은 거의 드러나지 않음

희생자들이 갇힌 골목길에서 구조된 내용은 일부 밝혀졌지만,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어떠한 구급(의료) 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음. 현장 파견자들과 목격자 등의 진술을 확인해야 하고, 각종 CCTV, 바디캠 등 영상 자료를 확인하여 현장의

상황을 재구성해야 함.

### (3) 보건복지부 조치 사항

소방의 응급환자 이송과 현장조치, 병원 연계 관련 사항이 피해를 줄이는 활동과 연계됨. 보건복지부의 현장 응급의료 및 피해자 지원 활동도 문제가 있었지만, 국정조사에서는 자세히 다루어지지 못한 부분이었음.

### (4) 행안부 조치 사항

행정안전부의 경우에도, “상황관리 철저”, “보고”, “검토” 등 개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관장 뿐 아니라 관련 직원 등 행안부의 활동들이 실제 인명피해를 줄이고 재난 대응력을 어떻게 높였는지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함. 행안부의 경우에는 조정 역할의 실효성을 중점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

### (5) 서울시 조치 사항

국정조사 서울시 제출 자료에서는 시장 등 주요 주체들의 연락과 정보공유, 보고 및 지시 사항 등이 시간대별로는 기재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해당 지시 사항 등이 조직 내에서 어떻게 전달되었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음.

예를 들어, “내용을 통보받았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며, 공무원들에게 상황전파를 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다고 하는데, 현장에 누가 출동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등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음.

### (6) 용산구청 조치 사항

용산구청의 경우, 국정조사를 통하여 다른 기관에 비하여 어느 정도는 밝혀졌지만, 현장의 조치나 희생자의 이송 등은 추가조사가 필요함.

### (7) 국가위기관리센터 조치 사항<sup>4)</sup>

---

4) 이 부분은 ‘정부 기관별 주요 진상규명과제’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추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기관

국정조사에서는 실제 회의 내역이나 활동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함. 또한, 정권에 따라 조직 내 역할의 조정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이전보다 축소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는데, 축소된 기능들은 어디에서 보충할지 등 국가 재난관리 기능 재배분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함.

(8) 기관 간 연계(정보공유, 요청, 협업 등)와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

향후 재난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 재난대응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었는지를 재구성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어떻게 기여하였고,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가 중요함. 재난통신망의 활용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함. 즉, 개별 시스템이 아닌 정부 전체 차원의 체계에 대한 조사도 필요

바. 희생자들의 사망판정, 임시안치, 장례식장 이송, 신원확인 과정

※ 유가족, 생존자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 등의 마지막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

(1) 희생자의 사망 판정 및 임시 안치의 과정 및 이유

응급조치 중단과 사망 판단과정이나 이태원 173 임시영안소로 이송되는 과정과 임시영안소에서의 조치사항 등이 명확하게 조사되어야 함. 현장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임.

(2) 이태원 173 임시영안소로 이송되는 과정과 임시영안소에서의 조치

임시영안소에 임시 안치하였던 과정과 판단 근거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이태원173 임시영안실로 이송한다는 것은 사망자로 판정하고 응급조치를 전면중단하겠다는 의미였고, 당시 구조자의 지인과 유가족이 일부 와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망 판정에 있어서 신중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으므로 이태원173 임시영안실로 이송에 있어서 그 기준과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사망판정, 신원확인 조치 등 임시영안실에서 희생자에게 취한 정확한 조치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임.

**<피해자들의 이송 유형 및 과정 >**

- 1군 : 현장 구조 후 응급조치 > 상가건물인 이태원173 임시영안소로 안치(확인필요하나 46명 정도로 추정)> 다목적체육관 > 병원 장례식장
- 2군 : 현장 구조 후 응급조치 > 다목적체육관 > 병원 장례식장
- 3군: 현장 구조 후 응급조치 > 순천향대학병원(후에 사망한 사람 포함하여 81명) > 다목적체육관 > 병원 장례식장
- 4군 : 현장 구조 후 > 병원 응급실 > 병원(동일 병원이 아닌 경우 있음) 장례식장
- 사망자나 지연환자는 순천향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다가 소생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거나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경우 일부는 상가건물(임시영안소)에 일시적으로 안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10월 30일 02시 19분 다목적체육관을 시신 안치소로 운영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진 후 최종사망자는 모두 다목적체육관으로 일괄적으로 이송하여 안치하였음

② 참사 당시 도로 CCTV영상, 출동 구급차 CCTV영상 및 바디캠, 구급대원 면담 등을 통해 희생자 개별로 확인가능한 범위까지 정확한 동선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③ 피해자의 이송이 어떻게 결정되고 관리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참사 당일 응급 이송 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3) 유가족 통보 및 검시 과정에서의 문제점**

희생자 상황에 대해 유가족보다 유가족 거주 지역 관할 공무원과 경찰이 희생자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었던 상황이나 현장에서 희생자 신원확인이 거부된 사항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함.

검시 과정에서 영안실에서 희생자들이 받았던 조치가 가족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 정확한 조사 필요하며, 마약 부검 요청 사항도 확인해야 함.

**사. 피해자의 2차 피해 및 권리침해**

**(1) 참사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려는 관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었던 사항들과 2차 가해에 노출되어 방치되었는지, 그리고

정부의 활동들이 이를 유발하거나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함.

## (2) 희생자 유류품 인계 문제

가족들에게 유류품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함.

## (3) 피해자 간 소통과 연대가 저해되었던 사항(정보 제공 거부 등)

피해자들의 충격을 줄이고 회복을 위해서는 피해자 간 소통과 연대가 매우 중요하며,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권리로 공인되어 있음. 하지만, 이번 참사에서는 이를 저해한 조치들이 있어 확인이 필요함.

## (4) 합동분향소 설치 등 애도와 추모

희생자에 대한 애도에 있어 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았는지를 중심으로 확인이 필요함.

## (5) 피해자에 대한 피해지원

생존자나 유가족 등의 트라우마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피해지원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보상금액 발표 등 피해지원이 피해자들을 위축시키지 않았는지, 형식적 행정으로 피해를 확대한 것은 아닌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해야 함.

### 아. 상인 등 공동체 회복 관련 지원

#### (1) 상인지원 등 공동체 회복 강화를 위한 정책 검토

상인지원 등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 등이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필요한 사항들이 추진되는지의 관점에서 조사해야 함.

### 3. 주요 조사대상 및 조사 방법

- ① 기관별 조사과제에 따른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과 동일함
- ② 참사 당시 도로 CCTV영상, 출동 구급차 CCTV영상 및 바디캠, 각 방송사 시민제보 영상, 특수본이 확보한 각종 영상 자료 등
- ③ 유가족을 비롯한 참사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들 대면 조사
- ④ 현장 활동했던 공무원 등 관계자들 대면 조사



## II. 경찰에 대한 추가조사과제

1. 경찰조직의 수장인 경찰청장의 용인될 수 없는 무능과 무책임
2. 참사 전·후 서울경찰청장의 대응은 적절했나
3. 골든타임이 중요했던 참사 초기, 용산경찰서장은 왜 느장대응을 하고 있었나
4. 예년과 달리 참사 당일 이태원에 정보관이 파견되지 않은 이유는
5.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은 헬러윈 데이 대비 보고서를 확인하였나
6. 용산경찰서 작성 정보보고서는 서울경찰청/경찰청에 보고되었나
7. 헬러윈 데이 대비 정보보고서를 보고받았음에도 조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참사 직후 조직적으로 보고서를 은폐한 이유는
8. 서울경찰청장은 왜 헬러윈 데이 사전 대비를 하지 않았나
9. 그동안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대비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해명은 사실인가
10. 대통령실 이전이 경찰 배치 등 안전사고 대비에 영향을 미쳤는가

### 1. 경찰조직의 수장인 경찰청장의 용인될 수 없는 무능과 무책임

#### 가. 기존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

##### (1) 특수본 수사

경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하여만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있는데,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법령상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사무는 자치경찰사무로 경찰청장의 사무가 아니고, 서울경찰청장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청장에게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경찰청장이 이태원 헬러윈 다중운집행사에서의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예견가능성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음.<sup>5)</sup>

5) 경찰청, 이태원 사고 수사결과 등 통지서(검찰송치, 불송치, 불입건결정), 2023. 1. 19. 자, 9면.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보도자료, 이태원 사고 수사결과(이하 “특수본 수사결과 보도자료”), 2013. 1. 13. 자, 20면.

## (2) 국정조사

① 청문회 당시 김동수 증인(경찰청 경무과장)의 답변을 통해 경찰청장이 참사 당시 충북 제천에서 개인적인 용무 및 음주를 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내용이 경무과장 측에 전혀 공유되지 않은 사실, 법령의 미비로 인하여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됨.<sup>6)</sup>

② 청문회 당시 윤희근(경찰청장)의 답변을 통해 국가위기관리센터,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등의 소통 체계가 개인 소유 핸드폰의 일반적인 SNS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비상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확인됨.

③ 또한 경찰청 기관보고 중 경찰청장은 다중인파에 따른 사고를 가정한 안전관리대책을 세운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사전에 서울경찰청이나 용산경찰서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그 위험성, 대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함.<sup>7)</sup>

## (3) 공판 및 탄핵심판

해당사항 없음

### 나.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추가조사의 필요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함(제14조). 국가경찰사무에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포함됨(제3조).<sup>8)</sup> 따라서 경찰청장은 서울청 차원에서 헬러윈데이 대비 인파 관리가 부실한 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지휘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음.

6)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이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2023. 1. 409면.

7)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195, 198면

8) 이에 따라 경찰청 정보국은 2022. 9. 29.경 서울청을 비롯한 전국 각 지방청 정보부에 「가을축제·행사 안전관리 실태 및 사고 위험요인」이라는 제목의 SRI를 하달하였고, 용산경찰서 정보과는 주최자가 없는 ‘이태원 헬러윈데이 축제’도 포함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수차례 작성하여 회신한 바 있었음.

② 그런데 경찰청장은 도심권에 대규모 집회·시위 및 헬러윈 데이로 인해 다중인파가 밀집될 것을 알았거나 조금만 노력을 기울였어도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즉, 경찰청장이 지휘권 발동을 태만히 하여 서울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참사 당시 질서유지를 방기하고 마약 등 형사범죄만을 단속하게 함으로써 참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음.

③ 만일 사전에 안전 대비를 하였다면 참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참사 발생의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었으리라고 인정된다면, 경찰청장의 그와 같은 직무상의 의무위반과 참사로 인한 치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이에 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함.

④ 또한 국가공무원으로서 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나, 개인적인 용무 및 음주로 인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아 그에 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면책되었음. 따라서 경찰청장이 사전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당일 행적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등 최소한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지휘권의 발동 태만 여부에 관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함(국정조사 당시 2023. 1. 4. 경찰청 이용욱 전 상황1담당관이 소재불명으로 증인 불출석한바, 이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해명하도록 할 필요도 있음).

## 다. 추가 조사과제

### (1) 추가조사과제의 내용

(가) 경찰청장이 헬러윈데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인파사고의 위험성에 관하여 사전에 보고를 받거나 대책을 세운 적이 있는지 여부

(나) 경찰청장이 이번 참사 전후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내용의 지휘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다) 경찰청장의 참사 당일 시간대별 행적

(라) 경찰청장의 당일 행적에 따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위반 여부

(2) 주요 조사대상 (직책은 참사 발생 당시 기준)

순번	소속기관명/직책/성명	비고
1	경찰청장 윤희근	소방으로부터의 상황전파 수신 및 유족 명단의 확보, 관리 관련 위증으로 고발(국정조사)
2	경찰청 기획조정관 김준영 경찰청 형사국장 김희중 경찰청 경비국장 홍기현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 조지호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황창선 경찰청 전 상황1담당관 이용욱 경찰청 경무과장 김동수	

(3) 조사 방법

직접조사(대인조사)

(4) 관련 법령

순번	법령명	비고
1	경찰법	제3조(경찰의 임무), 제4조(경찰의 사무), 제14조(경찰청장), 제28조(시·도경찰청장)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3	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2조(재난 상황시 국·관의 임무) 제4조(경찰청 재난상황실의 설치)
3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여행의 제한)
4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5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제46조(필수요원의 지정)

(5) 참고 자료 목록

순번	참고 자료 명	출처	작성일자
1	이태원 사고 수사결과 등 통지서(검찰송치, 불송치, 불입건결정)	경찰청	2023. 1. 19.
2	이태원 사고 수사결과 보도자료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2023. 1. 13.
3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906 판결	대법원	1995. 9. 15.
4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023. 1.

## 2. 참사 전·후 서울경찰청장의 대응은 적절했나

### 가. 기존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

#### (1) 특수본 수사

서울경찰청은 이태원 일대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발생 방지 등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고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당일 인파 운집을 인식했음에도 정보, 경비기능에 관한 사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음. 또한 사고 전후로 112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하고 상황관리가 미흡했으며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소홀했음이 확인되었음.

<b>서울 경찰청<sup>9)</sup></b>	<p><b>(사전 예방)</b> 헬러원 관련 이태원 일대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발생 방지 등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안전사고 예방·경비대책 부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사고 발생 당일 이태원 일대 인파 폭증을 인식했음에도, 다중운집 안전관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정보·경비기능 사전대책 미수립</li> </ul> <p>※ 서울경찰청 내 관광경찰대, 교통, 지역경찰 등 기능에서 헬러원 관련 대책서를 작성하였으나 각 부서의 업무 범위에 한정되어 있음</p> <p><b>(사고 전·후 조치)</b> △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경고하는 112신고 등에 대한 부실처리, △ 상황관리관의 정위치 이탈에 따른 상황관리 미흡, △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p>
--------------------------------	---

9) 특수본 수사결과 보도자료, 13면.

이에 대해 특수본은 박성민(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을 증거인멸교사로 송치하고, 김광호(서울경찰청장), 류미진(전 서울경찰청 인사과장)<sup>10)</sup>, 정대경(전 서울경찰청 112상황팀장)을 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음<sup>11)</sup>

## (2) 국정조사

### (가) 참사 사전 인지 여부

① 서울경찰청 현장조사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번 참사 관련하여 상황보고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함.<sup>12)</sup> 서울경찰청 기관보고에서는 참사 당일 오전 10시 35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관련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아 핼러윈 축제의 위험성에 대해 사전인지하지 못했으며,<sup>13)</sup> 8시 32분에 퇴근하면서도 이태원 인파 운집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여 지휘를 하지 못했다고 답변함.<sup>14)</sup>

② 또한, 청문회에서“경찰은 몇 년 전부터 이태원 지역의 핼러윈 데이 다중인파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닌지”에 대해 17년, 18년, 19년 전부 이태원로 교통사고 우려라는 부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으나, 압사나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그동안 특별히 위험성 제기가 없었다고 답변함.<sup>15)</sup>

### (나) 사전 대비 및 인력배치

① 청문회 당시 2019년~2020년 경찰의 핼러윈데이 대책은 ‘이태원 일대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의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나 추락 등 안전사고상황 대비’ 등을 명시하고 있고, 작년과 재작년에는 핼러윈데이에 이태원에 경비기동대가 배치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2020~2021년에는 인파 관리가 아닌 코로나로 인한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기동대를 배치한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이번 참사 전 용산경찰서는 경비기동대가 아닌 교통기동대만 요청하였다고 주장함.

---

10) 참사당시 상황관리관

11) 특수본 수사결과 보도자료, 18-20면.

12)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61면.

13)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216면.

14)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214면.

15)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355-358면.

② 청문회 당시 '서울경찰청 경비과에서는 경비기동대 투입 요청을 받았으나 사건 당일 경찰청 전체 경력이 집회에 동원됨에 따라 헬러윈 대비 경력을 배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밑에 '보고 계통을 거쳐 서울경찰청에게 보고되어 승인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아는지에 대해 모른다고 부인함.<sup>16)</sup>

③ 서울경찰청 기관보고에서 서울경찰청장이 당일의 경찰 병력 배치 전체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이 확인됨.<sup>17)</sup>

④ 서울경찰청에서 작성된 보고서 '헬러윈데이 분위기 및 부담요인'<sup>18)</sup>에는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경찰이 지자체와 소방당국과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서울경찰청장은 해당 보고를 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서울시장과 소방쪽에 협조요청하지는 않았음이 확인됨.<sup>19)</sup>

#### (다) 이태원 현장 인력 동원 및 배치 등 현장대응

##### 1) 112치안종합상황실 코드 제로 대응

① 서울경찰청 현장조사 중 보고내용에 따르면, 모든 신고는 접수될 경우 112 시스템에 입력되며(위치, 신고내용 등 정보), 코드분류 후 현장에 전달되고 현장은 내용 확인 후 위치로 출동 후 사건처리함. 대형사고 위험성을 의미하는 code0이 발령될 경우, 지령요원의 모니터링 후 현장의 출동 상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임.

② 참사 전까지 신고 위치 확인되는 11건 가량의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18시 34분께 112신고 1차 접수("압사당할 것 같다")되었고, 21시께 112신고 5차 접수에 첫 code0 발령됨("인파 너무 많아서 대형하고 일보직전"). 경찰은 112신고 1차 접수 당시 현장 출동했다고 기재했으나 검찰 수사에 따라 112신고 내역 조작가능성이 있고,<sup>20)</sup> 그 후에도 압사신고가 들어왔으나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음.

16)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355-358면.

17)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213면.

18) 2022. 10. 14. 서울경찰청 정보부가 작성하고 박성민(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광호(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함.

19)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216면.

20) "이태원 참사 당시 112 신고기록 허위" 유가족들 서울경찰청 규탄 및 사과 촉구, 한국 NGO신문 2023.03.29., <http://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9853>

2023.03.27. 검찰이 112 신고사건처리표 조작 의혹을 확인한다며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을 압수수색했음

112신고 접수 타임라인 (경찰 출동 내역 허위 조작 가능성 존재)	
18:34	112신고 1차 접수(“압사당할 것 같다” 출동.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행안부 전달 안됨)
20:09	112신고 2차 접수(“사람이 너무 많아서 넘어지고 다치고 난리”, 출동)
20:25	촛불전환행동 집회 종료(삼각지역 - 남영역 구간)
20:33	112신고 3차 접수(“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쓰러지고 통제 불능”, 출동 안함)
20:48	용산서·동작서·강북서·광진서 형사 및 마약범죄수사대 등 50명 배치, 근무 개시 : 서울경찰청 국정조사 기관보고(12.27) 자료
20:53	112신고 4차 접수(“사람이 너무 많아서 압사당하고 있다”, 출동 안함)
21:00 (code0 부여)	112신고 5차 접수(“인파 너무 많아서 대형사고 일보직전”, 출동)
21:02	112신고 6차 접수(“인파 너무 많아서 사람들 떠밀린다”, 출동)
21:05	이태원파출소장, 경찰 3명에게 이태원역 2번 출구 혼잡 완화 지시 후 확인)
21:07	112신고 7차 접수(“압사될 분위기, 통제 필요”, 출동 안함)
21:10	112신고 8차 접수(“압사당할 것 같이 사람 많다”, 출동 안함)
21:25	이태원파출소장, 이태원역 1번 출구에 경찰 2명 추가 투입
21:34	용산경찰서장 식당에서 출발
21:51	112신고 9차 접수(“인원통제 필요, 위험한 상황”, 출동 안함)
22:00	112신고 10차 접수(“골목에서 내려오기가 막 밀고 압사당할 거 같애, 통제 좀 해주세요”, 출동)
22:11	112신고 11차 접수(“여기 압사될 것 같아요(비명소리)”, 출동 안 함)

③ 당시 112상황실장 휴무로 대신 총괄하던 정대경 증인(서울경찰청 112상황팀장)(이하 ‘정 팀장’이라고 함)은 청문회에서 참사 당시 가장 중요 업무가 헬러윈 데이 관련 모니터링이라고 함. 정 팀장은 19시 30분부터 자리를 지켰으며, 중점상황판에 “헬러윈 축제에 대해 주의 요망”이 올라와 있었음. 112치안종합상황실에는 112신고가 들어오면 통합 관제상황판에 점으로 신고가 표시됨. 따라서, 참사 당일과 같이 같은 장소에서 여러 건의 신고가 들어오면 위험지역 확인이 가능함.<sup>21)</sup>

④ 정 팀장은 21시께부터 code0 신고를 직접 챙기면서 근무하였다고 하며, 당시 21시 10분께 ‘헬러윈 축제장인데 압사당할 것 같다, 사람이 많다’라는 신고가 있었고, 112 신고 사건처리표상으로는 현장출동하였다고 함. 그리고 상황실에서는 9시 10분께 “경찰인력 배치요청”으로 기재하고 종결하였음.

⑥ 서울경찰청 당시 답변에서는 종결내용을 용산서 상황근무자가 입력한 것이며, 용산서에서 내용확인 후 종결을 승인했다고 답변함.<sup>22)</sup> 그러나, 청문회에서 박규석 실장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장)(이하 ‘박 실장’이라고 함)은 112처리 종결은 상황팀장이 할 수

21)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345면

22)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63면



있는 것이라고 답함. 이에 의하면 정팀장이 기재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code0 발령 후 21시 02분께 6차 신고 접수 후 21시 05분께 이태원파출소장이 경찰 3명에게 이태원역 2번 출구 혼잡 완화 지시하는데 그쳤을 뿐,<sup>23)</sup> 경비인력 배치는 이루어지지 않음.

⑤ 경비인력배치요청은 이태원파출소 > 용산경찰서 > 서울경찰청 으로 오게 됨. 그리고 서울청 상황실의 경우 청장보고 없이 기동대 출동가능함. <sup>24)</sup> 정 팀장은 계속된 code0 신고에도 경비대 파견하거나 상황보고 않은 이유에 대해 코드원 이하는 바로 해당경찰서(용산경찰서)로 보고되는데, 용산경찰서에서 특별한 보고가 없었고 상황이 취합되지 않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함.<sup>25)</sup>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적에 대해 112상황실장에게 보고 후 조치했다고만 답하였음.<sup>26)</sup> 박 실장이 보고받은 시각은 정 팀장이 참사 인지했다고 하는 22시 59분경임.<sup>27)</sup>

⑥ 서울시, 서울경찰청 기관보고 자료에 따르면, 22시 15분께에 참사 발생하였고 119신고 접수되었고, 22시 18분께에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서울종합방제센터,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 상황실에 최초 공동대응 요청함. 그러나, 서울경찰청 상황실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음.

⑦ 공동대응 요청을 왜 인지하지 못했냐는 지적에 대해 박 실장은 공동대응 요청이 상황실로 왔으나 일선 파출소나 용산경찰서로 내용이 내려가기 때문에 상황실에서 긴급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답함.<sup>28)</sup> 긴급성 파악에 대해 현장조사에서 김 청장은 소방에서 ‘사람들이 복잡하고 부상자가 있다’고만 설명해서 상황팀에서 긴급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답했고,<sup>29)</sup> 박 실장도 분석대응반에서 긴급성 파악하지 못해 상황팀장이 긴급성을 늦게 인식(22시 59분께)했다고 답함. <sup>30)</sup> 서울경찰청 책임자들은 일관되게 상황팀장이 긴급성을 인식하지 못해 상급자 보고가 늦어져서 공동대응을 못했다고 진술함.

## 2) 상황인식시점

---

23) 경찰청에서 제출한 ‘당일 정북 경찰의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현장의 112 신고 처리에 배정된 파출소(지구대) 경찰은 단 32명에 불과했고, 11월 7일 국회 행안위 이형석 의원의 질의를 통해 이마저도 오후 8시까지의 주간 근무 인원인 11명이 모든 신고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이 확인됨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742면).

24)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345면

25)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362면

26)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362면

27)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350면

28)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360면

29)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60면.

30)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341면

① 참사 당일 정 팀장은 22시 59분께에 참사 인지했으며, 박 실장은 당일 휴무중이었고 22시 59분께 정 팀장으로부터 참사 발생을 보고받았으며, 김 청장은 23시 36분께에 박 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았음.

② 당직 상황관리관으로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상황실에 대기해야 하는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은 당일 서울청 상황실이 아닌 자기 사무실에 있었으며, 보고를 받은 것은 11시39분이었다고 답함.

③경찰 대응 부실 지적에 대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상황팀장에 의한 참사 발생 사실 인식 및 상황 보고가 늦어져서 서울경찰청의 대응이 늦어졌다고 답변함.<sup>31)</sup>

구분	내용
1차 청문회 (2023. 1. 4.) 박규석 증인(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장)	(질의)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실과 상황실의 실질적 책임자였던 상황3팀장이 참사 사실을 언제 최초로 인지했는지? (답변) 본인 진술에 의하면 22시 59분임. <sup>32)</sup>
1차 현장조사(2022. 12. 21.) 서울경찰청	(질의) 서울 경찰청장이 사고에 대해 정확히 보고 받은 것이 언제인지? (답변) 집회가 끝난 8시 반 이후 귀가 후에 이임재 서장에게 전화를 받은 23시 36분에 상황을 인지함. <sup>33)</sup>

### (3) 공판 및 탄핵심판

‘서울경찰청 및 용산경찰서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서울경찰청 정보부가 헬러윈 데이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사전에 이에 관한 보고서도 작성하였으며, 해당 보고서가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되었고, 서울경찰청장은 2회에 걸쳐 화상회의를 통해 인파 운집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이 확인됨.

서울경찰청 정보부는 ‘코로나19’ 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가 완화·해제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헬러윈데이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헬러

31)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57면.  
32)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341면.  
33)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58면.

원 데이 경찰 대응 정도 등에 관한 고려요소(치안부담요인)에 대한 정보를 사전 취합하기 위해 2022. 10. 6. 용산서 등 서울청 산하 경찰서 정보기능에 SRI를 하달하여 이를 취합한 후, 2022. 10. 14. 경 “할러윈데이(10.31.)를 앞둔 분위기 및 부담 요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할러윈 데이의 안전사고 위험성과 그개 대한 대비 필요성에 관하여 서울경찰청장 김광호에게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할러윈 데이 대응 필요성 보고를 받은 김광호(서울경찰청장)는 2022. 10. 17. 09:00경 화상회의를 통해 서울청 각부 부장 및 화상회의에 참가한 서울청 산하 경찰서장들에게 “올해는 3년만의 거리두기 해제로 이태원, 홍대, 강남 등을 중심으로 할러윈 데이에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이 예상되므로 해당 부서, 관서는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한 촘촘한 사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어 김광호(서울경찰청장)는 2022. 10. 24. 09:00 경 다시 한번 화상회의를 통해 서울청 각부 부장 및 화상회의에 참가한 서울청 산하 경찰서장들에게 할러윈 데이의 인파 집중 위험성에 대해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위 두 번의 지시를 받은 서울청 정보부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sup>34)</sup>

#### (4) 기타

특수본 수사결과를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2023. 4.말경 김 청장에 대하여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 의견이었으나, 대검찰청에서 내용을 보강하라며 제동을 걸어 현재 까지도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sup>35)</sup> 당시 서울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박성민(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만 정보보고서 삭제 관련 사건의 피고인으로 공판 계속 중임.

### 나.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추가조사의 필요성

#### (1) 서울경찰청의 사전 예방·대비

① 서울경찰청장은 경찰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경찰법 제28조 제3항).

② 김 청장은 국정조사에서 그동안 할러윈데이 인파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특별히 위험성 제기가 없었고, 자신도 참사당일 오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이태원 할러윈 축제와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아 위험성에 대해 인지

34) 공소장(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합74, 2023고합75(병합)), 2022. 12. 30., 4-5면.

35)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70911500004151>.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71421>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음.

③ 그러나 김 청장은 2022. 10. 14.경 핼러윈데이 관련 정보보고서를 받고 2차례에 걸친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청 산하 경찰서장들에게 인파 운집이나 인파 집중 관련 위험성에 대해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고, 참사 당일 오전 10시 35분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금일 가장 혼잡 예상’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음. 따라서, 인파 집중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명백함.

④ 그럼에도 김 청장은 핼러윈 데이 대비와 관련하여 화상회의 외에 사전대책 미수립, 참사 당일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불행사(또는 뒤늦은 행사) 등 서울 지역 자치경찰의 총책임자로서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음.

⑤ 서울경찰청장은 의도적으로 이태원 인파의 안전 대비에 집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2) 현장 대응

① 김 청장에 의하면 서울경찰청 112상황팀장은 참사 당일 22시 59분, 서울경찰청장은 23시 36분께 상황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다고 함.

② 당일 오후 12시경 출근한 김 청장의 집무실에는 서울 어느 구역이든 직접 볼 수 있는 CCTV와 112신고를 들을 수 있는 무전기 16대가 설치돼 있었으므로 주의를 기울였다면 참사 발생 사실을 더 빠르게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임. 그러나, 김 청장은 용산 집회가 끝난 20시 33분께 인파 운집에 의한 사고 발생 여부 및 위험성을 확인하지 않고 퇴근함.

② 또한, 김 청장은 퇴근 후인 21시 37분과 48분께 홍보담당관으로부터 두 차례‘이태원에 인파 몰렸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 링크를 카카오톡으로 보고받았음에도,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음.<sup>36)</sup>

③ 참사 전인 21시 37~48분경 홍보담당관의 보고를 받았을 때 경찰력의 일부라도 이태원에 보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36)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71667>

④ 김 청장은 참사에 대한 현장 대응이 늦어진 데 대해 참사 발생 인식시점이 늦었으므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그러나, 김 청장은 인파 운집에 대한 안전관리를 후순위로 두었음. 만약 김 청장이 참사 당일 인파 운집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고 경계하고 있었다면 더 빠르게 참사 발생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고, 신속한 대응도 가능했을 것임.

⑤ 따라서, 김 청장이 정보보고서로 인파 운집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그에 따른 안전관리를 후순위로 둔 이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3) 이태원 현장 인력 동원 및 배치 등 현장대응 부실

① 정대경 팀장은 당일 집중 업무가 할툴리데이 축제 안전관리 업무였고, 21시께에 code0신고가 들어온 것을 알고 직접 신고를 쳤으며 상황판을 띄우면 위험지역이 표시되는 시스템 하에서 할툴리데이 축제를 주목하고 있었음. 따라서, 21시 10분께“경찰인력배치 요청”으로 종결된 것에 대해 후속 조치가 되었는지 현장도 확인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납득하기 어려움.

② 정 팀장은 22시 59분께에야 참사 발생을 인지했다고 하며, 인지가 늦은 이유가 상황 3팀 내 분석대응반이 긴급성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함. 그러나, 당시 112 신고가 빗발치는데 참사 전에 긴급성 판단이 늦어졌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움.

③ 또한, 할툴리데이 축제를 주목하고 있고 21시부터 대형참사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참사 직후 22시 18분께 소방의 공동대응 요청이 왔는데도 분석대응반에서 긴급성 판단이 어려웠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음. 용산경찰서는 22시 18분께에 공동대응 요청받자마자 “가용 경력 전원 투입”(경찰서장 무전지시)을 지시하였다는 점 및 22시 25분께에 무전에서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이 등장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에도<sup>37)</sup> 긴급성 판단이 늦어져서 인지 및 보고가 늦었다는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움.

④ 경찰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참사 인식 시점을 최대한 늦추어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37)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349면

해당 내용은 1차 기관보고에서 박규석 증인(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장)에 대한 질답에서 확인되었음.

⑤ 따라서,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3팀 내 관계자들 및 서울경찰청 책임자들의 정확한 인식 시점 및 보고 시점, 대응 시점, 대응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추가조사가 필요함.

#### 다. 추가 조사과제

##### (1) 추가조사과제의 내용

###### (가) 서울경찰청의 사전 예방·대비 내용

① 서울경찰청장이 사전에 헬러윈데이 관련 정보보고서를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화상회의에서 인파 운집 대비 안전 대책 관련 논의를 했는지 여부 및 (했다면) 그 논의 내용

② 서울경찰청이 인파 운집 대비 안전대책을 수립, 마련하지 않은 이유

③ 서울경찰청장이 참사 전날과 당일 인파 운집과 관련하여 용산경찰서장 및 서울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는지 여부, (했다면) 그 시점 및 내용

###### (나) 예년과 달리 인파 관리 목적으로 경비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사유

① 경찰관기동대 운영규칙 제4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서울경찰청장은 경찰관기동대의 지원근무 또는 비상근무 지시가 가능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이유

② 경비기동대 미배치를 지시하거나 집회 동원을 지시한 별도의 책임자가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책임자가 그와 같은 지시를 한 경위와 그 이유

③ 서울경찰청장이 경비기동대 미배치에 관하여 논의 또는 승인을 하였는지 여부

###### (다) 이태원 현장 인력 동원 및 배치 등 현장 대응 부실

①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3팀 내 분석대응반 참사 관련 인지 및 긴급성 분석 내용

②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 정대경이 참사 당일 인지한 정보 및 조치 내용

③ 서울경찰청 책임자들의 정확한 인식·보고·대응 시점

(라) 서울경찰청장 김광호 및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 정대경의 기소 지연 사유

이들이 명백히 참사 관련 책임자에 해당함에도 기소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

(2) 주요 조사대상 (직책은 참사 발생 당시 기준)

순번	소속기관명/직책/성명	비고
1	서울경찰청장 김광호	경비기동대 투입 요청여부 및 벚꽃 개화기간 기동대 배치 경위 관련 위증으로 고발(국정조사)
2	서울경찰청 전 112상황3팀장 정대경 및 112상황3팀장 분석대응반 상황요원 2명, 상황반장	
3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전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상황 인지 시점 및 경비기동대 투입 요청 여부 관련 위증으로 고발(국정조사)
4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윤시승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현 정보부장) 김보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김성중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규석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정광복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 류미진(전 인사교육과장) 서울경찰청 전 정보부장 박성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 김기현	

(3) 조사 방법

직접조사(대인조사)

(4) 관련 법령

순번	법령명	비고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도경찰청의 의무 제3조 제1호, 제5호, 제8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3), 다목, 제13조, 제28조,
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도경찰청의 기본 조직 구성 제2조 제3항, 제6장 제1절, 제2절
3	경찰관 기동대 운영규칙	경찰관기동대 근무 제4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
4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5	도로교통법	제6조 제4항, 제7조
6	서울특별시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12조 제2항 바목, 제36조 제3항 3호 가목, 제44조 제1호 다목

(5) 참고자료 목록

순번	참고 자료 명	출처	작성일자
1	이태원 사고 수사결과 등 통지서(검찰송치, 불송치, 불입건결정)	경찰청	2023. 1. 19.
2	이태원 사고 수사결과 보도자료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2023. 1. 13.
3	“헬러원데이(10.31.)를 앞둔 분위기 및 부담 요인” 보고서	전석만(서울청 정보 분석과 공공분석계 정책안전팀 정보관)	2022. 10. 14.
4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023. 1.
5	공소장(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합74, 2023고합75(병합)) 인터넷 기사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2022. 12. 30.
6	<a href="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70911500004151">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70911500004151</a> 인터넷 기사	한국일보	2023. 7. 10.
7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71421">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71421</a>	KBS 뉴스	2023. 5. 9.
8	인터넷 기사	KBS 뉴스	2023. 5. 10.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71667">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71667</a>		
9	상황보고서와 112 신고사건처리표	경찰	

### 3. 골든타임이 중요했던 참사 초기, 용산경찰서장은 왜 능력대응을 하고 있었나

#### 가. 기존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

##### (1) 특수본 수사

용산경찰서는 헬리콥터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였음에도 범죄 및 교통 관리에만 치중할 뿐 인파 관련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사고 전후로 112 신고 처리 및 대응이 부실했으며, 현장 지휘가 부재하고 관리·감독이 미흡했음이 확인되었음. 또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경우 인파 관리 등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고, 허위 상황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되었음.

##### (2) 국정조사

① 용산경찰서 측은 경비과에서 10만명 이상의 다중이 모일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압사 관련 다중운집에 따른 안전대책을 논의하거나 수립한 적은 없었다고 보고하였고, 2021년에 3개 기동대가 배치된 것은 서울경찰청 차원에서의 코로나 집단 감염 확산 우려로 인한 것이었다고 주장함.

②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당일 137명이 현장에 출동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각 인력의 배치 및 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은 참사 당일 21시 30분경 도로까지 넘치는 인파를 인도 위로 올리라고 하는 등 교통관리에만 집중하여 혼잡을 가중시켰음이 확인됨.

③ 현장에서 경비인력 배치 요청이 21시 10분경에 있었음에도 경비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 서울경찰청에 기동대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용산경찰서장과 당시 112운영지원팀장의 진술이 엇갈렸음.

④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23시경이 되어서야 최초로 무전을 듣고 상황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이전인 20시 50분에서 51분 사이에 112상황실장과 세 번의 전화 통화를 시도하는 등 무전을 예의주시한 사실, 적어도 22시 19분부터 무전이 있었던 사실, 22시 32분경 112상황실장과 통화를 한 사실, 22시 35분경 가용경력을 전부 보내라는 무전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됨.

⑤ 또한 참사 이전 김진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이태원 지역 담당 경사 및 정보과 형사들을 헬러윈 데이 축제 현장이 아닌 집회, 시위로 배치하였고, 참사 직후에는 ‘이태원 헬러윈 축제 공공안전위험분석 보고서’에 기재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삭제 지시하였음.

### (3) 공판 및 탄핵심판<sup>38)</sup>

① 이임재 공소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됨. 특히,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가 작성한 “2020년 ‘헬러윈데이’ 종합치안대책”에는 기존 용산경찰서 측 주장과 달리 “압사”위험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보고서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됨.

② 또한 제4회 공판기일(2023. 8. 21.)에서 재판장은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과 달리 2022년 치안대책 상 “압사”가 명시되지 않은 점에 관하여 지적함.

재판장- 2020년 종합대책에는 “인구밀집으로 인한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 대비”가 직접적으로 명시됨. 2021년에는 이 내용이 없나

검사- “압사”는 없지만 “다중운집 방지, 다중운집지역 및 질서 유지”라고 써 있고, 아예 경비과 내용이 없음.

재판장- 코로나 기간 중에도 “압사”라는 단어가 있음. 코로나 집합금지가 해제되었는데 ‘압사’라는 단어가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 (4) 기타

해당사항 없음

## 나.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추가조사의 필요성

38) 이와 관련해서는 별첨1 ‘경찰의 다중운집 행사 관련 매뉴얼 및 대책 수립 연혁’ 부분 및 별첨 2 ‘공판기일 관련자 진술 내용’ 부분(민변 공판 모니터링 보고서) 각 참조.

기존 조사의 경우 예년 대비 참사 당시 대책 수립이 미흡했던 원인, 참사 당일 경찰 배치 등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몇몇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못하였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엇갈리는 부분이 있음. 이에 따라 추가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예년 기준으로 2020, 2021년을 주로 비교하고 있으나 이때는 코로나 유행 시기로써 경찰 인력 배치의 기준이 다를 수 있고, 2022년은 코로나 유행이 지나고 3년 만에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상황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다. 추가 조사과제

##### (1) 추가조사과제의 내용

###### (가) 이임재(용산경찰서장) 관련

① 송병주(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의 지시를 받은 용산서 소속 경사가 '22년 헬러윈 축제 관련 기능별 업무추진 계획 회신 요청' 공문을 용산경찰서 각 기능에 발송하고 업무추진계획을 요청하였으나 정보과, 경비과로부터 받은 회신이 없었고, 그에 따라 정보 및 경비 계획이 누락된 종합치안대책이 작성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이에 관한 수정 지시를 하지 않은 이유

② 예년과 달리 경비기동대 배치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 이태원 지역의 인파관리를 비롯한 질서유지 관련 지시를 하지 않은 이유

③ 참사 당일 20시 30분경부터 무전을 수신하였음에도 즉각 지시를 하지 않은 이유

④ 인파 위험성에 관한 최초 상황 인지 시점

⑤ 11기동대의 출동 지시가 지체된 이유

⑥ 헬러윈데이 사전 대책 회의에서 마약 단속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업무일지상 인파관

리가 아닌 성범죄와 마약단속을 중점으로 고려한 이유는 무엇인지

(나) 송병주(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관련

- ① 다수신고, 특히 코드제로에 관한 용산서 자서망 무전지령이 누락된 이유
- ② 2022. 10. 24. 이임재(용산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기동대를 적극 요청하라고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 계장들과 이태원 파출소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지시한 후, 교통기동대 요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
- ③ 112 신고 건(12건)에 대하여 일부만 출동이 이루어진 이유

(다) 기타

- ① 용산경찰서의 2020년 이전 및 참사 당일 경찰 배치 내역
- ② 과거 이태원 헬러윈 데이 관련 신고 내역에 인파 운집 관련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

(2) 주요 조사대상 (직책은 참사 발생 당시 기준)

순번	소속기관명/직책/성명	비고
1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상황 인지 시점 및 경비기동대 투입 요청 여부 관련 위증으로 고발(국정조사)
2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송병주	
3	용산경찰서 112상황실 상황3팀장 박인혁	
4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서무 최용원	
5	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 정현우	
6	용산경찰서 112운영지원팀장 정현욱	경비기동대 투입 요청 여부 관련 위증으로 고발(국정조사)
7	용산경찰서 경비과장	

8	용산경찰서 정보과 정보관 경위 이주태	
9	용산경찰서 정보과 정보관 경사 김희석	
10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의사과장 김진호	
11	용산경찰서 정보과 정보관 경장 김현호	
12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박성민	
13	서울경찰청 정보부 정보분석과 공공분석계 정책안전팀 정보관 경사 황성현	
14	경찰청 정보국 정보분석과 민생분석계 정보관 박상용	
15	이태원파출소장 용산경찰서 교통과장 용산경찰서 경비계장 김현진	
16	이태원파출소 이아름 순경(22시 35분경 지원요청 무전)	

### (3) 조사 방법

직접조사(대인조사)

### (4) 관련 법령

순번	법령명	비고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의 의무 제3조 제1호, 제5호, 제8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3), 다목, 제13조, 제30조
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경찰서의 기본 조직 구성 제2조 제3항, 제42조
3	경찰관 기동대 운영규칙	제6조 제3항
4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5	도로교통법	제6조 제4항, 제7조
6	서울특별시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41조, 제58조

(5) 참고자료 목록

순번	참고 자료 명	출처	작성일자
1	이태원 사고 수사결과 등 통지서(검찰송치, 불송치, 불입건결정)	경찰청	2023. 1. 19.
2	이태원 사고 수사결과 보도자료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2023. 1. 13.
3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023. 1.
4	공소장(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합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3. 1. 18.
5	공소장(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합74, 2023고합75(병합))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2. 12. 30.
6	“가을 축제, 행사 안전관리 실태 및 사고 위험요인” SRI	경찰청 정보국	2022. 9. 26.
7	“가을 축제, 행사 안전관리 실태 및 사고 위험요인” SRI 회신 보고서	김현호(용산경찰서 정보과 정보관 경장)	2022. 9. 29.
8	“할로윈 데이, 온오프 치안 부담요인” SRI	서울경찰청 정보부	2022. 10. 6.
9	“할로윈 데이, 온오프 치안 부담요인” SRI 회신보고서	이주태(용산경찰서 정보과 정보관 경위)	2022. 10. 6.
10	“할로윈, 경찰제복으로 파티 참석 등 불법 위험 우려”	이주태(용산경찰서 정보과 정보관 경위)	2022. 10. 7.
11	“할러윈 데이(10.31.)를 앞둔 분위기 및 부담 요인”	서울경찰청 정보부	2022. 10. 14.
12	“이태원 할러윈데이 치안상황 분석과 종합치안대책”	정현욱(용산경찰서 112운영지원팀장)	2022. 10. 25.
13	“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협 분석”	김희석(용산경찰서 정보과 정보관 경사)	2022. 10. 26.
14	공판 모니터링 보고서(민변 및 자체 확보 자료)		

4. 예년과 달리 참사 당일 이태원에 정보관이 파견되지 않은 이유는

가. 기존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

### (1) 특수본 수사

해당사항 없음

### (2) 국정조사

① 국정조사 과정에서 예년에도 핼러윈 기간에 정보관을 이태원 현장에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함. 2017년부터 코로나 방역기간을 제외하고는 핼러윈 데이 관련 정보관이 배치된 바가 없다고 답변함.<sup>39)</sup> 그러나 공판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이는 허위답변일 가능성이 큼.

② 참사 당일 23명의 정보관을 집회·시위 현장에 모두 배치하고 이태원 핼러윈 축제 현장에는 전혀 배치하지 않았음. 이에 대해 용산경찰서의 前 정보과장 김진호 증인은 “당일 진보단체·보수단체의 큰 집회가 있어 집회·시위 현장에 정보관을 많이 배치하였다”라고 증언함. 서울경찰청 前 정보부장 박성민은 “용산서 정보과에서 집회·시위가 끝난 이후 특별히 지시한 사항이 없으며, 정보과 23명 모두 현장에 없었던 점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증언함. 용산경찰서 정보과는 핼러윈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파 관리의 중요성과 위험을 예견하였음에도 정보관을 배치하지 않고 집회·시위 장소에 정보관을 모두 파견하였음. 핼러윈 데이 대비 정보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용산경찰서 경사 김희석 증인은 “본인 담당 지역(이태원 일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인파가 오는 행사이니 나가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으나, 공판 과정에서 김진호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짐.

### (3) 공판 및 탄핵심판

①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달리 코로나 기간 이전에도 이태원 축제 당시 정보관이 파견된 정황이 확인됨. 김희석의 증언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2017년부터 매년 정보관을 파견하였음. 2022년 핼러윈 데이 대비 정보 보고서를 작성한 김희석은 코로나 기간 전에 작성한 2017년 보고서를 참고하여 2022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함. 2017년부터 코로나 이후인 2021년까지 매년 핼러윈 데이에 정보관을 파견하였고, 참사가 있었던 해인 2022년에만 정보관이 파견되지 않았음. 따라서 2022. 12. 21. 현장조사에서 서울경찰청이 예년에도 정보관을 파견하지 않았다고 한 답변은 허위 답변일 가능성이 큼.

---

39) 국정조사결과보고서 59면

② 용산서 정보과 간부가 사전에 정보관의 헬러윈 데이 파견을 막은 정황이 확인됨. 용산경찰서 관내 구역 중에서도 이태원 지역을 담당하는 정보 경찰(경사)인 김희석이 김희석이 헬러윈 대비 보고서를 김진호에게 보고하자, 김진호는 “주말에는 집회·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지시함.<sup>40)</sup>

③ 정보관이 헬러윈 데이에 파견될 경우 무전을 이용하여 긴급한 상황에 대비가 가능한 이점이 있음이 확인됨. 김희석에 의하면 정보관은 무전으로 바로 긴급한 상황을 알릴 수 있는데, “정보관이 현장에 있으면 아무래도 긴급하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전파할 수 있어서 참사 대응에도 유익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전으로 위험성을 바로 알릴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대응에 유리하다.”라고 증언함.

④ 용산서 관내 대규모 축제에는 항시 정보관이 배치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됨. 김희석 증언에 의하면 헬러윈 데이뿐 아니라 대규모 축제인 지구촌 축제, 해방촌 축제에도 용산서 정보관이 파견되었음.

⑤ 헬러윈 데이는 관내 주요 조치 행사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서도 주요 치안요소로 주목하였음. 용산서 정보과 팀장 이어진 증인은 “헬러윈 데이는 매년 계속해서 인파가 많이 몰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기동대를 배치한다든가 혹은 근무하는 인원들이 상황에 대비한다든가 하는 것은 용산경찰서 관내 주요 조치 사항으로서, 용산경찰서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행사이다”,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서도 10월 말 주요 치안 요소로서 헬러윈 데이를 인식하였다”고 증언하면서 2017년부터 2022년 정도까지 매년 “헬러윈 대책”이라는 경찰서 대책서가 따로 있다고 증거를 제시함. 이를 통해서도 용산서에서 헬러윈 데이를 관내 주요 조치 행사로 인식한 것이 분명하다고 증언함. 용산경찰서 정보과 경사 정동욱 증인은 “정보관이 과거에 헬러윈 축제 현장에 배치된 이유는 헬러윈 축제는 관내에 큰 인파가 몰리는 행사로, 용산경찰서가 헬러윈 데이를 중요시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함. 같은 맥락에서 정동욱은 과거에도 이태원 경비 경력이 배치되었다고도 증언함.

#### (4) 기타

해당사항 없음

---

40) 김희석이 “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헬러윈 축제에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 김진호는 “이거(보고서) 누가 쓰라고 했나, 주말이고 하니까 집회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 정보관이 축제에 나가서 할 게 뭐 있나. 이걸 주체(주최)도 없고 그냥 크리스마스 같은 거다. 누가 크리스마스 때 정보관이 나가나, 그냥 자료만 올리고 집회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등 김희석의 헬러윈 데이 인파 집중에 대한 경찰 차원의 대비 필요성에 관한 보고를 묵살함.



#### 나.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추가조사의 필요성

(1) 국정조사의 한계 - 허위 답변 및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불가능, 세부 사실관계의 누락

① 증인들이 허위로 답변하거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답변함. 현장조사에서 서울경찰청은 예년에도 정보관을 파견하지 않았다고 정보관을 파견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공판 과정에서 2020년 이전에도 정보관을 현장 배치하였다는 증언이 확보됨.

② 참사가 있었던 2022년 핼러윈 데이 당시의 정보관의 현황 파악은 이루어졌지만, 왜 정보관이 파견되지 않았는지는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함. 핼러윈 데이에 파견되지 않은 정보관들은 집회·시위 현장에 파견된 것으로 조사됨.

③ 서울경찰청 정보부와 용산경찰서 정보과 간부가 정보관 파견을 막은 세부적인 경위 및 핼러윈 데이가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의 주요 관내 조치 행사라는 사실관계는 드러나지 못하였음. 이와 같은 세부 사실관계는 경찰이 이태원 참사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사실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며, 나아가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이유를 파악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2) 공판의 한계 - 공사실 관련 쟁점인 “정보 보고서 삭제”에만 집중.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은 불가능.

① 이 사건 공판은 공용전자기록손상교사 등과 관련된 것으로 사실관계 중 “정보 보고서 삭제”가 중요한 쟁점임. 김희석의 증언을 통해 김진호가 핼러윈 당일에 정보관들에게 집회·시위 현장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났으나, 이는 공판의 주된 쟁점은 아니기 때문에 정보관이 왜 파견되지 못하였는지, 왜 집회·시위에만 집중해야 하였는지 드러나지 못함.

② 이 사건 공판은 공용전자기록손상교사 등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예년 정보관이 파견되었던 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음. 증인신문 과정에서 2017년부터 정보관이 파견되었다는 증언이 나왔으나, 이러한 증언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물적 증거는 확보되지 못함.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뿐 아니라 2017년 이전의 정보관 배치 상황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다. 추가조사과제

### (1) 추가조사과제의 내용

(가) 매해 용산경찰서 관내 축제(햐러윈 축제 포함한 모든 대규모 축제) 당일 파견된 정보관 현황

공판 증인신문을 통해 코로나 방역 기간 전인 2017년부터 2019에도 정보관이 파견되었다는 증언을 확보함. 코로나 기간인 2020년과 2021년에도 파견되었음. 그러나 이는 공판의 주요 쟁점이 아니므로 관련 문건이 공개된 상태가 아님. 또한, 증인신문을 통해 확보한 사실관계인, 햐러윈 축제뿐 아니라 지구촌 축제, 해방촌 축제 등 용산경찰서 관내 대규모 인파 축제에도 정보관이 파견된 현황 자료 확보가 필요함.

(나) 2022년 햐러윈 축제 당시 정보관들이 집회·시위에 파견된 이유

(다) 경찰청과 서울청, 용산경찰서가 햐러윈 축제보다 집회·시위에 집중하도록 정보관과 경력 배치를 사전에 계획하였는지<sup>41)</sup>

### (2) 주요 조사 대상

순번	소속기관명/직책/성명	비고
1	1.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정보과장/김진호 2.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정보관/김희석	

### (3) 조사 방법

- 관련 문건 확보 및 대면조사(직접조사)

### (4) 관련 법령

순번	법령명	비고
1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	

### (5) 참고 자료 목록

41) 조사과제 “대통령실 이전이 사전 대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연결될 수 있음.

순번	참고 자료 명	출처	작성일자
1	박성민 외 공판모니터링(제1회 공판기일)	박성민 외 공판	2023. 5. 22.
2	박성민 외 공판모니터링(제2회 공판기일)	박성민 외 공판	2023. 7. 3.
3	박성민 외 공판모니터링(제3회 공판기일)	박성민 외 공판	2023. 8. 7.
4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장비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2023. 1.
5	박성민 외 공판 공소장	박성민 외 공판	2022. 12. 30. 2023. 2. 8.

## 5.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은 핼러윈 데이 대비 보고서를 확인하였나

### 가. 기존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

#### (1) 특수본 수사

해당사항 없음

#### (2) 국정조사

① 2022. 10. 14.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 정보부의 자체 보고서를 통해 핼러윈 축제 인파 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음.<sup>42)</sup>

② 서울경찰청의 핼러윈 데이 인파 운집 대비 관련 보고서를 서울경찰청장이 확인했음에도 유관 기관(서울시, 소방 등)에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sup>43)</sup>

③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2022. 10. 14. 정보보고서는 범죄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고 이를 토대로 10. 17.과 10. 24. 지시를 하였다고 증언함.<sup>44)</sup> 핼러윈 데이 다중인파 관리의 필요성은 인지하였으나 인파관리보다 마약 등 범죄예방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했다는 사실이 확인됨.<sup>45)</sup>

42) 위 결과보고서 221-222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답변: “말씀드린대로 10월 14일 보고가 제 인식의 출발점임”)

43) 위 결과보고서 215-216면

44) 위 결과보고서 333-334면

### (3) 공판 및 탄핵심판

① 경찰청 정보라인의 보고 체계에 따르면 정보 보고서 중 완결된 형태는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서울청 정보부 자체 SRI 하달에 대한 용산경찰서 정보부 회신보고서인 ‘할로윈데이, 온오프 치안부담요인’은 정보 경찰이 첩보를 수집하여 보관한 견문이나 첩보 문서<sup>46)</sup>에 해당됨. 이를 바탕으로 서울경찰청은 ‘할로윈 데이(10. 31.)를 앞둔 분위기 부담요인’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청 정보부 자체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였음.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한 이 보고서는 견문 보고서를 활용한 보고서의 최종 단계라고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최종 완결 보고서는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등 정책결정자가 확인하게 되어 있음.<sup>47)</sup> 국정조사에서 서울경찰청장이 이 보고서를 전달받았다는 증언은 확보되었지만, 경찰청장도 이를 보고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②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된 정황과 이후 서울경찰청장의 인파 대비 지시 정황이 확인됨.<sup>48)</sup> 서울청 정보부는 할러윈 데이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2022. 10. 14.경 「할러윈 데이(10. 31.)를 앞둔 분위기 및 부담 요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할러윈 데이의 안전사고 위험성과 그에 대한 대비 필요성에 관하여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하였음. 할러윈 데이 대응 필요성 보고를 받은 서울경찰청장은 두 번의 화상회의를 통해 서울청 각부 부장 및 산하 경찰서장들에게 할러윈 데이의 인파 집중 위험성에 대해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서울경찰청은 서울경찰청장이 보고받은 2022. 10. 14. 정보보고서는 범죄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하였음. 하지만 공판 과정에서 해당 보고서는 할러윈 데이의 안전사고 위험성과 그에 대한 대비 필요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됨.

### (4) 기타

해당사항 없음

45) 위 결과보고서 602면

46) 최종 완결 보고서의 형태가 아닌 견문이나 첩보는 경찰견문관리시스템(POMS, 폼즈) 게시판에 별다른 결재가 없어도 등재 가능함. 내용의 사실 여부도 엄격하게 확인하지 않음

47) 최종 완결 보고서에 담길 내용은 사실 여부도 더 엄격하게 확인하도록 함. 보고서 결재도 계장-과장을 거치게 되어 있음.

48) 이하 내용은 공소장 인용

## 나.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추가조사의 필요성

### (1) 국정조사의 한계

① 순탄하지 않았던 여야 합의 과정으로 인해, 예정보다 국정조사 일정이 짧아짐. 이 때문에 경찰청 정보라인의 정보 하달과 보고 체계를 충분히 조사하지 못함. 공판 단계에서 견문 보고서를 활용한 완결된 형태의 최종 보고서는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 같은 정책결정자에게도 보고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된 정보보고서가 경찰청장에게도 보고되었는지 확인되지 못함.

②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022. 10. 14.에 보고받은 보고서의 내용이 확인되지 못함. 서울경찰청의 기관보고에 따르면 보고서는 주로 범죄예방 대책과 관련되어 있음. 하지만 공판을 통해 인파 대비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헬러윈 대비 관련 보고를 받은 김광호는 이후 화상회의를 진행하여 인파 대비를 지시한 정황도 드러남.

### (2) 공판의 한계 - 서울경찰청장에 보고된 정황을 확보하였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공판을 통해 서울청 정보부가 SRI 회신보고서를 토대로 자체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서울경찰청장이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받은 정황이 확인됨. 하지만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서울경찰청장이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는 공판의 주요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함.<sup>49)</sup>

## 다. 추가조사과제

### (1) 추가조사과제의 내용

(가)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청의 SRI 하달 및 보고체계와 관련된 실무진 명단 확인

49)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조사에서 SRI 회신보고서의 내용을 보고받고, 10월 14일에 헬러윈 대비를 인지하였으며, 인파 대비보다 범죄예방에 집중하였다고 증언함.

(나)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된 보고서가 경찰청장에게도 보고되었는지 여부

(다) 서울경찰청장에게 전달된 구체적인 보고내용

(라) 최종 완결된 정보 보고서가 대통령실에도 보고되었는지 여부

- 공판 과정에서 경찰청 정보라인에서 작성한 정책보고서는 대통령실에도 보고된다는 증언이 확보된 바 있음.

**(2) 주요 조사 대상**

순번	소속기관명/직책/성명	비고
1	1. 경찰청/경찰청장/윤희근 2. 경찰청/경찰청 차장(참사 당시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조지호 3.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정보분석과/정보분석과장/김찬수 4.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정보분석과 민생분석계/정보관/박상용 5. 서울특별시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6.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박성민 7.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정보분석과/정보분석과장 김용웅 8.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정보분석과 공공분석계 정책안전팀/정보관/전석만	

**(3) 조사 방법**

직접조사(대인조사)

**(4) 관련 법령**

순번	법령명	비고
1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	

**(5) 참고 자료 목록**

순번	참고 자료 명	출처	작성일자
1	박성민 외 공판모니터링(제1	박성민 외 공판	2023. 5. 22.

	회 공판기일)		
2	박성민 외 공판모니터링(제2회 공판기일)	박성민 외 공판	2023. 7. 3.
3	박성민 외 공판모니터링(제3회 공판기일)	박성민 외 공판	2023. 8. 7.
4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장비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2023. 1.
5	박성민 외 공판 공소장	박성민 외 공판	2022. 12. 30. 2023. 2. 8.

6. 용산경찰서 작성 정보보고서는 서울경찰청/경찰청에 보고되었나

가. 기존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

(1) 특수본 수사

해당사항 없음

(2) 국정조사

① 용산서가 작성한 정보보고서를 서울청 정보부 실무자는 열람하였고 경찰청 본청에 보고한 바 없고<sup>50)</sup> 경찰청에서도 서울청이나 용산서로부터 보고받거나 위험성, 대책수립 필요성에 관하여 보고받은바 없다고 하였으나,<sup>51)</sup> 공판 과정에서 경찰청 본청에도 보고된 정황이 확인됨.

② 경찰청 정보국에서 대통령실로 보고된 정책 참고자료에 관한 답변은 회피<sup>52)</sup>하였고, 수사관련 사항임을 이유로 국회의 자료제출요구도 거부<sup>53)</sup>함.

③ 서울청이 마약 등 범죄예방 중심으로 대책을 세웠다는 의혹은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확인되지 않음.<sup>54)</sup>

50) 위 결과보고서 65면

51) 위 결과보고서 195면

52) 위 결과보고서 65면

53) 위 결과보고서 65면

54) 위 결과보고서 602면

### (3) 공판 및 탄핵심판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의 SRI 하달 사항 및 회신보고서를 통해서 경찰청과 서울청에 보고된 정황이 드러남. 김진호가 총괄하는 용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정보관 김현호는 2022. 9. 29.경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하달된 SRI에 대하여 「가을축제행사 안전관리 실태 및 사고위험 요인」이라는 제목의 SRI 회신보고서를 작성한 후, 2022. 10. 4. 이를 서울청 정보부를 통해 경찰청 정보국에 회신하였음. 서울청 정보분석과 정보관 황성현은 2022. 10. 4. 김현호로부터 받은 SRI 회신보고서 등 서울청 산하 경찰서들의 SRI 회신보고서를 취합하고 별도로 경찰청 정보국에 보고한 SRI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22. 10. 5. 경찰청 정보분석과 정보관 박상용에게 회신 보고함.

박상용은 황성현으로부터 보고받은 SRI 회신보고서 등 지방청 정보기능에서 회신한 SRI 회신보고서들을 참고하여 「지역축제 행사 재개 관련 공공안녕 위험 요인」이라는 제목의 “정책참고자료”를 작성하였고, 위 자료는 지휘계통을 통해 경찰청 정보분석과장 김찬수 등 경찰청 지휘부에 순차 보고됨.

서울청 정보부 정보관 전석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해제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이태원 핼러윈데이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그로 인한 위험성과 경찰 대응 필요성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전석만은 2022. 10. 6. 용산서 등 서울청 산하 13개 경찰서 정보기능에 서울청 자체 SRI를 하달함.

용산서 정보과 정보관 이주태는 2022. 10. 6. 서울청 정보부 자체 SRI 하달에 대하여 「할로윈 데이, 온오프 치안부담요인<sup>55)</sup>」이라는 제목의 SRI 회신보고서를 작성한 후, 2022. 10. 7. 이를 서울청 정보부에 회신 보고함. 위 「할로윈 데이, 온오프 치안부담요인」 SRI 회신보고서에는 이태원 핼러윈 데이에 치안 부담요소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전석만은 이주태로부터 보고받은 SRI 등 서울청 산하 경찰서들의 SRI 회신보고서를 참고하여 「핼러윈데이(10. 31.)를 앞둔 분위기 및 부담 요인」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청 정보부 자체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위 보고서는 지휘계통을 통해 서울청 정보부 정보분석과장 김용웅, 서울청 정보부장 박성민, 서울경찰청장 김광호에게 보고됨.

### (4) 기타

55) 「할로윈 데이, 온오프 치안부담요인」 SRI 회신보고서는 2022년도 핼러윈 데이 전후 이태원 일대에 많은 인파가 몰려 그로 인한 위험성이 있고, 그 위험성에 대한 경찰 대응 필요성을 시사하는 자료임.



해당사항 없음

나.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추가조사의 필요성

(1) 국정조사의 한계 - 허위답변, 답변 회피, 국회자료제출요구 거부로 진실 규명에 한계

허위 답변과 답변 회피, SRI 하달 사항 및 회신보고서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거부로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음. 용산경찰서가 작성한 헬러원데이 대비 문건 3건은 간부의 지시로 삭제된 상태임.

(2) 공판의 한계 - 이 부분 진상규명은 공판의 주요 쟁점이 아님

용산서 정보과에서 작성한 SRI 회신보고서가 서울청과 경찰청으로 보고되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에게도 보고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지만, 공판의 주요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못함.

다. 추가조사과제

(1) 추가조사과제의 내용

- (가) 경찰청과 서울청에서 용산서가 작성한 SRI 회신보고서를 확인한 실무진 확인
- (나) 경찰청 정보관이 윤희근 경찰청장에게도 보고하였는지 여부 - 보고한 실제 실무진 확보
- (다) 경찰청과 서울청의 정보라인을 통해 대통령실에도 보고된 것인지 확인 필요

(2) 주요 조사 대상

순번	소속기관명/직책/성명	비고
1	1. 경찰청/경찰청장/윤희근 2. 경찰청/경찰청 차장(참사 당시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조지호 3.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정보분석과/정보분석과장/김찬수	

	4.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정보분석과 민생분석계/정보관/박상용 5. 서울특별시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6.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박성민 7.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정보분석과/정보분석과장 김용웅 8.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정보분석과 공공분석계 정책안전팀/정보관/황성현 9.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정보분석과 공공분석계 정책안전팀/정보관/전석만	
--	---	--

(3) 조사 방법

직접조사(대인조사)

(4) 관련 법령

순번	법령명	비고
1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	

(5) 참고 자료 목록

순번	참고 자료 명	출처	작성일자
1	박성민 외 공판모니터링(제1회 공판기일)	박성민 외 공판	2023. 5. 22.
2	박성민 외 공판모니터링(제2회 공판기일)	박성민 외 공판	2023. 7. 3.
3	박성민 외 공판모니터링(제3회 공판기일)	박성민 외 공판	2023. 8. 7.
4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장비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2023. 1.
5	박성민 외 공판 공소장	박성민 외 공판	2022. 12. 30. 2023. 2. 8.

7. 핼러윈 데이 대비 정보보고서를 보고받았음에도 조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참사 직 후 조직적으로 보고서를 은폐한 이유는

가. 기존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

(1) 특수본 수사

해당사항 없음

(2) 국정조사

① 해당 정보보고서가 삭제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되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움. 용산서 정보관이 작성한 보고서가 삭제되었다는 증언만 확보되었고, 참사 이전에 보고된 정보보고서였음에도 참사 직후 관련 문건 3건이 삭제·은폐되어 경찰청/서울경찰청/용산 경찰서의 사전 대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불가능함.

② 정보보고서의 인파 보고 10만 명을 실제로 대비하고자 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못함. 대규모 인파 집결에 대한 안전조치 관련 내용이 없고, 기동대를 200명 이상 이태원 현장에 배치한다는 보도자료가 있으나 실제 137명이 배치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교통기동대를 오인해서 쓴 것이고 200명은 연인원을 의미하며 경찰 기동대는 범죄예방 등을 위해서도 배치된다고 답변함.

③ 용산서 정보과 실무진들이 간부들로부터 정보보고서 삭제지시를 받은 정황이 확인됐고, 이후 공판과정에서 구체적 사실관계가 드러남. 김희석 증인(용산경찰서 경사)은 본인이 인파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분석보고서를 작성한 바가 있으며, 정보과장·정보계장에게서 '보고서를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함.

(3) 공판 및 탄핵심판

① 서울경찰청 前 정보부장인 박성민의 보고서 삭제 지시를 받은 용산경찰서 前 정보과장인 김진호가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작성한 핼로윈 대비 보고서 3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됨.

공소장에 의하면, 김진호는 2022. 10. 31. SBS 기자로부터 핼러윈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경찰력 대비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받고, SBS가 경찰의 인파 집중에 대한 대응이 부실하다는 비판적 보도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함. 김진호는 김희석의 보고사항을 목살한 자신의 과오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용산서 정보계장 정삼모로 하여금 김희석에게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 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후 SBS에서 2022. 10. 31. “김희석의 할러윈 데이 보고서가 서울청에 보고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함.

박성민은 김희석 작성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희석 작성 보고서 이외에도 3건의 SRI 관련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 및 이 보고서들이 서울청 정보부에 보고된 사실을 인식하게 됨. 이 보고서들이 외부로 또다시 알려지게 될 경우 경찰 정보기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을 우려했고, 여기에 더해 경찰청 본청이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와 ‘이태원 사고 특별감찰팀’을 발족하여 수사 및 감찰 활동을 본격화하였음. 이에 박성민은 보고서들 때문에 경찰관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에 관련된 형사책임 혹은 징계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용산서 정보과에서 생산한 할러윈 데이 인파 집중 상황에 대해 경찰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 전체를 삭제시키기로 결의함. 박성민은 서울청 산하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참여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용산서 정보과에서 생산된 관련 보고서 일체를 삭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박성민의 지시를 받은 김진호는 곽영석 등 정보과 경찰관들에게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PC에 저장된 관련 파일을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하였음.

② 박성민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여론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됨. 공공안녕이 최우선 과제인 정보 경찰관이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을 차단하고자 경찰 만능주의 풍조에 대비할 여론 조성을 지시함.

공소장에 의하면, 박성민은 2022. 10. 30. 경찰 정보 관계자들에게 “개인 생각인데 혹시 사고 책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 참고하면 좋겠네.”라면서 지자체 등의 책임을 부각시키고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을 차단해야한다는 취지의 대응방안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함.

또한 박성민은 2022. 10. 31. 경찰의 경비기능을 담당하는 간부들에게 “경찰은 안전 확보의 1차 책임자가 아니다. 앞으로 경찰의 경비원화를 맞는 좋은 논리니까 지역축제, 행사에 경찰이 안전유지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관행을 깨고, 범죄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에 위험이 있을 때에만 경찰이 압도적 강제력으로 장악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경찰의 정보 기능과 경비 기능 등이 헬러윈 사고의 1차적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확산시키고자 하였음.

#### (4) 기타

해당사항 없음

### 나.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추가조사의 필요성

헬러윈 대비 정보보고서가 삭제된 사실 자체는 밝혀졌지만, 이러한 문건이 삭제된 이유가 무엇인지, 사전에 보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음.

### 다. 추가조사과제

#### (1) 추가조사과제의 내용

(가) 사전에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에도 보고되었는데도 헬러윈 데이 인파 대비를 하지 않은 이유

정보보고서에는 인파 밀집에 대비할 필요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인파 밀집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 그러나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는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중대한 잘못임. 따라서 이와 같은 직무상 잘못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음.

(나) 관련 정보보고서를 반드시 삭제해야만 했던 이유

인파 밀집 사고 위험성을 경고한 정보보고서는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의 업무상 과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임. 따라서 이러한 정보보고서는 관련자들의 형사사건 및 징계사건의 중요한 증거임. 공판 단계에서 증언한 용산서 정보과의 실무진들은 관련 문건을 참사 직후 삭제하는 것은 오히려 의심스러운 정황을 만들 수 있으므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음. 용산경찰서 정보과 팀장 이어진은 삭제를 지시한 김진호에게 항명하였음.

그런데도 경찰청 정보라인 간부급들은 특수본과 국회 자료제출요구에 거부하면서까지 삭제 강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함.

(2) 주요 조사 대상

순번	소속기관명/직책/성명	비고
1	1. 경찰청/경찰청장/윤희근 2. 경찰청/경찰청 차장(참사 당시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조지호 3.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정보분석과/정보분석과장/김찬수 4. 서울특별시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5.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박성민 6.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경비부장/윤시승 7.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정보분석과/정보분석과장 김용웅 8. 용산경찰서/경찰서장/이임재 9.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정보과장/김진호 10.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직책불명/성명불명 (김진호에게 헬러윈데이 관련 업무추진 세척 수립하라는 취지로 업무연락을 한 인물) 11.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정보분석팀/정보분석팀장/이어진 12.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정보관/김희석 13.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정보관/김현호 14.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정보관/이주태 15.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정보관/곽영석	

(3) 조사 방법

직접조사(대인조사, 실지조사)

(4) 관련 법령

순번	법령명	비고
1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	

(5) 참고 자료 목록

## 8. 서울경찰청장은 왜 핼러윈 데이 사전 대비를 하지 않았나

### 가. 기존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

#### (1) 특수본 수사

해당사항 없음

#### (2) 국정조사

정보보고서가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되어 2022. 10. 14. 핼러윈 데이 인파 대비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지만, 인파 대비보다는 범죄예방 대책에 중점을 둔 정황이 확인됨.<sup>56)</sup>

#### (3) 공판 및 탄핵심판

2022. 10. 14. 정보보고서를 보고 받은 서울경찰청장 김광호는 이를 토대로 2022. 10. 17. 및 10. 24.에 서울청 각부 간부들과 경찰서장들에게 인파 집중 위험성을 대비할 것을 지시하는 화상회의를 열었음. 공소장에 의하면 2022. 10. 17. 9시경 진행된 화상회의(서울청 각부 부장 및 서울청 산하 경찰서장 참석)에서 “올해는 3년만의 거리두기 해제로 이태원, 홍대, 강남 등을 중심으로 핼러윈 데이에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이 예상되므로 해당 부서, 관서는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한 촘촘한 사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10. 24. 9시경 다시 한번 화상회의를 통해 서울청 각부 부장 및 화상회의에 참가한 서울청 산하 경찰서장들에게 핼러윈 데이의 인파 집중 위험성에 대해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음. 위 두 번의 지시를 받은 서울청 및 산하 경찰서에서는 별다른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아니함.

#### (4) 기타

해당사항 없음

### 나.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추가조사의 필요성

국정조사와 공판을 통해 서울경찰청장이 2022. 10. 14.에 서울경찰청에서 작성한 위험 분석보고서를 보고 받은 사실이 드러남. 하지만 서울경찰청이 전달받은 정보보고서의 실

56) 위 결과보고서 213면, 217면, 333면

물을 확보하지 못하고 서울경찰청장의 증언과 공소장 내용에 의존하여 정보보고서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파악함.

**다. 추가조사과제**

**(1) 추가조사과제의 내용**

(가)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된 정보보고서 실제 문건의 확보

(나)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된 헬러인 대비 문건에 인파 대비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예방에 치중한 이유

(다) 서울경찰청장이 실제로 지시한 내용 - 정보보고서 보고 이후 열린 두 번의 화상회의 기록 및 영상녹화자료가 있는지 확인, 화상회의 참석자 목록 및 서울경찰청장의 지시 내용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

**(2) 주요 조사 대상**

순번	소속기관명/직책/성명	비고
1	1. 서울특별시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2.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안전정보외사부/공공안전정보외사부장/박성민 3.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경비부장/윤시승 4. 용산경찰서/경찰서장/이임재 5. 용산경찰서 공공안전정보외사과/정보과장/김진호	

**(3) 조사 방법**

- 직접조사(대인조사, 실지조사 등), 관련 보고서 확보

**(4) 관련 법령**

순번	법령명	비고
1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	

**(5) 참고 자료 목록**



순번	참고 자료 명	출처	작성일자
1	박성민 외 공판모니터링(제1회 공판기일)	박성민 외 공판	2023. 5. 22.
2	박성민 외 공판모니터링(제2회 공판기일)	박성민 외 공판	2023. 7. 3.
3	박성민 외 공판모니터링(제3회 공판기일)	박성민 외 공판	2023. 8. 7.
4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장비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2023. 1.
5	박성민 외 공판 공소장	박성민 외 공판	2022. 12. 30. 2023. 2. 8.

## 9. 그동안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대비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해명은 사실인가

### 가. 기존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

#### (1) 특수본 수사

해당사항 없음

#### (2) 국정조사

주최자가 없는 행사 대비와 관련해서는 모호한 답변만 확인됨.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 서울청에서 경비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우가 다양하다고 답변<sup>57)</sup>하였고, 주최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일선 경찰이 잘못 판단하였거나 경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답변함.<sup>58)</sup>

#### (3) 공판 및 탄핵심판

① 용산서 정보과는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지역 축제의 인파 밀집 사고 위험에 대비해온 사실이 확인됨. 공소장에 의하면 용산서 정보관 김현호는 2022. 9 29.경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하달된 SRI에 대하여 「가을축제행사 안전관리 실태 및 사고위험 요인」

57) 위 결과보고서 214면

58) 위 결과보고서 200면, 214면 및 215면

이라는 제목의 SRI 회신보고서를 작성한 후, 2022. 10. 4. 이를 서울청 정보부를 통해 경찰청 정보국에 회신하였음. 위 「가을축제행사 안전관리 실태 및 사고위험 요인」 SRI 회신보고서에는 서울 용산구에서 2022년도에 개최되는 가을축제 . 행사로서 각 주최자가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축제, 서울 거리예술 축제, 이태원 지구촌 축제, 서울 뮤직 페스티벌과 병렬적으로, 주최자가 없는 이태원 할러윈 데이 축제도 기재되어, 경찰이 주최자 유무와 관계 없이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파악하고 그 위험성에 대비하여 경찰 경비기능 등에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등 조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함. 그동안 경찰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서 경찰이 예방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sup>59)</sup>하였으나, 용산서가 서울청 정보부로 회신한 SRI 회신보고서에는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음.

② 이태원 할러윈 축제는 매년 용산경찰서의 관내 주요 조치 행사였다는 사실이 확인됨. 용산경찰서 정보과 팀장 이어진은 증인신문에서 “할러윈데이는 매년 계속해서 인파가 많이 몰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기동대를 배치한다든가 혹은 근무하는 인원들이 상황에 대비한다든가 하는 것은 용산경찰서 관내 주요 조치 사항으로서, 용산경찰서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행사이다”라고 증언함.

#### (4) 기타

해당사항 없음

### 나.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추가조사의 필요성

국정조사에서는 주최자 유무와 행사 대비와의 관련성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제시함. 용산서가 작성한 할러윈 대비 문건을 통해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할러윈 축제를 대비해 온 증거가 남아있지만, 진행 중인 이임재에 대한 공판에서 관련 증인들은 여전히 “경찰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대비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함.

### 다. 추가조사과제

#### (1) 추가조사과제의 내용

---

59)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책임자들은 국정조사에서도 할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이기에 대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회 자료제출요구에 거부한 것으로 보임. 여전히 공판 과정에서 용산경찰서의 일부 증인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임을 강조함.

(가) 용산서가 작성한 정보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인파 위험을 보고함. 또한 매년 이태원 핼러윈 축제는 용산경찰서의 관내 주요 조치 행사였음. 그런데도 용산경찰서가 2022년에는 이태원 축제의 인파 밀집 사고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은 이유

(나) 최근 5년간 경찰의 주최자 있는 행사와 주최자 없는 행사의 인파 대비 실적

(2) 주요 조사 대상

순번	소속기관명/직책/성명	비고
1	1. 경찰청/경찰청 차장(참사 당시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조지호 2.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정보분석과/정보분석과장/김찬수 3.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정보분석과 민생분석계/정보관 박상용 4. 서울특별시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5.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박성민 6.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경비부장/윤시승 7.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정보분석과/정보분석과장 김용웅 8.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정보분석과 공공분석계 정책안전팀/정보관/황성현 9.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정보분석과 공공분석계 정책안전팀/정보관/전석만 10. 용산경찰서/경찰서장/이임재 11.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정보과장/김진호 12.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직책불명/성명불명(김진호에게 핼러윈데이 관련 업무추진 세획 수립하라는 취지로 업무연락을 한 인물) 13.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정보분석팀/정보분석팀장/이어진 14.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정보관/김희석 15.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정보관/김현호 16.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정보관/이주태 17.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정보관/곽영석	

(3) 조사 방법

- 직접조사(대인조사, 실지조사 등)

(4) 관련 법령

순번	법령명	비고
1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	

(5) 참고 자료 목록

순번	참고 자료 명	출처	작성일자
1	박성민 외 공판모니터링(제1회 공판기일)	박성민 외 공판	2023. 5. 22.
2	박성민 외 공판모니터링(제2회 공판기일)	박성민 외 공판	2023. 7. 3.
3	박성민 외 공판모니터링(제3회 공판기일)	박성민 외 공판	2023. 8. 7.
4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장비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2023. 1.
5	박성민 외 공판 공소장	박성민 외 공판	2022. 12. 30. 2023. 2. 8.

10. 대통령실 이전이 경찰 배치 등 안전사고 대비에 영향을 미쳤는가

가. 기존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

(1) 특수본 수사

해당사항 없음

(2) 국정조사

헬러윈 데이 당일 집회·시위에 집중된 정황은 밝혀졌지만, 대통령실 이전과의 관련성은 부인하였음. 경력운용 계획상 용산 및 대통령사저 주변에 총 5개의 예비대가 집중배치된 것은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과 대통령실 이전으로 경찰 업무에 영향이 초래된 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답변,<sup>60)</sup> 박성민 서울청 前 정보부장의 답변,<sup>61)</sup> 김진

60) 위 결과보고서 217면 및 334면

호 용산경찰서 前 정보과장의 답변,<sup>62)</sup> 이임재 前 용산경찰서장의 답변<sup>63)</sup> 등을 통해 일관되게 확인됨.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라 경력이 용산 대통령실과 서초동 대통령 사저 인근에 집중 배치되어 핼러윈 축제 현장에 경력이 배치되지 못하였고, 대통령실의 이전 이후 용산경찰서장과 예하 경찰인력이 집회·시위 대응 업무와 대통령 출·퇴근 관련 경비 업무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던 만큼 대통령실 이전이 참사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됨. 반면, 대통령 경비는 경호 전문 경찰부대가 맡고 있어 대통령 경호 때문에 참사에 대응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참사 대응 미흡 간에 연관성은 없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윤희근 증인(경찰청장)은 10월 29일에 이태원 현장에 경비 인력을 증원하지 못한 이유는 관저 경호나 대통령실 이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증언함.

### (3) 공판 및 탄핵심판

① 이태원 지역 담당 정보관이 핼러윈 축제로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자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김진호가 거부하고 집회·시위 현장에 집중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됨. 용산경찰서 정보과 경사 김희석이 과장인 김진호에게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면 보고하고, “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핼러윈 축제에 나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니, 김진호는 “누가 이거 작성하라고 했냐”라며, “크리스마스 때 정보관이 나가냐, 핼러윈 축제는 크리스마스 같은 것이라며, 정보관이 나갈 것 아니다”라고 함. 김희석은 김진호에게 이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고, 김진호의 지시에 따라 2022년 6월 이후 집회·시위 현장에 치중하면서 지역정보 관리를 하기 어려웠다고 증언함.

② 이태원 지역 담당 정보관은 핼러윈 데이 대비 간담회에도 집회 및 시위 관리로 인해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없었음. 김희석은 집회 관리로 인해 10. 26. 핼러윈 축제 대비 간담회 참석에 뒤늦게 도착하였음. 전농 집회에 갔다가 뒤늦게 참석했기 때문에 간담회 내

61) 참사 당일 가장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보수단체·진보단체의 대규모 집회로 집회 및 시위관리가 중요 업무였다고 답변하고, 핼러윈 데이 현장에 정보과 23명 중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함.

62) 집회 대응에 집중했고 핼러윈 데이 위험성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답변함.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집회동선이 달라졌고, 대통령실 이전이 있기 전에는 핼러윈 데이에 현장에 정보관이 배치됐었다고 답변함.

63) 대통령실의 이전으로 용산서 업무가 과중해졌고, 이에 따라 용산서 인력의 증원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됨.

용을 전부 알지는 못함. 집회 시위를 관리하고 뒤늦게 참석하여 자세하게 간담회를 청취하는 것은 어려웠음.

③ 용산 집무실 이전에 따른 용산서 경찰관의 업무 과중이 확인됨.

④ 참사 발생일 바로 다음날 서울청 정보부장 박성민은 대통령실 용산이전이 참사 발생에 대한 책임과 연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비할 여론 조성 방안을 기획한 사실이 확인됨.

#### (4) 기타

해당사항 없음

### 나.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추가조사의 필요성

참사 당일 경찰력이 용산 대통령실 주변의 집회·시위에 집중된 정황이 밝혀졌지만, 대통령실 이전과의 관련성은 경찰 스스로 부인함에 따라 의혹으로만 남음.

### 다. 추가조사과제

#### (1) 추가조사과제의 내용

(가) 경찰이 집회·시위에 집중된 이유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나) 헬러윈 데이의 용산서 및 서울청 경력 배치가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달라졌는지 여부

#### (2) 주요 조사 대상

순번	소속기관명/직책/성명	비고
1	1. 경찰청/경찰청장/윤희근 2. 경찰청/경찰청 차장(참사 당시 경찰청 공공안녕정보 국장)/조지호 3. 서울특별시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장/김광호 4.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공공안녕정보 외사부장/박성민 5.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경비부장/윤시승	

6. 용산경찰서/경찰서장/이임재	
7.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정보과장/김진호	
8.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정보분석팀/정보분석팀장/이어진	
9.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정보관/김희석	
10.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정보관/김현호	
11.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정보관/이주태	
12.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정보관/곽영석	

**(3) 조사 방법**

- 직접조사(대인조사, 실지조사 등)/연구용역

**(4) 관련 법령**

순번	법령명	비고
1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	

**(5) 참고 자료 목록**

순번	참고 자료 명	출처	작성일자
1	박성민 외 공판모니터링(제1회 공판기일)	박성민 외 공판	2023. 5. 22.
2	박성민 외 공판모니터링(제2회 공판기일)	박성민 외 공판	2023. 7. 3.
3	박성민 외 공판모니터링(제3회 공판기일)	박성민 외 공판	2023. 8. 7.
4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장비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2023. 1.
5	박성민 외 공판 공소장	박성민 외 공판	2022. 12. 30. 2023. 2. 8.

(별첨1)

• 경찰의 다중운집 행사 관련 매뉴얼, 대책 수립 연혁

일자	내용
2005	경찰, 수익성 행사 관리 매뉴얼 제작
2006	수익성 행사 관리 매뉴얼-> 혼잡경비 실무 매뉴얼로 개정
2014. 8.	혼잡경비 실무 매뉴얼->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로 확대, 개정
2018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 “2018년 할로윈 데이 생활안전 대책” 에 “이태원 일대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 명시
2019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 “2019년 할로윈 데이 생활 안전 대책” 에 같은 내용 명시
2020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 “2020년 ‘할러윈데이’ 종합치안대책” 에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및 범죄활동 강화”,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 대비” 내용 명시
2020. 10. 28.	용산구청 주관으로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이태원역장 등 유관기관 합동 연석회의 개최, 이태원 할러윈데이 현장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순찰 등 활동
2021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2021년 할러윈데이 경찰 방역치안 대책”, 용산경찰서 경비과, “2021년 할러윈데이(10.31.) 방역안전 경비대책” 에 “다중운집방지를 위하여 경찰관기동대 3개 부대를 이태원에 배치한다” 는 내용 기재
2021. 10. 27.	용산구청 주관으로 용산경찰서, 이태원119안전센터, 이태원역장 등 유관기관 합동 연석회의 개최, 이태원 할러윈데이 현장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순찰 등 활동
2022.	용산경찰서, 아래와 같이 이임재 부임(2022. 1. 17.) 후 경비대책 수립 2022. 6. 17. 시행 ‘2022 서울드림페스티벌 노들섬 행사 경비대책’ 수립 2022. 9. 23. 시행 ‘제72주년 국군의날 특집, KBS 불후의 명곡 경비대책’ 수립 2022. 9. 26. 시행 ‘2022 서울 비보이 페스티벌 행사 경비대책’ 수립 2022. 10. 6. 시행 ‘2022 서울거리예술축제 행사 경비대책’ 수립 2022. 10. 13. 시행 ‘2022년 서울시계 불꽃축제 대책서’ 수립



(별첨2)

- 공판기일 관련자 진술 내용<sup>64)</sup>

공판기일	진술자/지위	내용
제1회 공판기일(2023. 5. 8.)	OOO(용산경찰서 112운영지원팀장), 증인	<p>2022. 10. 13. 이임재(용산경찰서장)헬러윈 또는 지구촌 축제 관련 기동대 배치 요청했음.</p> <p>과거 인파 관련 신고가 없었으므로 교통사고 우려에 초점을 맞추고 교통기동대 지원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함. 따라서 경비기동대를 요청한 적은 없음. 공문을 통한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 간 경비기동대 관련 요청은 없었음.</p> <p>증인이 교통기동대를 실무적으로 타진했다고 하자 송병주(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된다고 함. 이임재(용산경찰서장)가 그 과정을 세부적으로 적으라고 하여 보고서에 ‘교통기동대 지원요청’으로 정정함.</p> <p>증인은 서울에 집회시위가 많아 경찰관기동대 지원요청을 하더라도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p> <p>피고인 이임재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헬러윈 데이, 성추행, 마약 단속 사전 체크, 대책 수립(기동대)”라고 적혀 있음.</p> <p>최OO(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서무)이 시간대별로 기재된 문건을 혼자 작성하기 어려움.</p>
제2회 공판기일(2023. 6. 22.)	OOO(용산경찰서 112운영지	2017년 당시에는 헬러윈 데

64) 각 공판 모니터링 보고서의 기재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원팀장), 증인	이에 용산경찰서 의경 60명이 배치되었음. 정보, 경비측에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임재(용산경찰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리가 없음.
제4회 공판기일(2023. 8. 21.)	000 경사(용산경찰서 현직 경찰관, 용산경찰서장 무전 수행 담당), 증인	집회 소음이 발생하는 가운데 여러 개 무전망을 동시에 청취하여도 내용을 분별할 수 있음. 연습으로 체화되는 것.
	000(용산경찰서 전직 경찰관, 용산경찰서장 수행 운전 기사), 증인	이임재는 헬러원보다는 대통령 관저 앞 상황에 신경을 씀.

### III. 소방<sup>1)</sup> 및 보건복지부(응급의료)에 대한 추가조사과제

#### ○ 참고사항<sup>2)</sup>

1. 현장의 눈이 되었어야 할 영상 송출 시스템은 왜 먹통이었나
2. 1조 5천억의 사업비가 투입된 재난안전통신망은 왜 무용지물이 되었나
3. 구조 및 응급조치 지연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4. 희생자들은 생사의 기로에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았나
5. 중증분류 및 병원이송조치, 사망 판정 등에서의 의문점들
6. 참사 당시 신속한 응급의료체계가 작동하였나
7. 참사 당일 용산소방서 책임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 1. 현장의 눈이 되었어야 할 영상 송출 시스템은 왜 먹통이었나

##### 가. 기존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

##### (1) 특수본 수사

해당사항 없음

##### (2) 국정조사

① 소방 구급차 바디캠을 통해 방재센터 등 유관 기관에서 참사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없었고 실시간 영상을 촬영하여 송출하는 시스템이 있으나 당일 휴대전화 폭주로 장애가 발생하여 영상을 송출할 수 없었고 중계 차량도 오지 않음.<sup>3)</sup>

② 현실적으로 CCTV로 현장 확인이 어려운 점이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정도이고 사전에 바디캠 영상 송출 시스템을 어떻게 구비하고 있었는지 등 확인된 사실 없음.<sup>4)</sup>

##### (3) 공판 및 탄핵심판

해당사항 없음

1) 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를 모두 포함합니다.

2) 참사 발생 직후, 현장대응 과정부터 희생자 이송까지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 관련 과제에 대해서는 “기관별 공통과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국정조사결과보고서 79면

4) 위 결과보고서 115면

## 나.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추가조사의 필요성

① 소방 구급대원(또는 구급차량)의 바디캠 촬영 영상은 '자동'으로 방재센터 등 유관 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것인지 기존 조사 내용으로는 그 가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임(서울시는 국정조사에서 바디캠 촬영 영상과 직접 연결하여 '송출' 시스템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있음). 따라서 바디캠 영상을 자동으로 송출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있다면) 유관기관에서 그와 같은 송출시스템과 연계하여 송출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있다면) 왜 송출시스템을 작동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함.

② 소방 구급대원(또는 구급차량)의 바디캠 영상이 촬영은 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자동 '송출' 시스템이 오류였던 것인지, 이에 실시간으로 영상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이마저도 당일 휴대전화 폭주로 장애가 발생했던 것인지 확인 필요함.

③ 소방 구급대원(또는 구급차량)의 바디캠, 실시간 영상 촬영 송출 시스템, 중계 차량을 통한 영상 촬영 및 송출까지 어떤 방법으로도 현장에서 송출하기 어려웠던 것인지 조사가 필요함.

## 다. 추가조사과제

### (1) 추가조사과제의 내용

(가) 소방대원(또는 구급차) 바디캠 촬영 시스템이 자동으로 방재센터 등 유관 기관에 송출되는지 여부, 자동으로 송출되는 유관 기관의 범위

(나) 소방대원(또는 구급차) 바디캠 촬영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소방대원이 현장을 직접 촬영하여 영상 송출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위 (1)·(2) 시스템이 각 오류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일체의 기록

(라) 당일 휴대전화 폭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는지 여부, 어느 정도 인파가 몰릴 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인지, 통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상황전파를 해야 하는지 등

(마) 촬영 중계 차량 요청은 언제 하는 것인지, 10·29 이태원 참사에서 촬영 중계 차량마저 현장에 도착하지 못한 이유

(2) 조사 주요 대상

순번	소속기관명/직책/성명	비고
1	소방 조직 내 현장실무관계자	

(3) 조사 방법

- 조사와 관련된 기관보고, 조사와 관련된 서류 일체
- 대인조사 (소방 조직 내 관계자 및 현장대응 결정권자, 현장실무자)

(4) 관련 법령

순번	법령명	비고
1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2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3	소방기본법	

(5) 참고 자료 목록

순번	참고 자료 명	출처	작성일자
1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023. 1.

2. 1조 5천억의 사업비가 투입된 재난안전통신망은 왜 무용지물이 되었나

가. 기존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

(1) 특수본 수사

해당사항 없음

(2) 국정조사

재난통신망이 왜 작동되지 못했는지 밝혀진 사실 없음, 고성 산불 때도 활용되었고 2018년 평창올림픽 때에도 유사한 시스템으로 훈련까지 했으나 서울소방이 PS-LTE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sup>5)</sup>

### (3) 공판 및 탄핵심판

해당사항 없음

## 나.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추가조사의 필요성

① 재난통신망 사용에 관하여 10·29 이태원참사 당일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만 확인하였을 뿐 참사 이전에 재난안전통신망 자체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실제 사용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었는지 자체가 밝혀지지 않음.

② 재난안전법 및 재난안전통신망법에 의하면, 소방청·소방본부, 소방서는 재난관리에 있어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해야 하고 매년 재난안전통신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③ 재난안전법 및 재난안전통신망법에 따라 재난안전기관(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은 재난의 대응 및 복구과정에서 재난안전 관련기관 간 상황의 지시, 보고 및 전파 시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그럼에도 참사 당일 재난안전기관(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중 어느 곳도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음.

## 다. 추가조사과제

### (1) 추가조사과제의 내용

(가) 참사 발생 이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의무이행 여부

① 참사 이전 긴급구조기관(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현황 조사 필요

②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계획 조사 필요

---

5) 위 결과보고서 290면

③ 재난안전통신망 실제 사용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었는지 조사 필요

(나) 참사 발생 이후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의무 불이행 여부

참사 당일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내역 일체 조사 필요

(2) 조사 주요 대상

순번	소속기관명/직책/성명	비고
1	소방조직(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3) 조사 방법

- 조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실시

(4) 관련 법령

순번	법령명	비고
1	재난안전법 제34조의8 제1항 <sup>6)</sup>	
2	재난안전통신망법 제6조 <sup>7)</sup> , 제16조 제1항 제1호 <sup>8)</sup>	
3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sup>9)</sup>	

6) 재난안전법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7) 재난안전통신망법 제6조(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

① 재난안전 관련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재난안전통신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관별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위한 단말기 등의 신규 도입·교체
2.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기관별 재난대응절차의 수립 및 보완
3. 재난안전통신망과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보의 공동이용
4.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자 교육·훈련
5. 재난안전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및 관리
6. 재난안전통신망 통화권 확대
7.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5) 참고 자료 목록

순번	참고 자료 명	출처	작성일자
1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023. 1.

3. 구조 및 응급조치 지연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가. 기존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

(1) 특수본 수사

특수본 수사결과에 의하면, 사고 발생 후 사고 골목 아래쪽을 통해 22시 19분경 경찰서 현장 도착·구조 개시(22시 30분경 119구조대 현장 도착, 구조 개시), 사고 골목 위쪽을 통해 22시 32분경 경찰관 현장 도착하여 구조 개시(22시 37분경 119구조대 현장 도착, 구조 개시), 경찰·소방은 끼임으로 인한 압력이 덜한 사고 골목 위쪽에서부터 끼여 있던 사람들을 구조하면서 순차적으로 심폐소생술 실시, 23시 22분경 끼임 해소 등이 있었다고 함.<sup>10)</sup>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재난안전통신망법 제16조(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①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재난의 대응 및 복구과정에서 재난안전 관련기관 간 상황의 지시, 보고 및 전파

(제2조 ③. "재난안전 관련기관"이란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을 말한다.)

9)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3조(재난안전 관련기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중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국방부

나. 보건복지부

다. 경찰청

10) 특수본 작성 이태원 사고 수사결과 보도자료 12면



## (2) 국정조사

① 소방대원이 현장 최초 도착한 22시 37분경 생존자가 많았음에도 대응 단계 빠르게 격상하며 신속히 대처하지 않음, 용산소방서장과 119대원 전면부 도착 시간 22시 31분경, 후면부 도착 시각 22시 37분경, 대응단계는 1단계이든 3단계이든 현장 상황에 따라 현장 지휘관이 할 수 있었음.

② 유해진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팀원은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출동해서도, 현장에서 계속하여 유관기관에 협력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함. 소방 무전 녹취록을 보면 경찰 인력 지원 요청을 수없이 반복하였음, 하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은 2명 기억하고 현장 통제는 한참 동안 이뤄지지 않았음.<sup>11)</sup>

③ 경찰 기동대는 23시 30분경 이후가 되어서야 현장에 겨우 도착했고 현장 통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종합관제센터 등 유관기관 신고가 22시 18분에 들어왔음에도, 서울경찰청 경비과에서 기동대를 추가 배치한 것은 1시간이 경과한 23시 33분경이었으며 그마저도 기동대 1대만 보냈음.<sup>12)</sup>

④ 이태원 사고 이송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환자 접촉 시간이 다음날 오전 6시 이후인 경우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사실은 없음.

## (3) 공판 및 탄핵심판

해당사항 없음

### 나.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추가조사의 필요성

소방이 첫 구조를 시작한 22시 30분경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현장 상황이 어떠했는지 파악 자체가 안 되고 있음.

### 다. 추가 조사과제

#### (1) 추가조사과제의 내용

(가) 이태원 사고 이송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환자 접촉 시간이 다음날 오전 6시 이

---

11) 위 결과보고서 370면

12) 위 결과보고서 60면

후인 경우도 있음, 소방 구급차 바디캠과 CCTV를 통해 2022. 10. 29. 22시부터 2022. 10. 30. 오전 7시까지의 현장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희생자,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나) 차량통제, 인력배치만 제대로 되었어도 희생자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그로 인해 이번 참사의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었는지

(다) 최초 구조 시간, 도로통제 시간, 구조 종료 시간, 구급인력이 구체적으로 몇 명이 투입되었고, 어떤 구급활동을 하였는지 등(생존자와 구조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소방과 경찰 인력이 매우 적었고 crp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함)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

(라) 신고 접수 시부터 대응 3단계까지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된 이유(구체적으로 2단계든 3단계든 발령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와 같은 판단이 늦어진 경과와 그 이유)

**(2) 조사 주요 대상**

순번	소속기관명/직책/성명	비고
1	현장에 파견되었던 소방조직의 실무자들, 현장 지휘권자, 생존자	

**(3) 조사 방법**

- 연구용역(소방 구급차 바디캠, 참사 골목 현장에 설치된 각종 CCTV 분석)
- 대인조사(현장에 파견되었던 소방조직의 실무자들, 현장 지휘권자, 생존자)

**(4) 관련 법령**

순번	법령명	비고
1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령	
2	119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 참고 자료 목록**

순번	참고 자료 명	출처	작성일자
1	이태원 사고 수사결과 보도자료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보도자료	2023. 1. 13.
2	서울소방재난본부 2022년 국정조사 기관 업무보고	소방재난본부	2022. 12.
3	(전체녹취록 87건) 2022년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동 압사사고	서울소방재난본부 장혜영의원 국정조사 요구자료	
4	유관기관 상황전파 목록	서울소방재난본부 장혜영의원 국정조사 요구자료	
5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023. 1.
6	서울종합방재센터 국조특위 21차 및 22차 요구자료 답변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장혜영의원 국정조사 요구자료	2023. 1. 4.
7	이태원 사고 이송환자 현황	서울소방재난본부 진선미의원국정조사 요구자료	
8	소방 바디캠, CCTV		

#### 4. 희생자들은 생사의 기로에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았나

##### 가. 기존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

###### (1) 특수본 수사

해당사항 없음.

###### (2) 국정조사

소방인력이 어떤 장비를 구비하고 현장에 출동했는지, 어떤 기계를 사용했는지 조사된 바 없고 기계식 가슴 압박장치의 경우 세 개 구급대에서만 활용된 것으로 확인됨.<sup>13)</sup>

(3) 공판 및 탄핵심판

해당사항 없음

나.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추가조사의 필요성

소방인력이 어떤 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출동하여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조사된 바 없음

다. 추가조사과제

(1) 추가조사과제의 내용

(가) 현장 출동 당시 약물, 제세동기 장치 사용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조사 필요

(나) (제대로 된 장비 없이 출동하였다면) 경과 및 그 이유

(2) 조사 주요 대상

순번	소속기관명/직책/성명	비고
1	소방조직 내 관계자	

(3) 조사 방법

- 연구용역(소방 구급차 바디캠, CCTV 분석),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은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

(4) 관련 법령

순번	법령명	비고
1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령	
2	119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 참고 자료 목록

순번	참고 자료 명	출처	작성일자
1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023. 1.

5. 중증분류 및 병원이송조치, 사망 판정 등에서의 의문점들

가. 기존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

(1) 특수본 수사

해당사항 없음

(2) 국정조사

① 경상자 이송 전에 사망자가 먼저 이송되는 등 이송 과정 문제 있었음.<sup>14)</sup> 참사현장과 순천향병원이 차로 5분 거리인데 사망자를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고 응급환자를 21km 강동경희대병원 및 11km 거리의 이대목동병원으로 이송한 사실이 있음.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 본부장은 응급환자 이송에 관하여 소방에서 병원을 정하는 것이 아닌 구급상황관리센터 또는 DMAT에 의한 정보를 받아 구급대원이 이송하며 1시 이전까지 모든 응급환자(심정지)를 이미 이송한 상태였고 남은 여력으로 사망자를 순천향병원 영안실로 이송했다고 보고함.<sup>15)</sup>

② 순천향병원에는 보통 때 보다 많은 60여 명의 의료진이 대기 중이었고 지연환자·사망자가 아닌 환자를 보내달라고 하였음에도 지연환자·사망자가 계속하여 보내짐, 무전을 보면 소방서장은 ‘사망자는 순천향병원으로 이송할 것’이라고 지시하고 현장과 구급차에서는 ‘왜 사망자를 먼저 데려가냐’, ‘순천향대학에서 지연환자를 못 받겠대요’ 라는 내용의 무전이 오고가고 있음. 순천향병원에 사망자 이송하라고 말한 사람이 소방책임자임.<sup>16)</sup> 순천향병원으로 이송한 망자와 사상자는 총 81명이고

14) 위 결과보고서 186면

15) 위 결과보고서 374면

16) 위 결과보고서 187면, 314면

이중 77명은 DMAT 의사의 판단으로 영안실로 이송하였고 응급환자 이송과 사망자 이송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맞음.<sup>17)</sup>

③ CPR이 끝난 시간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중증환자 이송은 01:06경까지 진행되었으며 01:45경에도 DMAT팀의 상당수가 현장에 있었음.<sup>18)</sup>

④ 소방구급대가 사망상태의 피해자를 처음 만난 시점이 10월 30일 0시 3분경인데, 이 분에 대한 사망 판정을 구급상황관리센터의 구급지도 의사가 원격으로 한 것임.<sup>19)</sup> 사망자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망했는지, 어떤 응급처치를 받았는지 기록이 부실하거나 없고 소방관들의 기억에만 의존하고 있음.<sup>20)</sup>

⑤ 이태원 사고 이송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환자 접촉 시간이 다음날 오전 6시 이후인 경우도 있었음

### (3) 공판 및 탄핵심판

해당사항 없음

## 나.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추가조사의 필요성

① 피해자들 이송과정 추적 필요, 특히 여러 곳을 거쳐서 이동한 이유, 희생자, 생존자들이 시간대별로 받았던 응급조치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시간대별 현장 응급의료 상황 정리)

② 긴급환자와 응급환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여 병원 이송 순서를 결정했는지, 어떤 기구를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응급조치 중단결정을 내린 것인지, 중증분류체계나 매뉴얼 상으로 실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인지, 원격 사망 판단의 적법성 논의 필요함, 구급상황관리센터의 구급지도 의사가 사망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었을 것이고, 이에 대해 소방이 현장에서 사망자의 신체활동수치, 심전도수치 등 정보를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됨. 국정조사에서는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다. 추가조사과제<sup>21)</sup>

---

17) 위 결과보고서 315면

18) 위 결과보고서 185면

19) 위 결과보고서 205면

20) 위 결과보고서 206면, 292면

**(1) 추가조사과제의 내용**

- (가) 소방청에서 파악한 참사 현장 주변 의료기관 현황
- (나) 이송 요청에 응한 의료기관의 명칭과 처치 가능하다고 답변한 환자의 수
- (다) 이송 요청에 불응한 의료기관의 명칭과 각 의료기관에서 밝힌 사유
- (라) 위 관련 수발신 문서 및 보고내역 일체 확보 필요
- (마) 당일 중증응급의료센터에서 병상정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사유와 문제
- (바) 왜 순천향대 병원으로 사망자가 다수 이송되었는지, 관련인의 판단 근거와 세부 경위

**(2) 조사 주요 대상**

순번	소속기관명/직책/성명	비고
1	보건복지부, 소방조직 관계자	

**(3) 조사 방법**

- 조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실시

**(4) 관련 법령**

순번	법령명	비고
1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지침	

**(5) 참고 자료 목록**

순번	참고 자료 명	출처	작성일자
1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023. 1.

## 6. 참사 당시 신속한 응급의료체계가 작동하였나

### 가. 기존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

#### (1) 특수본 수사

해당사항 없음

#### (2) 국정조사

① 중앙응급의료상황실(중앙응급의료센터)은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sup>22)</sup>

② 사상자 중증도 분류 및 응급처치, 응급환자 병원 이송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음. 보건소 신속대응반 2개팀, 서울·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 14개 재난거점병원의 15개 의료지원팀(서울중증환자공공이송센터 SMICUI 2개팀 별도)이 출동하였음.<sup>23)</sup>

③ DMAT 차량 일지를 보니 현장응급의료소의 책임자를 찾고 임무 배정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sup>24)</sup>

④ 응급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현장 지휘체계, 권한 위임 문제 및 현장에서 소방청과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유기적 협력체계 미비 등으로 사망자 분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자가 더욱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음<sup>25)</sup>

#### (3) 공판 및 탄핵심판

해당사항 없음

22) 위 결과보고서 179면

23) 위 결과보고서 179면

24) 위 결과보고서 187면

25) 위 결과보고서 627면



## 나.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조사 필요성

응급의료를 위하여 현장으로 출동하였던 신속대응반과 의료지원센터 등의 개수 정도만 나와 있으며, 출동 시각과 도착 시간, 인원 등 세부 내역은 나와 있지 않음. 현장으로 출동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음

## 다. 추가조사과제

### (1) 추가조사과제의 내용

(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현장으로 출동하였던 신속대응반과 의료지원센터 등의 출동 과정

(나) 출동 후, 현장에 도착하여 행해졌던 구체적인 행위들을 각 유닛과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세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다) 응급의료 관련 기관인 소방, 보건복지부, 용산구(보건소) 등의 기관들이 현장에서 소통과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정과 조정 활동이 부재하였던 이유

### (2) 조사 주요 대상

순번	소속기관명/직책/성명	비고
1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 DMAT)	

### (3) 조사 방법

조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실시

### (4) 관련 법령

순번	법령명	비고

### (5) 참고 자료 목록

순번	참고 자료 명	출처	작성일자
1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023. 1.

## 7. 참사 당일 용산소방서 책임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① 특수본은 2022. 12. 27.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검사는 2022. 12. 28. 보완 요구, 용산소방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용산소방서 지휘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 송치하였음. 반면, ① 용산소방서 A소방경, 용산소방서 B소방장 : 소방안전근무자임에도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지 이탈, ② 용산소방서 C소방위 : 소방안전대책 책임관임에도 근무자 관리·감독 미실시, ③ 방재센터 D소방장 : 119 신고 접수 소홀로 임의 종결하였음.

② 이와 관련하여, 용산소방서장, 용산소방서 지휘팀장을 비롯해 위 용산소방서 담당자들에 대한 수사기록 확인 및 직무상 비위 발견자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확인하여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IV. 행정안전부에 대한 추가조사과제

1. 국가재난대응체계의 총책임자로서 참사 예방·대비에 관하여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2. “상황관리 철저”라는 추상적 지시 외에 참사 발생 전·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였나
3. 기타 추가조사 과제

1. 국가재난대응체계의 총책임자로서 참사 예방·대비에 관하여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가. 기존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

##### (1) 특수본 수사

①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불송치 각하 결정.

② 특수본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고발과 관련하여, 구체적 근거 없이(추측에 근거) 피의자가 사전에 위험을 예견함이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고발장에 피의자가 구조 관련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불분명하고 의무위반이 인정된다는 가정적 조건으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고발장 기재에도 피의자가 최초 인지한 시점이 23:20경으로 사건 발생 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인 점을 종합할 때, 혐의없음이 명백하거나 고발 내용이 고발인의 추측에 근거한 경우로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③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헬러윈데이 관련 내용을 타 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없어 위험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구조 활동이 종료된 시점을 볼 때 피해자들의 사상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2) 국정조사

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 사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국민안전관

리 일일상황보고서 전파(06시, 21시),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회(09시), 주간에 발생한 주요재난안전상황 정리 및 보고(17시)를 매일 시행함. 일일상황 보고서는 기상상황, 주요 재난안전 관리상황, 재난안전 예방활동, 언론보도 주요사항, 해외재난 등을 고려해야 함.

② 행정안전부는 ‘다중밀집 인파사고’에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고 보고함.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 유형에 인파사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인파사고에 대한 정립된 매뉴얼 부재 및 개별 기관이 마련한 자체 지침도 형식적이며, 인파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임. 특히,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해 지자체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음.

### (3) 공판 및 탄핵심판

-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되었음. 헌법재판소는 재난안전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 사건 참사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음. 사전 예방조치에 관한 주요 결정 요지는 아래와 같음.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특정되지 않은 재난 발생 시 사후적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상민 장관이 이 사건 참사 발생 전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난안전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③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sup>1)</sup>은 지역축제의 개최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피청구인은 위 조항에 근거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축제 중 대규모·고위험 축제에 대해 필요시 표본점검 실시,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 시정 요청 및 조치결과 확인 등을 하였음. 또한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3조의9 제5항에 따라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이 통보·공개된 사실도 있으므로 다중밀집사고 자체에 대한 예방·대비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④ 이 사건 참사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사고는 재난안전

---

1)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법 제66조의11이나 그에 근거한 매뉴얼이 명시한 적용대상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예방·대비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문제 될 수 있음. 그러나 세계 각국의 압사사고 사례 대부분은 구조물, 시설물과 관련이 있거나 인파의 밀집·흐름 유인 요소가 있었던 경우였고, 다중 밀집사고 발생 후 비로소 만들어진 예방 지침과 매뉴얼도 주최자가 있는 행사나 직접적인 관리자가 있는 구조물 내지 시설물 등과 관련된 것이었음. 경찰이 제작한 ‘수익성 행사관리매뉴얼(2005년)’, ‘혼잡경비 실무 매뉴얼(2006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매뉴얼(2014년)’ 등도 주최자가 있는 행사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하여 왔고, 행정안전부에 별도로 보고된 사실도 없었음.

#### 나.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추가조사의 필요성

① 행정안전부는 사실상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예방단계에서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고, 실제로 아무런 사전 조치도 하지 않았음. 예방단계에서 의무 부담에 대한 법적 판단은 특수본 수사결과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실시된 근거들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도 다소 의문임. 또한, 책임자 처벌의 관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추다보니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의 행정안전부가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고,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평가도 없었음.

② 더 나아가, 국정조사의 경우 객관적 자료를 통해 내용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상황실에서 만든 보고서 내용이 전부였고,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불과함. 따라서 재난안전법상 행정안전부가 부담하는 사전 예방 의무의 내용은 무엇인지, 인파사고와 관련하여 어떤 예방이 가능한지, 특히 다중 인파사고와 관련하여 주최자 유무에 따라 상황관리 여부가 달라졌는지 등이 조사되어야 함.

#### 다. 추가 조사과제

##### (1) 추가조사과제의 내용

(가) 재난 예방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① 이번 참사에서 재난안전법이 미리 구체적인 유형별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은 당연히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인지해야 하는 것이 재난안전법의 취지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함.

② 이상민 장관은 이번 참사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행정안전부가 맞는지에 대하여, 국정조사 당시 용혜인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뒤늦게 인정하였음. 그러나 탄핵심판 증인신문에서 참사 당일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행정안전부가 맞다는 상황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인정한 시점은 언제인지(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수습하라”는 대통령 지시 등). 관련 법령의 취지상 불분명할 때는 당연히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인지해야 하는 것이 재난안전법의 취지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함.

③ 행정안전부는 ‘주최자 없는 행사’라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해 왔음. 그렇다면 주최자 있는 지역 축제 행사에 대한 다중 인파사고 위험에 대해 어떻게 인지 및 관리 등을 해왔는지,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지

④ 재난 관련 법령 및 매뉴얼에 비추어 볼 때,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할 책임이 없는지 여부, (부과할 책임이 없다면) 행정안전부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와 관련하여 지도. 점검 내지 시정을 요청한 내역

(나) 재난안전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예방조치를 다하였는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재난대응체계 등을 포함한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함(재난안전법 제34조의 3). ‘국가재난관리기준’에 압사 등 다중운집 재난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마지막 제정된 시점 및 당시 내용, 실효성 여부

② 서울시에 시·도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한 후, 이에 따라 서울시가 시·도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재난안전법 제24조 제1항·제4항). 이 때 시·도안전관리계획에 다중운집으로 인한 사고 등 재난을 포함시키지 않은 경위 및 그 이유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는 용산구에 대해 대규모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 재난 대응 조직 구성 및 정비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재난안전법 제33조의 2).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시의 재난 예방·대응 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였는지 여부, 특히 2022년경 서울 수해 이후 평가 여부 및 평가 내용

④ 서울시 및 용산구는 재난대응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

재난대응활동계획을 확인·점검하고, 필요시 지자체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재난안전법 제34조의 4. 제2항·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위 재난대응활동계획을 확인·점검하였는지 및 시정 요청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

(다) 행정안전부 내 기관의 역할과 기능

① 국정조사 행정안전부의 기관보고서 단 9페이지에 불과함. 정부조직법과 재난안전법에서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 관련 권한과 역할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의 부처(재난안전상황실, 재난정책실, 재난관리실, 재난협력실 등)가 재난 및 안전 주무부처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음(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추상적 의무를 넘어 구체적 의무라는 점을 밝히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②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태원 지구촌 축제나 비슷한 규모의 주최자 있는 행사의 상황관리 여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보고서 작성 시에 언론보도 주요사항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핼러윈데이 축제가 전혀 검토되지 않았는지. 당시 작성자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함.

③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운용 관련: 사회재난 관련 NDMS 구축 및 각 기능 확인, 경찰 및 소방 등 관계기관 합동 훈련 여부

④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관련: 통신 단말기 대수가 부족했고, 현장에서 단말기를 사용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참사 당시 사실상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재난안전통신망과 관련하여 시뮬레이션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행정안전부는 내부지침을 준수하여 감독했는지

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기관별 활용계획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위한 단말기, 지령 장치를 단계적으로 도입·교체하던 중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였고, 그 때문에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 그렇다면 단말기, 지령장치를 “단계적으로” 도입·교체하는 것과 관련된 “기관별 활용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계획은 적정한 것이었는지 확인해야 함.

(2) 주요 조사대상 (직책은 참사 발생 당시 기준)

순번	소속기관명/직책/성명	비고
1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2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성호	
3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박용수	
4	행정안전부/서울상황센터장/박해정	
5	행정안전부/사회재난대응정책관/박종현	
6	행정안전부/재난협력실장/이용철	
7	행정안전부/비상안전기획관/정남균	

### (3) 조사 방법

- 서면제출, 대인조사 등
- 확인해야 할 자료: 탄핵심판 관련 소송기록(특수본·서부지검 수사자료, 각종 기관 사실조회 내용들)

### (4) 관련 법령

순번	법령명	비고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5) 참고 자료 목록

순번	참고 자료 명	출처	작성일자
1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국회	2023. 1.
2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 속 기록	헌법재판소	2023. 5. 23.

2. “상황관리 철저”라는 추상적 지시 외에 참사 발생 전·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였나

가. 기존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



### (1) 특수본 수사

해당사항 없음

### (2) 국정조사

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참사 인지 시점은 22:48경 소방청 상황실로부터 접수받았음. 이후 주로 상황 파악에 머물렀고, 지시 사항은 “상황관리 철저”와 같은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함. 상황실장과 행정안전부장관 보고 시점은 23:31경이었고, 상황관리관 파견은 23:40경이었으며 최초 상황판단회의는 23:55경이었음.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0월 30일 02:30에 국무총리를 본부장, 행안/복지부장관을 차장으로 가동하였음.

### (3) 공판 및 탄핵심판

① 헌법재판소는 재난발생 현황 파악, 관계기관의 대처상황 파악, 내부보고,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유지 등 초동조치 단계에서 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수행하는 역할 내지 기능이 일정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았음.

②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2. 10. 29. 23:20경 무렵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비서관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참사 발생 사실을 처음 보고받았다고 주장함. 2022. 10. 30. 00:12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행정안전부 내부 상황 판단회의에서 논의된 긴급구조통제단의 재난현장 긴급구조활동 내용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신속한 구급과 치료에 만전을 기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보고받고, 01:05경 현장지휘소에 도착하여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음

③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내부 상황 판단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이 상황 판단회의 종료 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를 중심으로 이 사건 참사를 수습한다는 방침이 정하였음.

## 나.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추가조사의 필요성

중대본 가동 지연 및 중수본 미설치가 경찰 및 긴급의료지원단의 파견 등 가용인력 동원 및 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희생자들의 구조와 사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경과와 이유 등을 반드시 규명해야 함. 수백 명이 심정지로 인

한 긴급상황에서 국가재난관리체계로는 소방의 현장지휘와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된 것 이외에 참사 발생 시로부터 3시간 15분이 지난 30일 02:30경 비로소 대통령의 지시로 중대본이 구성된 것이 전부였음.

#### 다. 추가 조사과제

##### (1) 추가조사과제의 내용

##### (가) 긴급구조통제단장 등에 대한 심층 조사 필요

① 재난안전법상 재난현장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는 사람은 긴급구조통제단장임. 그런데 중대본, 중수본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현장의 긴급구조활동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예를 들어, 현장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 투입된 긴급구조 인력이 현장에 진입하는 것조차 어려웠고, 구급차와 병원 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이 부분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

② 정부 기관 간 칸막이와 위계를 고려할 때 타 기관의 인력과 장비 동원과 운용 문제는 현장지휘권을 가진 긴급구조통제단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이기도 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난안전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조정자로 정하여 중대본을 가동하도록 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수본을 설치하여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에도,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발생 시 중대본과 중수본을 가동하여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구조를 신속히 지원하고 총괄·조정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현장지휘에 몰두해야 할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있는 것처럼 전가하고 중대본의 역할은 마치 피해자 지원 등의 사후 수습에 국한되는 것처럼 왜곡하는 발언을 지속해 왔음. 재난안전법상 재난현장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는 사람은 긴급구조통제단장임. 그러나 중대본, 중수본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문제로 인하여 현장의 긴급구조활동도 영향을 받음. 예를 들어, 현장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 투입된 긴급구조 인력이 현장에 진입하는 것조차 어려웠고, 구급차와 병원 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이 부분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

##### (나) 상황실 주요 조치사항의 적절성

“상황관리 철저”, “보고”, “검토” 등 개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기관장뿐 아니라 관련 직원 등 행정안전부의 활동들이 실제 인명피해

를 줄이는데 어떤 역할과 영향을 미쳤고, 재난 대응력이 제대로 발휘되었는지 등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함

(다)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① 행정안전부가 2022. 8. 2.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 이후 소방청 및 경찰청에 대한 직무상 지휘·감독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및 그 범위

② 행정안전부가 경찰청을 통하여 헬러윈데이 다중인파 운집과 관련한 자료를 보고 받았는지, 그렇지 않더라도 헬러윈데이 기간 집회·시위에 대한 경비 관련 보고는 받지 않았는지, 경비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장에게 보고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

[경찰청 장관 승인·보고 사항]

○ 경찰청 장관 승인·보고사항 총 10건('22.11.17. 기준)					
연번	구분	주요 내용	보고일시	근거	소관
1	승인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안 승인 - 경찰관 근속승진 확대(연 1회->2회) 등	'22.8.28.	법령개정	경무
2	승인	◦ 「 <u>재입교도복송자지특수입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u> 」 개정 승인 - 복송자지특입자보상심의위원회운영방식을 비상설로 변경	'22.9.5.	법령개정	인보
3	보고	◦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진행상황 보고 - '경찰관부후보생' 명칭 변경 관련 보고	'22.8.2.	국무회의	경무
4	보고	◦ 감·경 책임수사시스템 협의회 진행상황 - 감·경 협의회 최근 진행상황 및 논의 생전 등	'22.8.4.	국정과제	수혁
5	보고	◦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계획 - 단속기간, 중점단속 대상, 향후 추진계획 등	'22.8.8.	대통령 지시사항	수사
6	보고	◦ 경찰청장 공무국외출장 - 제3회 UN 경찰청장회의 참석 일정 등	'22.8.16.	국외출장	의사
7	보고	◦ 감·경 수사개시법치법위규정개정안관련 경찰청 검토의견 - 조문별 검토 및 실무상 문제점과 대책 등	'22.8.30.	장관요청	수혁
8	보고	◦ 감·경 책임수사시스템 협의회 진행경과 및 쟁점	'22.10.4.	장관요청	수혁
9	승인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승인 - 총경→경무관 승진소회지연수 단축 등	'22.10.7.	법령개정	경무
10	승인	◦ 「자치경찰사무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승인 - 위원장협의회 설치의 법령상 근거 마련 등	'22.10.12.	법령개정	자치

출처: 김용민 의원실

③ 한편 경찰청 정보국은 이 사건 참사 발생 이틀 후인 2022. 10. 31. <정책참고자료>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대통령실에 보고하였는데, 그 문건에 의하면 '집회·시위 대응으로 경찰력이 부족했다는 점이 부각될 수 있다', '대통령실 이전이 근본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크다'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정부 책임론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단체의 동향을 사찰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드러났음. 위 문건이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 경찰국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된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

할 필요가 있음.

**(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사 발생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된 이유**

이상민 장관은 참사 발생 시점으로부터 1시간 이상 지난 23:20경에 비로소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함.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였으나,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도 참사 발생 사실을 늦게 인지한 것임. 재난안전에 관한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참사 발생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은 심각한 문제임. 행정안전부 내 보고체계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어느 단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보고가 차단되었는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음.

**(2) 주요 조사대상**

순번	소속기관명/직책/성명 <sup>2)</sup>	비고
1	용산소방서/서장/최성범	
2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박용수	
3	경찰청장/윤희근	
4	행정안전부/경찰국장/김순호	참사 당시 보임

**(3) 조사 방법**

- 서면제출, 대인조사 등
- 재난안전법상 각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해 보임.
- 확인해야 할 자료: 참사 당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관리 기록, 경찰척 정보국 2022. 10. 31.자 <정책참고자료> 대통령실 보고 문건

**(4) 관련 법령**

순번	법령명	비고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 소속기관명/직책은 참사 발생 당시 기준으로 명기

(5) 참고 자료 목록

순번	참고 자료 명	출처	작성일자
1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국회	2023. 1.

3. 기타 추가조사과제

- 사고 이후 수습 시 유가족끼리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게 했던 이유와 그 타당성에 대하여
- 행정안전부 1대1 원스톱 지원의 내용과 실제 운용 행태(피해자 지원 부분 과제 참조)

## V. 서울특별시에 대한 추가조사과제

1. 인파 운집에 따른 참사 징후를 조기에 확인하거나 대처하는데 실패한 이유
2. 서울시는 참사 대응 과정에서 무엇을 하였나
3. 6호선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는 왜 이루어지지 않았나, 무정차 통과했다면 무엇이 달라졌나

### 1. 인파 운집에 따른 참사 징후를 조기에 확인하거나 대처하는데 실패한 이유

#### 가. 기존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

##### (1) 특수본 수사

해당사항 없음

##### (2) 국정조사

①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방역 관련 대책을 용산구와 논의한 바는 있으나, 2022년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관련하여 용산구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거나 안전대책을 협의한 적은 없음.

② 핼러윈 축제 인파와 관련하여서는, 서울시 산하 또는 소속 기관인 서울교통공사와 용산소방서에서 다수 인파 운집을 예상하고 각각 특별운송계획과 소방대응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서울청에서 용산경찰서에 핼러윈 데이에 대비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면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을 참조로 한 문서가 있음.

##### (3) 공판 및 탄핵심판

해당사항 없음

#### 나.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추가조사의 필요성

① 서울시는 핼러윈 기간 다중인파 운집을 예상하지 못했고 주장하면서 참사 징후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임.

그런데 (i) 2014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핼러윈 데이가 있어 왔고, (ii) 서울시는 핼러윈 데이 다중인파운집을 이유로 용산구청과 2020년, 2021년 2년에 걸쳐 코로나 방역을 함께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iii) 2022년 핼러윈 데이에는 10만 인파를 예상한다는 각종 뉴스 보도가 있었고, (iv) 핼러윈 데이 안전사고(압사) 관련 경찰의 보고서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전달, 서울시 상부로 보고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인파운집을 예상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믿기 어려움.

이에 서울시가 예년과 다르게 2022년 핼러윈 축제와 관련하여 용산구와 안전대책을 협의하지 않은 이유와 서울시가 핼러윈 축제의 다수 인파 운집을 예상하고도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은 이유가 밝혀져야 함.

② 오세훈 시장은 국정조사에서 수차례 핼러윈 데이 다중인파 운집에 관한 서울특별시 내 상부(국장, 과장급)의 인식과 그 이하 직원 간 인식차이가 컸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인파운집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 현장 상황 인식이 달랐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국정조사에서는 안전총괄실을 비롯해 서울시 재난 안전담당부서 내 직원들이 핼러윈 데이 인파운집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에 관한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③ 오세훈 시장(또는 시장단)은 서울특별시 소속 자치경찰위원회를 거쳐 용산경찰서·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림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은 물론 그 외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핼러윈 데이 대비 공문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임. 자치경찰위원회의 해당 보고가 시장단에 언제, 어떻게 보고되었는지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함.

## 다. 추가조사과제

### (1) 추가조사과제의 내용

(가) 서울시 내부 직원들의 사전 인식 및 재난 징후 관련 보고 여부

① 2022년 핼러윈 데이 다중 인파운집 및 그 정도에 관한 안전총괄실 및 기타 재난 안전담당부서 내 직원들의 사전 인식 및 재난 징후 관련 보고(안전 대책 마련) 사실 유무

② 2020년, 2021년 헬러윈 데이 코로나 19 방역 시행 당시 대규모 유관기관 합동 순회 단속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인식, 해당 참여자들이 계속 관련 부서에 근무하였는지, (계속 근무한 참여자들이 있는 경우) 해당 참여자들의 사전 인식 및 재난 징후 관련 보고(안전 대책 마련) 사실 유무

③ 실제 재난 징후 관련 보고를 하였다면, 최종 안전대책이나 안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위 및 그 이유

(나)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찰 작성 헬러윈 데이 대비 공문의 전달, 보고 여부

①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로부터 수신한 위 보고서가 서울시 내 언제, 어디까지 전달, 보고된 것인지

② (위 보고서가 서울시 관계자에게 전달, 보고되었다면) 서울시 관계자는 헬러윈 데이 대비를 위한 아무런 안전대책도 수립, 마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다) 서울시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헬러윈 데이를 대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① 서울시에서 지난 7년간 예산을 사용, 집행한 내역

② 지난 7년간 헬러윈 데이 관련 서울시에서 생산한 문서 일체

③ 지난 7년간 헬러윈 데이 기간 치안, 안전 등과 관련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2) 주요 조사대상**

순번	소속기관명/직책/성명 <sup>1)</sup>	비고
1	시장 오세훈	
2	행정1부시장 김의승	
3	행정2부시장 한제현	
4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5	안전총괄실장 안정총괄관 직무대리 장영민	
6	안전총괄과장 이승복	
7	서울시 내 재난안전담당부서 직원들	
8	2020년, 2021년 코로나19 합동 방역 당시 참가한 서울시 내 재난안전담당부서 직원들	



9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위원 (위원장 포함)	
---	-------------------------------	--

**(3) 조사 방법**

- 대인조사 (조사 대상 전원)
- 국정조사 시 제출된 자료 검증

**(4) 관련 법령**

순번	법령명	비고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5) 참고 자료 목록**

순번	참고 자료 명	출처	작성일자
1	서울시 헬러윈 데이 기간 (2020년, 2021년) 코로나 19 방역 관련 자료	서울시 보도자료	

**2. 서울시는 참사 대응 과정에서 무엇을 하였나**

**가. 기존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

**(1) 특수본 수사**

해당사항 없음<sup>2)</sup>

**(2) 국정조사**

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이하 '서울시 조례'라고 함)에는 서울시가 재난안전관리책임자(4조)로 명시되어 있으며, 재난대비(34조), 재난상황실 운영(30조), 통행제한(지하철 무정차 통과) 등의 응급조치(45조)등 구체적 주의의무가 명시되어 있음. 더 나아가, 「서울시 재난대응분야 구조·구급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

1) 소속기관명/직책은 참사 발생 당시 기준으로 명기

2) 참고로, 특수본은 행안부 및 서울시에 대해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 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규모 인명피해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이 없는 등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

하 ‘행동 매뉴얼’이라고 함) 등 관련 매뉴얼에 의하면,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5분 이내에 시장단에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참사 당일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이 서울종합방재센터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30분이 지나서야 상황을 인지하였음. 이후, 행정1부시장은 시청으로 갔고 행정2부시장이 현장으로 갔는데, 현장 도착 시간이 늦어지자 부시장의 상황판단회의를 대체해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현장에서 상황판단 회의를 주재하며 현장을 지휘하였는바, 행동 매뉴얼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음.

② 한편 실무자를 중심으로 서울시 모바일 상황실이 22시 44분에 최초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22시 52분부터 운영되었고, 00시 04분경부터는 주요간부 모바일 상황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음.

③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의 근거는 법령상 강행규정에 해당함(재난안전법 제34조의 8, 재난안전통신법 제16조). 하지만 당일 재난안전상황실의 야간근무자였던 서진원·권영선 증인(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 주무관)은 재난안전통신망 사용법은 숙지하고 있으나, 참사 당일 초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평상시 사용하는 SNS로 상황을 전파하였을 뿐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한 상황전파를 하지 못했다고 증언함. 김의승 행정1부시장은 현재 서울소방대원들에게 재난안전통신망이 아직 전부 보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증언함.

④ 이외에도 비상연락망 작동과 관련해서, 안재동 증인(서울특별시 복지공동체팀장)은 행정1부시장으로부터 따로 참사에 관한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비상연락망도 가동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함. 연락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음.

### (3) 공판 및 탄핵심판

해당사항 없음

## 나.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추가조사의 필요성

① 오세훈 시장과 김의승 행정1부시장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서울종합방재센터로부터 최초 상황 보고를 받은 참사 당일 22시 26분부터 시간 순으로 대응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관련 의무를 대체로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서울시가 제출한 대응 내역에는 구체적인 활동 내역이 무엇이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음.

예를 들면, 재난안전법 및 서울시 조례, 행동 매뉴얼을 비롯한 재난대응 관련 매뉴얼에서 정한 재난수습과 무관한 외부인 등의 출입통제 및 재난현장의 교통통제 등의 응급조치 내지 긴급재난문자(CBS) 송출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았음

이외에도, 재난안전상황실 당직근무자들(재난안전총괄실의 서진원, 권영선 주무관)은 참사 당일 22시 27분경 용산구청에 상황파악을 위한 전화통화를 수차례 시도하고, 22시 44분경 이전에 안전총괄과 재난협력팀장에게 상황을 전파한 것은 확인되었지만, 시장단 및 안전총괄실장 등 간부들에 대한 상황전파는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② 이에 대하여 서울시는 국정조사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서울시의 산하기관이자 긴급구조통제단으로서 현장 대응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서울시는 참사 이후 수습·복구 과정에 집중하는 기관이므로, 소방재난본부(장)의 선조치 후보고 방식으로 이루어진 현장 대응이나 서울시 차원의 대응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함.

그러나 재난안전법상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이 담당하는 긴급구조통제단 외에도 서울특별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이라고 함)를 구성해 시장(또는 부시장 대행)이 이를 지휘하도록 해야 하고, 그 역할로서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재난 수습 총괄·조정 및 필요 조치(예를 들면, 재난안전법 및 재난대응 관련 매뉴얼에는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 및 물자 동원, 응급지원, 대피 명령, 위험구역 설정, 교통통제 등의 응급조치를 규정하고 있음)를 통해 긴급구조통제단의 재난대응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처럼 서울시는 참사 이후 복구, 수습과정에서의 업무 뿐 아니라 재대본 구성 및 재난대응 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해야 함. 따라서 서울소방재난본부의 현장 대응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서울시 차원의 현장 대응이 충분하였다는 시장단의 설명은 믿기 어려움.

③ 한편 서울시는 국정조사(현장조사)에서 행동 매뉴얼과 관련하여, 해당 매뉴얼은 소방 재난본부에서 만든 화재 대응 매뉴얼에 해당할 뿐이고, 통상 2단계 이상 발령 후에 시장단에 전파하는 것이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함

그러나 위 행동 매뉴얼은 화재대응매뉴얼에 해당하지 않음. 위 매뉴얼을 보면, 매뉴얼이 만들어진 목적으로 '서울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인적재난, 자연재해, 국가기반

시설 사고”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으로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재난 유형 등 수많은 변수로 인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매뉴얼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화재대응에만 한정되는 매뉴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행동 매뉴얼상의 2단계 발령은 재난안전법상의 2단계 발령과 달리, 인명 및 재난피해가 일부 발생하는 경우 2단계에 해당하여 시장단에 이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서울시는 소방대응 1, 2단계 발령 여부와 상관없이 인명 및 재난피해가 발생한 이상 시장단에 즉각 상황전파를 했어야 하는바, 시장단에 대한 상황전파가 늦지 않았다는 서울시 주장은 믿기 어려움.

④ 앞서 본 것처럼,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당직근무자들은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법은 숙지하고 있었으나 재난현장 초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SNS로 상황을 전파하였다고 증언하였음.

그러나 서울시가 한 SNS를 통한 상황 전파로는 재난안전통신망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재난의 대응과정에서의 재난안전 관련기관 간 상황의 지시, 보고 및 전파’ 및 ‘재난안전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응급조치’ 등의 활동에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바, 이번 참사의 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⑤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재난안전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거나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적도 없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음.

서울시는 참사 발생 직후인 2022. 11. 16. 종합상황실 재난안전통신망 작업을 실시를 통보하고, 국정조사기간인 11. 21.부터 12. 16.까지 재난안전통신망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애초에 참사 발생 당시 재난안전통신망이 작동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함.

## 다. 추가조사과제

### (1) 추가조사과제의 내용

(가) 참사발생 전, 후 재난안전상황실(당직근무자)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①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당직근무자인 서진원, 권영선(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 주무관)이 참사발생 사실을 처음 인지한 22:26시경부터 참사 다음날 10:00경까지 한 상황전파 및 초동조치 내역<sup>3)4)</sup>

② 위 당직근무자들이 모바일 상황실(카카오톡)이나 SNS, 전화 등을 통해 시장단을 즉각 초대하거나 상황전파를 하지 않은 경위

③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에 비치된 당직근무수칙, 지휘계통 보고 및 관계기관 협조체계 매뉴얼

(나) 참사 발생 전·후 시장단,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유관 부서 공무원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① 참사 당일 22시 44분경 재난협력팀장이 재난 관련 관계관에서 상시 운영하는 모바일 상황실(카카오톡)을 통해 초기 상황을 전파하였는데, 당시 상황 전파를 받은 '관계관'의 범위 및 구체적으로 전파된 내용, 시장단이 전파범위에서 제외된 경위

② 22시 47분경 안전총괄과장이 재난협력팀장을 현장에 우선출동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출동한 공무원의 정확한 대상 및 범위, 현장 도착 후 활동 내역.

③ 행안부가 22시 53분경 서울시 및 용산구에 '압사사고 관련 상황관리 철저 : 상황전파, 상황관리관 현장파견, 재난문자방송 송출, 인명대피' 지시를 내린 이후부터 서울시 재대본 운영이 시작된 다음날 00시 30분경까지 서울시가 행안부 지시에 따라 이행한 내역 및 기타 활동 내역(시장단,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유관 부서 공무원들의 각 활동 내역, 최초 현장출동한 현장 근무조의 활동 내역 포함)

④ 서울시가 응급조치로서 교통통제 및 재난문자 송출 등을 적시에 이행하지 못한 경위

⑤ 23시 00분경 행정1부시장으로부터 재대본 설치 검토 지시를 받았음에도 안전총

---

3) 재난현장 초기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재난안전상황실 당직자들은 피해 확대 방지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하며, 유관부서가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상황 및 요청사항 등을 SNS를 통해 공유토록 SNS 관리책임관에게 지시해야 함

4) 더 나아가, 위 재난현장 초기대응 매뉴얼을 보면, 주말이나 야간의 경우 SNS를 통한 연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상연락망을 통해 간부 등에게 전화상으로 상황을 전파한 후, SNS망을 가동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1단계, 2단계 발령여부와 상관없이 평상시 시장단, 안전총괄실장, 소방재난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기본 SNS망을 유지,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아울러 안전총괄실장은 SNS 가동 후 전화상으로 시장단에 초기보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괄실장(또는 안전총괄과장) 및 시장단이 적시에 재대본을 가동하지 않은 경위

⑥ 서울시는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재대본 구성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재대본 요청 시점과 그 내용

⑦ 행안부가 22시 53분경 재난문자 송출을 직접 지시했으나 서울시는 23시 56분경 재난문자를 발송했는데, 발송시까지 위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각 근무자별 근무 활동 내역<sup>5)</sup>

(다) 재난대비 매뉴얼 숙달훈련을 이행하였는지 여부<sup>6)</sup>

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른 훈련 실시 여부(서울시의 훈련 내역)

② 훈련을 하였다면, 다른 지자체나 행안부,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훈련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라) 재난안전통신망, 비상통신망, 유관기관 간 연락체계 등 재난-안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인프라를 기관 내부에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

참사 당일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의 위치, 운영 여부, 미운영시 그 사유, 참사 이전 서울시 관내 재난·안전사고 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훈련 포함) 이력.

## (2) 주요 조사 대상

순번	소속기관명/직책/성명 <sup>7)</sup>	비고
1	시장 오세훈	
2	행정1부시장 김의승	
3	행정2부시장 한제현	
4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5) 위 재난현장 초기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긴급재난문자(CBS)의 경우 시가 직접 발송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음 재난경보 발령의 경우에만 2개구 이상 지역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이 재난경보를 발령하도록 명기하고 있음.

6) 재난안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14, 서울시 조례 제40조, 「서울특별시 통합위기관리 기본지침(2017.4)」에 따르면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 훈련 포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공무원 등의 위기관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위기유형별 주관부서로 하여금 위기관리 연습 및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7) 소속기관명/직책은 참사 발생 당시 기준으로 명기

5	안전총괄과장 이승복	
6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7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8	재난협력팀장 김준철	
9	안전총괄과 주무관 서진원, 권영선	
10	서울시 내 재난안전통신망 담당부서 직원	
11	기타 참사대응 유관부서 직원	

**(3) 조사 방법**

- 대인조사 (조사 대상 전원)
- 국정조사 시 제출된 자료 검증 (모바일 상황실 카카오톡 내역 포함)

**(4) 관련 법령**

순번	법령명	비고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2	서울특별시 각종 조례 1)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2)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3)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4)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3	재난대응 관련 매뉴얼 1) 재난현장 초기대응 매뉴얼 2) 상황실 운영 관련 규정 3) 서울특별시 재난대응분야 구조·구급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4) 서울특별시 공연, 행사장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4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행안부 예규)	

**(5) 참고 자료 목록**

순번	참고 자료 명	출처	작성일자
1	이태원 사고 수사결과 보도자료	경찰청	2023. 1. 13.
2	전산통신과-23402 공문	서울특별시	2022. 11. 17.

### 3. 6호선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는 왜 이루어지지 않았나, 무정차 통과했다면 무엇이 달라졌나

#### 가. 기존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

##### (1) 특수본 및 검찰 수사

특수본은 당초 서울교통공사 소속 이태원 역장인 송은영과, 동묘영업사업소장인 이권수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음.

그러나 검찰은 기관 간 진술이 상반되는 것은 사실이나, 서울교통공사 측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무정차 요청에 관한 사전 공문을 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음.

##### (2) 국정조사

① 이태원역장은 참사 발생 3일 전인 10월 26일 용산경찰서가 개최한 이태원관광특구 상인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하여 경찰·구청·서울시교통공사·상인연합회 등과 기관 간 협조사항 등 논의한 사실이 있음. 당시 논의사항에는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었는데, 경찰과 상인연합회 측은 이태원 역장에게 무정차 통과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입장이고, 이태원 역장은 무정차 통과를 당시 무정차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방법과 절차를 물어보아 문서로 요청하면 내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을 뿐 무정차 통과 관련 사전협의 및 공식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으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음.

② 용산경찰서는 참사 당일에도 두 차례(21시 38분경 / 23시 13분경) 이태원 역장에게 무정차 운행에 관한 사전 협의를 하였으나, 정상 운영(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다는 입장인 반면, 이태원 역장은 축제 당일 무정차 운행에 관한 협의 요청은 참사 당일 23시 13분이 유일하며,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이태원역에는 승차(귀가)인원이 하차인원보다 많은 상황으로 승객 안전을 고려 무정차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음.



③ 서울교통공사는 기관보고에서 아래와 같은 무정차 통과 관련 규정을 근거로 교통 서비스를 제한하는 무정차 통과는 지하철 이용 승객 안전을 주목적으로 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외부요인(축제, 시위 등)에 의한 무정차 통과는 관례상 유관기관 간 사전 협의 및 책임 있는 자의 공식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해 무정차 통과를 실시하였는데, 10·29 이태원 참사의 경우 유관기관으로부터 당일 사전 협의 및 공식 요청(공문 등)이 없었던 이상 무정차 미실시에 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

**【서울교통공사 무정차 통과 관련 규정】**

- **관제업무내규 제62조(무정차 통과조치)**
  - 운전관제는 승객폭주, 소요사태, 이례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하여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 시킬 수 있다.**
- **영업사업소 및 역업무운영예규(무정차 통과 조치)**
  - 역장은 승객폭주, 소요사태, 이례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안전이 우려될 경우 상황을 종합관제센터에서 보고하고 열차 무정차 통과를 요청할 수 있다.**

(3) 공판 및 탄핵심판

해당사항 없음

**나.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추가조사의 필요성**

① 서울교통공사의 <2019~2022년도 특별수송계획>에 의하면, 교통공사는 코로나19 유행 전 열린 2019년도 핼러윈 축제를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이태원역 등에 대한 무정차 여부 등을 검토하였음.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2019년 핼러윈 축제로 이태원역 승·하차 승객 집중에 대비해, 필요한 경우 인접역 분산하차 유도과 무정차 안내 방송 등을 실시하기로 준비했음(당시 지하철 무정차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역장과 통합관제센터 판단에 따라 이뤄질 수 있었던 것임).

그런데 서울교통공사의 <2022년 특별수송계획>을 보면, ‘2021년에도 핼러윈 기간에 짧은 시간(4h) 동안 승객 폭주, 하차 인원은 20시 이후 최고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2022년도 참사 당일 예상 승객 수로 2019년도 수준(96,845명)’과 대비하여 기재하였음에도, 2019년에 안내 방송 문안으로 ‘무정차 통과 안내’를 준비한 것과 달리 2022년 핼러윈 기간 인접역 분산하차 유도과 무정차 안내 방송 문안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2022년에 무정차통과 계획을 실시하지 않은 경위와 그 이유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② 앞서 본 것처럼, 이태원역장과 상가번영회, 이태원역장과 경찰 사이에 진술이 서로 상반되는 상황임. 따라서 상가번영회, 용산경찰서 담당자(112 상황팀장)의 진술 뿐 아니라, 10. 26. 이태원관광특구 상인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기관별 참석자들을 조사해 누구의 진술이 타당한지, 무정차 통과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오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참사 당일 21시 38분경 경찰의 무정차 통과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당시 이태원역장과 함께 근무했던 이태원역 내 다른 공사 직원들을 조사해 21시 38분경에도 경찰의 무정차 통과 요청이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음.

③ 참사 당일 뿐 아니라 그 전날부터 수 만명의 인파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태원역장이 참사 당일 경찰로부터 무정차 통과 요청을 우선으로 받은 후, 동묘영업사업소장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논의를 했는지, 논의 과정에서 역 밖의 외부 상황을 모니터링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④ 동묘영업사업소장의 경우, 참사 당일 상관(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의 무정차 통과 검토 지시가 있었고, 참사 직전 4시간 동안 4만 3천명이 넘는 인파가 이태원역으로 쏟아져 나왔음에도, 무정차 관련 계획을 세우거나 무정차를 실시하지 않은 경위 및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음.

⑤ 서울특별시는 참사 20여일 전에 개최된 2022년 세계불꽃축제 당시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교통안전 대책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지하철 증회 운영과 안전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한바 있고, 제야의 종 타종행사 대비 합동점검계획에서 막차시간을 연장하고 종각역 무정차 통과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2022년 이태원 핼러윈 기간에 그와 같은 무정차 관련 계획을 세우거나 안전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다. 추가조사과제

##### (1) 추가조사과제의 내용

###### (가) 사전계획 수립 및 예방조치 시행 관련

① 서울교통공사는 2022년 핼러윈 기간 동안 인접역 분산하차 유도 및 무정차 안내 방송 문안을 준비하지 않았는바, 이전과 달리 무정차 통과에 관한 사전계획을 수립

및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

② 서울특별시는 다른 행사 때와 달리 다중인파운집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에 무정차 통과에 관한 계획이나 예방조치를 수립, 시행하도록 관리, 감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나) 무정차 통과 요청에 관한 공방 관련

① 10. 26. 개최된 이태원관광특구 상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상가번영회와 경찰이 지하철 무정차 통과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였는지

② 경찰이 이태원역장에게 2차례에 걸쳐 무정차 통과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다) 경찰의 무정차 통과 요청 당시 참사에 관한 인지가가능성

이태원 역장이 23시 13분경 전후로 경찰의 무정차 통과 요청을 받은 후, 관제실에 어떻게 보고하였는지, 이후 어떤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무정차 통과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 등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사항

(라) 참사 당일 상관의 무정차 통과 검토 지시에 관한 이행 여부

참사 당일 저녁 이태원 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서울교통공사 김석호 영업본부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동묘영업사업소장은 무정차 통과를 실시하지 않았음. 동묘영업사업소장이 실제 무정차 통과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와 같은 무정차 통과 검토에도 불구하고, 무정차 통과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위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

## (2) 주요 조사 대상

순번	소속기관명/직책/성명 <sup>※</sup>	비고
1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 김석호	
2	동묘영업사업소장 이권수	
3	이태원역장 송은영	
4	참사당일 근무했던 종합관세센터 팀장	
5	이태원역 내 다른 공사 직원들	
6	이태원 상가번영회	

7	이태원역 출구에 배치된 8명의 교통경찰	
---	-----------------------	--

**(3) 조사 방법**

- 대인조사 (조사 대상 전원)
- 국정조사 시 제출된 자료 검증
- 특수본 수사기록
- 검찰 수사기록

**(4) 관련 법령**

순번	법령명	비고
1	관제업무내규 제62조 영업사업소 및 역업무운영예규	

**(5) 참고 자료 목록**

순번	참고 자료 명	출처	작성일자
1	<2019~2022년도 특별수송계획>	서울교통공사	

8) 소속기관명/직책은 참사 발생 당시 기준으로 명기

## VI. 용산구에 대한 추가조사과제

1. 헬러윈 데이 인파 밀집을 예견하고도 왜 안전대책에 소홀했나
2. 초기 재난 대응 실패와 임시영안소 운영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3. 참사 발생 후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 운영 경위

### 1. 헬러윈 데이 인파 밀집을 예견하고도 왜 안전대책에 소홀했나

#### 가. 기존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

##### (1) 특수본 수사

특수본은 지역적(이태원), 장소적(좁고 경사진 골목), 시기적(코로나19 거리두기 행정 명령 해제 등) 요인으로 인해 이태원세계음식문화거리 일대에 다중이 운집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사고 전 인명피해 발생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군중이 밀집한 상황이었다고 보고, 박희영 구청장·유승재 부구청장·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을 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음.<sup>1)</sup> 나아가 특수본 및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음.<sup>2)</sup>

① 용산구청은 2022. 10. 15. - 16. 개최된 ‘이태원 지구촌 축제’ 당시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서 관객 과밀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관객이 몰리는 지역은 안전요원을 출동시켜 혼잡상황을 정리하고, 유승재 부구청장은 ‘관람객이 한번에 몰릴 경우를 대비해서 통제를 철저히 기할 것’이라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고, 구청 직원 1,078명 및 총 362명의 안전관리요원, 경찰 경비병력 109명이 투입되었음.<sup>3)</sup>

② 「2022 용산구 안전관리계획」은 2021년 용산구 주요 추진 성과와 관련, 10월 헬러윈데이를 ‘재난취약시기’로 규정하였음.<sup>4)</sup>

③ 2022. 10. 28. 14시 30분경 용산구청장 비서실 직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1) 2023. 1. 13. 이태원 사고 수사결과 보도자료

2) 2023. 1. 20.자 공소장(박희영 외3

3) 위 공소장 16면

4) 위 공소장 17면

용산구청장 비서실장은 ‘할러윈 들썩, 이태원 용산구 방역안전점검 강화(연합뉴스)’라는 기사를 링크하였고, 같은 날 16시 58분경 용산구청 비서실 주무관이 ‘이번 주 할로윈데이 때 SBS에서 시민의식이 부재하여 행정력이 투입되는 현장을 취재한다고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음.<sup>5)</sup>

④ 유승재 부구청장은 1992. 9. 14. 공무원 임용 이래 용산구청에서만 30년간 근무하였고, 2020년과 2021년에도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할러윈데이 관련 대책을 총괄 수립·시행하였음.<sup>6)</sup> 2022. 10. 25.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 시기에도 많은 인원이 몰렸던 상황과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함.<sup>7)</sup> 2022. 10. 27. 긴급대책회의에서는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게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련부서에 협조요청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교통공사, 용산구청 각 부서에 안전조치를 요청함.<sup>8)</sup>

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2022. 10. 29. 18시 40분경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해밀톤호텔 뒤편의 인파로 가득한 사진’ 및 19시 57경 불상자로부터 많은 인파가 모여 있는 이태원 일대 사진을 전송받았음.<sup>9)</sup> 같은날 21시 06분경 비서실 직원들과 함께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이태원은 할로윈으로 난리라 신경쓰이기도 하구요”라고 게시했고, 21시 30분경 권영세 통일부장관 등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인파가 많이 보이는데 걱정이 된다, 계속 신경쓰고 있겠다”라고 게시함.<sup>10)</sup>

⑥ ‘할러윈 대책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용산구청 생활환경팀장은 참사 당일 19시 30분경 ‘소음순찰 실시 특이사항 없으나, ○○○ 주변 인파 많음’이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인파가 밀집되어 있는 사진을 전송하고, 용산구청 언론팀장 20시 31분경 이 사건 사고 장소 입구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21시 24분경 이태원에 10만 인파가 몰린다는 내용의 언론기사 등이 담긴 「할러윈데이 긴급 대책 추진 일일 보고서」를 게시하였음.<sup>11)</sup>

⑦ 건설관리과장은 건설관리과 소속 직원들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참사 당일. 광고물 점검, 불법 노점상 단속 등 진행 내용, 단속 현장 사진 등을 공유하면서

---

5) 위 공소장 25면

6) 위 공소장 27면

7) 위 공소장 27면, 37-38면

8) 위 공소장 31면

9) 위 공소장 40면

10) 위 공소장 40-41면

11) 위 공소장 43면

이태원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진과 이태원축제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음.<sup>12)</sup>

## (2) 국정조사

용산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2년 핼러윈 축제 관련 사전대책회의가 두차례 있었고 유관기관·단체 관련 회의가 있었으나 다중인파와 관련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사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음이 확인됨. 서울교통공사에 다수 이용객으로 인한 전도위험 등을 강조한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인파관리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다중인파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의 대비 조치를 하지 않았음.<sup>13)</sup>

이와 별도로 국정조사에서는 ① 2022. 10. 25. 용산구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유승재 부구청장이 세계음식문화거리의 대규모 인파 운집과 안전의 중요성에 관한 발언한 사실,<sup>14)</sup> ② 2022. 10. 26. 15시 유관기관 1차 회의(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용산경찰서·이태원역장·용산구청(자원순환과))가 진행됐고<sup>15)</sup> 성범죄 예방홍보 활동 협조, 형사·생활안전 합동 단속 협조,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환풍구 추락사 예방 등에 대해 논의한 사실<sup>16)</sup>, ③ 유관기관 2차 회의(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용산경찰서·이태원역장·용산구청(보건위생과))가 진행된 사실,<sup>17)</sup> ④ 2022. 10. 27. 14:30 핼러윈데이 대비 대책회의에서 인파관리에 관해 별도로 점검하지는 않았고 안전재난과는 이태원 일대 시설물 안전점검 등에 대해서만 보고한 사실<sup>18)</sup>, ⑤ 박희영 구청장은 2023. 1. 6.자 2차 청문회에서‘부구청장이 본인이 (점검회의를) 주재하겠다고 저에게 보고함’과, ‘인파 예측은 없었음’, ‘인파가 많이 있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음’이라고 답변하였고,<sup>19)</sup> 22시 51분경 주민에게 전달받아 참사를 최초로 인지했고 당직사령에게 보고받지는 못했으며, 현장 도착은 22시 59경 했고 상황을 인지하고 난 뒤 부구청장과 통화하고 비상동원령을 전파했다고 증언하였음.<sup>20)</sup> ⑥ 유승재 부구청장은 참사 최초 인지 후 간부 및 관련 부서장 소집을 하였고, 이튿날 3시경 용산구청 ‘2분의 1’ 동원령을 내렸다고 증언함.<sup>21)</sup>

---

12) 위 공소장 44면

13)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603면

14) 위 결과보고서 127면

15) 위 결과보고서 127면

16) 위 결과보고서 787면

17) 위 결과보고서 127면

18) 위 결과보고서 128면

19) 위 결과보고서 411면

20) 위 결과보고서 413면

21) 위 결과보고서 416면

### (3) 공판 및 탄핵심판

박희영 외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박희영 구청장·유승재 부구청장·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은 핼러윈데이를 맞아 이태원 일대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정도’ 또는 ‘대규모 압사사고가 발생할 정도’로는 인파가 운집할 줄 몰랐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

그러나 2023. 5. 15. 제1회 공판 중 당직사령 조원재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당직근무자 양월승 및 진승욱이 당일 19시 30분경부터 20시경까지 노점상 계도 및 단속 업무를 수행했고, 이태원파출소 경찰관들과 교통정리까지 수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이들이 20시 40분경 당직실에 복귀하면서 조원재 당직사령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이윤경 주임 역시 ‘이태원 인도와 차도에 인파 밀집, 교행이 힘들다’는 민원 전화를 받고 보고했음.<sup>22)</sup> 이에 따르면 참사 발생 약 1시간 30분 전 인파 운집 상황까지 용산구청 당직실이 직접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함.

### (4) 기타

해당사항 없음

#### 나.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조사 필요성

용산구 공무원 특히 소관 부서(안전재난과) 및 지원 부서(행정지원과)를 비롯하여, 참사 당일 비상대기에 동원되었던 맑은환경과(소음)·자연순환과(청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상황 인식 및 보고 여부에 대하여 조사된 것으로 보이나, 2022년 이전 핼러윈데이 대비 용산구 관련 대책을 수립하였거나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인식 및 인수인계 여부가 명확히 조사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다. 추가조사과제

##### (1) 추가조사과제의 내용

(가) 2020년 및 2021년 민관합동연석회의 당시 참여자들의 인식 인파 운집으로 인한 방역이 주요 대비 목적이라면, 핼러윈데이마다 이태원 일대에 인파 운집에 대한 인식 및 그 정도의 내용이 어떠하였는지 여부.

22) 제1회 공판기록 보고서



(나) 2022년 핼러윈 데이 전 안전사고 관련 인식 여부

핼러윈 데이 외 기간 중 도로과의 세계음식문화거리 노상 현장 시설물 점검 등에서 인파 운집 시 전도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문제제기되었는지 여부. 특히 2022. 10. 15. 및 16. 개최된 '이태원 지구촌 축제' 당시에는 인파에 의한 안전사고를 인식 및 대비하였는지 및 참사 장소를 포함하여 세계음식문화거리에서 이태원로로 내려오는 4개 골목에 인파 관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

(다) 참사 전일(2022. 10. 28.)의 예견가능성

참사 전일은 금요일로 참사 당일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인파 운집과 이에 대한 용산구청의 비상 대기 근무가 이루어졌는데, 이 당시 부구청장 주재로 개설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인파 운집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한 어떠한 상황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라) 참사 당일(2022. 10. 29.)의 예견가능성

참사 당일 용산구청장, 부구청장, 현장에 민원 대응차 출동한 용산구 공무원들,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인파 운집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한 어떠한 상황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마)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간 연락 여부

참사 전일 또는 당일 용산구청장, 비서실/보좌관, 부구청장, 그 외 용산구 간부 중 인파 운집 및 이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에 관하여,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용산경찰서·용산소방서와 업무연락 또는 사적인 연락을 통해 참사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였는지 여부.

(바) 참사 당일 용산구 CCTV 통합관제센터의 활동

참사 당일 용산구 CCTV 통합관제센터의 근무자들이 인파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을 용산구청에 보고하였는지 여부, 또는 구청장 등 용산구 간부들이 CCTV 통합관제센터에 상황 관리를 지시하거나 보고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2) 주요 조사 대상

순번	소속기관명/직책/성명	비고
1	전 용산구 구청장 성장현	2020년 및 2021년 민관합동연석회의 논의 내용
2	2020년 및 2021년 민관합동연석회의 참석자 일동(용산구,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이태원역,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관계자 등)	당시 인파 운집 정도에 대한 예상
3	부구청장 주재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참여자 - 용산구청 홍보담당관, 문화체육과 팀장, 보건위생 과장, 언론팀장, 김낙구 행정지원과장,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생활환경팀장, 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건강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기획예 산과장, 맑은환경과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공소장 42-43면).	상동
4	비서실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참여자	
5	용산구청 맑은환경과 비상대기자 (세계음식문화거리 진입 포기)	
6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비상대기자 (23:00까지 단속계획 수립 후 21:46까지 순찰)	
7	용산구청 당직자 양월승, 진승욱, 이윤경	민원 전화 내용(이윤경), 현장 인파 관리 당시 상황 인식(진승욱, 양월 승)

### (3) 조사 방법

- 직접조사(개별 대인 면담 조사)
- 당시 당직실 민원전화 녹음 여부 확인
- 익명 제보 접수

### (4) 관련 법령

순번	법령명	비고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 제25조의2 등

순번	참고 자료 명	출처	작성일자
1	이태원 사고 수사결과 보도자료	경찰청	2023. 1. 13.
2	박희영 외 공판 모니터링 보고서(제1회 내지 제5회)	민변	2023. 5. - 9.
3	공소장(박희영 외 3)	서울서부지검	2023. 1. 20.
4	위 사건 증거기록	서울서부지검	2023. 1. 20.

## 2. 초기 재난 대응 실패와 임시영안소 운영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 가. 기존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

#### (1) 특수본 수사

① 박희영 용산구청장 및 김재현 비서실장은 참사 당일 20시 30분경 삼각지역 일대에서 대통령 비판 집회 종료 후 20시 59분경 전단지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태원 차도, 인도에 차량과 사람이 많아 복잡하다’는 민원전화를 받고 현장출동을 준비 중이던 당직실 당직사령에게 전단지 수거를 지시하여 당직실 직원들이 인파 밀집신고에 대응하기 어렵게 하였음.<sup>23)</sup>

②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 당일 22시 51분경 이태원상인연합회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22시 59분경 참사 발생 장소에 도착하여 사고 사실을 인식함.<sup>24)</sup>

③ 용산구청 당직실의 참사인지 경과는 아래와 같이 확인됨.<sup>25)</sup>

2022. 10. 29. 22시 16분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용산구청 당직실에서 근무 하던 조원재(용산구청 당직사령), 이윤경(용산구청 당직근무자)은 같은 날 22:20경 당직실 컴퓨터를 통하여 서울시로부터 ‘1보[구조]출동지령 자동상황전파, 상황개요 : [구조] 자동상황전파입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어 재난발생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일시 : 2022-10-29 22:15:05, ○ 발생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7 ○○○○○○ 건물, ○ 신고내역 : 이태원 ○○○○ 앞 골목에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있어 다칠 것 같다. 질서유지 및 통제요청/부상자도 있다 함/, ○ 진행사항 : 출동지령’이라는 내용의 상황전파메시지를 전송받았다. (중략)

23) 위 공소장 46면  
24) 위 공소장 50면  
25) 위 공소장 48-49면

용산구청 당직사령을 비롯한 당직실 직원들은 위와 같은 교육 미비로 이 사건 사고 일인 2022. 10. 29. 22시 29분경 서울소방방제센터 직원으로부터 “헬러원 축제 때문에 인파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압사 당하겠다고 신고가...”라는 말을 듣고도 기본적인 징후접수, 징후파악, 징후전파, 징후보고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용산구청 당직사령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10. 29. 22시 53분경에 이르러서야 행정안전부로부터 ‘1보 서울 용산구 압사사고 관련 상황관리 철저, 1. 10. 29. 22:2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3-7 ○○○ 호텔 옆 골목 일대에서 압사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정보 출처 : 소방청, 지자체) (중략) 끝.’이라는 상황전파메시지를 수신한 후 이 사건 사고 장소로 이동하였다.

## (2)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용산구는 최초 사고 상황 접수가 22시 53분이라고 보고함(행정안전부 문자메시지). 그러나 참사 직후인 22시 27분에 서울시에서, 22시 29분에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용산구청 상황실에 참사 사실을 유선으로 전파했으나 22시 29분 다산콜 처리 담당 당직자(이윤경 주임)가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됨.<sup>26)</sup> 당시 접수 상황에 대해 당직자는 그러한 내용으로 통화한 기억이 없고 당직사령(조원재)은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함. 22시 29분경 서울소방재난본부의 통화를 접수한 당직자는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하였음.

## (3) 공판 및 탄핵심판

참사 당시 당직실에는 조원재 당직사령과 이윤경 주임만 있었고, 진승욱과 김승현(재난담당)은 삼각지역 일대 대통령 비판 전단지 수거를 위해 당직실에서 이석하였음.

22시 20분경 서울시 소방 출동 내역이 자동으로 발신되는 상황전파메시지를 수신했고 당직사령이 이를 확인하고 수신처리했으나, 별도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음.

조원재 당직사령은 2023. 5. 15. 제1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재현 비서실장이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하면서 전단지 수거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함.<sup>27)</sup>

26) 위 결과보고서 121면. 현장조사시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당시 당직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27) 제1회 공판기록 보고서

#### (4) 기타

해당사항 없음

#### 나.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추가조사의 필요성

용산구의 정확한 상황 인지 시점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22시 20분경 상황전파메시지에 관해 단순히 출동상황 자동 공유라는 이유로 간과되었는지, 22시 29분경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유선 상황 공유 시 당직근무 중인 이윤경 주임이 수신한 후 당직사령 조원재와 더불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용산구청장이 22시 51분경 지역 주민으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은 것이 과연 최초 인지 시점인지 등에 관한 의문이 있으나, 관련 형사사건 공판 과정에서는 법률적인 쟁점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로 인해 용산구의 최초 인지시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상황 전파를 받은 22시 53분경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참사 대응의 '골든 타임'을 경과한 시점으로서 적절한 대응 및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더라도 면책될 수 있는 여지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조원재 당직사령은 참사 당일 20시 40분경 '이태원 차도, 인도에 차량과 사람이 많아 복잡하다'는 민원 전화를 받고 현장 출동을 준비중이었고, 21시경 용산구청 지하공영주차장 출차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이석한 시점과 22시 20분경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출동 자동 전파 메시지를 받은 시점에 현장에 나아가 인파 밀집 상황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김재현 용산구청 비서실장이 21시경 전단지 수거 지시를 함으로 인해 본인의 현장 출동이 단념되었는지 여부 및 당직실 근무자 2명이 전단지 수거 작업을 위해 이석한 상태가 추가적인 현장 확인 시도를 단념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참사 당일 20시 30분경 용산 대통령실 일원 비판 집회 종료 후 삼각지역 일대의 전단지 수거 작업을 누가 왜 용산구청장에게 재차 지시함으로써 당직실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 전단지 수거·미화 근무에 동원되었는지, 이로 인해 재난종합상황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잠탈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다. 추가조사과제

##### (1) 추가조사과제의 내용

(가) 용산구의 참사 인지 시점

용산구청 당직실에서 정확한 참사 인지 시각은 언제인지, 22시 27분경 서울시에서 유선 전화를 시도했으나 당시 용산구청 당직실에서 받지 못한 이유, 22시 29분경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상황 전파를 받은 당직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취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22시 51분경 참사 사실을 연락한 '이태원상인연합회 관계자'가 연락한 경위.

(나) 참사 당일 용산구청 당직실의 운영 실태

① 참사 당일 20시경부터 22시 53분경까지의 당직사령 조원재, 이윤경 주임의 상황 인식 및 인파 운집 관련 정보 수신 여부.

② 용산구청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근무수칙, 지휘계통 보고 및 관계기관 협조체계 매뉴얼

(다) 참사 당일 용산구청 유관 부서 공무원들의 현장 출동 여부

① 참사 발생한 22시 15분경부터 22시 53분경까지 용산구청장 및 당직사령 조원재의 현장 출동 외, 맑은환경과·주차관리과·건설관리과·감사담당관 등 다른 용산구청 공무원들의 현장 출동 및 초동조치 여부.

② 참사 공식적으로 인지하였다는 22시 53분경부터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의 현장 대응 및 활동 내역.

③ 참사 당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의 비상 소집 검토·건의 권한 여부.

(라)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실태

참사 당일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의 위치, 운영 여부, 미운영시 그 사유,<sup>28)</sup> 참사 이전 용산구 관내 재난·안전사고 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이력.

(마) 삼각지역 일원 전단지 수거 지시 주체

참사 당일 20시 59분경 용산구청장 및 21시경 용산구청 비서실장이 '(삼각지역 인근) 집회 현장으로 가서 전단지를 수거하라'고 당직사령 조원재에게 지시하도록 한 주체 및 김진호 당시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이 조원재 당직사령에게 21시 이전 최초 전단지 제거 요청을 하게 한 주체

28) 이는 박희영 외 공판 및 제1심 판결로서 일부 정리될 사실관계에도 해당함.

(2) 주요 조사 대상

순번	소속기관명/직책/성명	비고
1	당시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진호	전단지 수거 지시 경위
2	김재현 용산구청장 비서실장	상동
3	박희영 용산구청장	상동
4	이태원 상인연합회 관계자(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22:51경 연락을 하여 준 사람)	참사 인지 경위
5	용산구청 안전재난과 김자운 주무관(재난안전통신망 담당)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운용 등

(3) 조사 방법

- 대인조사 (조사 대상 전원)
- 수사기록·증거기록 검증
- 용산구청 민원전화 내역

(4) 관련 법령

순번	법령명	비고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 제25조의2 등

(5) 참고 자료 목록

순번	참고 자료 명	출처	작성일자
1	이태원 사고 수사결과 보도자료	경찰청	2023. 1. 13.
2	박희영 외 공판 모니터링 보고서 (제1회 내지 제5회)	민변	2023. 5. - 9.
3	공소장(박희영 외 3)	서울서부지검	2023. 1. 20.
4	위 사건 증거기록	서울서부지검	2023. 1. 20.

3. 참사 발생 후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 운영 경위

가. 기존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

### (1) 특수본 수사

해당사항 없음

### (2) 국정조사

2022. 10. 30. 1시부터 10시까지 용산구청 스마트회의실에서 개최된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 논의 결과 ‘사망자 임시 안치시설 지정’ 대상으로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이 지정됨.<sup>29)</sup> 이후 2시 30분경부터 7시 07분경까지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에 구청 직원 80여 명, 모포 107개 지원 하에 시신 45구가 임시 안치됨.<sup>30)</sup>

그러나 유족 증언에 의하면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 임시 안치된 사망자가 재차 다른 병원 영안실로 재이송되었고, 그 과정에서 유족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음.

### (3) 공판 및 탄핵심판

해당사항 없음

### (4) 기타

다수 언론보도에 의하면,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에 희생자 안치 사실을 알고 찾아간 유족들 및 동행인·보호자들에게 ‘신원 확인 중’을 이유로 출입을 봉쇄하고 직접 신원 확인을 차단하였음.

## 나.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추가조사의 필요성

용산구 시설인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을 임시 시신 안치소로 운영하게 된 경위 및 운영의 주체, 운영과정에 관해서는 국정조사에서 충실히 조사되지 못했고, 이후 형사사건 공판에서도 법률적 쟁점이 아니므로 사실관계가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 다. 추가조사과제

### (1) 추가조사과제의 내용

①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을 임시 시신 안치소로 사용하는 결정을 내린 경위 및 그

---

29) 위 결과보고서 267면

30) 위 결과보고서 268면(용산구청 현장조사 보고내요)



적절성

②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의 출입 통제 결정을 내리고 집행한 주체 및 당시 용산구의 역할

③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에서 시신을 타 지역 병원으로 재이송한 결정을 내린 주체 및 경과, 용산구의 역할

## (2) 주요 조사 대상

순번	소속기관명/직책/성명	비고
1	박희영 용산구청장	재난안전대책본부장
2	유승재 부구청장	재난안전대책본부
3	용산구청 기획예산과장	기획업무
4	용산구청 관광체육과 체육시설팀	체육관 운영 경위
5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당시 체육관 집결
6	용산경찰서 현장 관리 경찰관	당시 체육관 집결

## (3) 조사 방법

- 대인조사 (조사 대상 전원)
- 용산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록 또는 회의녹취 검증
- 유족, 생존자 인터뷰 조사

## (4) 관련 법령

순번	법령명	비고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 제25조의2 등

## (5) 참고 자료 목록 - 없음

## VII. 피해자지원에 대한 추가조사과제

1. 유가족에 대한 정보제공이 지연된 문제점
2. 유가족의 신원확인 및 시신인도 과정에서의 문제점
3. 참사 직후 유가족 지원의 문제점
4. 피해자지원체계의 문제점
5.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혐오표현으로 인한 2차가해

### 1. 유가족에 대한 정보제공이 지연된 문제점

#### 가. 기존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

##### (1) 특수본 수사

해당사항 없음

##### (2) 국정조사

##### (가) 현장조사

#### <이태원 참사 현장조사 내용 중 7. 신원확인 및 영안실 배치 부분 참고>

##### 7. 신원확인 및 영안실 배치

1) 신원확인 시간 : 00시30분 (강북삼성병원) 시작 ~ 31일 14시00분 완료

2) 원호로다목적체육관, 순천향 병원 등 각 19개 장소에 191명 과학수사대 출동

- 지문 채취, 미성년자의 경우 DNA

- 이후 복귀하여 돌아가서 신원 확인 시작

3) 그 사이 각 장례식장으로 이송

4) 각 장례식장 관할 경찰에 각 희생자 담당자 지정

-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 01:06 (서울 재난인력) 임시영안소 장소,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3 치과건물입니다.

-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 02:19 (서울시청) 최종 사망자 이송 원호로 다목적실내체육관

-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 02:28 (서울시청) 사망자. 임시영안소로 집결 명령 완료 순천향 간 사망자도 임시영안소로 이송예정

(용산서 무전망) 00:08 (용산서장) 자, 모두 무기침묵하고 용산하나가 지휘한다. 용산 열은 지금부터 나오는 사망자와 CPR 환자를 순천향병원으로 집결토록 해. 그쪽으로 보내. 그리고 순천향대학병원 의사를 현장으로 좀 파견하도록 해. 용산열, 사육?

- 담당 경찰관, 사체검안서가 없는 경우, 해당 관할에서 검안의 요청하여 진행
- 신원확인 결과 통보 받아 유가족에 전달
- 신원확인 결과 타 지역인 경우, 시신 인계

(나) 기관보고

**<행정안전부 보고내용>**

1.범정부 사고 수습 노력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10.30~12.2.)

※ 12.2일부로 중대본 체제에서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국조실)」와 「이태원 참사행안부 지원단」 체제로 전환하여 후속 조치 이행에 행정력 집중

- 개요:국무총리를 본부장, 행안·복지부장관을 차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10.30. 02:30 ~)

\* 1차장 행안부장관(총괄), 2차장 보건복지부장관(치료 및 장례지원)

- 조치사항: 사고 수습에 필요한 범정부 대책 논의 및 결정

2. 중대본 주요 결정사항

-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가애도기간·합동분향소 운영, 장례비·치료비 등 지급 결정 - 다중밀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추진(한국시리즈, 지역축제 등)

-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행안부 지원단 설치 결정 등

**<서울특별시 주요조치사항 중 현장대응 및 상황 전파 (10월 29일- 30일)>**

- 10.29일 22:15분 사고발생 신고접수(119) 이후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현장대응 및 상황전파, 대응 진행

- (사고 대응) 행정1부시장 중심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사고대응

- 정부와 협력하여 사상자 구조, 실종자 접수, 의료·장례지원 등 사고수습

**<서울시 세부조치 사항>**

- 00:30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시작

- 00:41 행정1부시장 > 행정2부시장: 구체적인 현장상황 공유(유선)

- 01:08 시장 > 시민건강국장: 사상자숫자 파악 및 대책 마련지시(유선)

- 01: 09 현장지휘소 4차 상황판단회의 (행안부장관, 2부시장, 소방청장, 직무대리, 소방재난본부장, 안전총괄실장, 소방청 대응국장, 소방재난본부 과장 등)

- 01:12 시장 > 행정안전부장관: 현장 사고수습 내용 공유 및 대책논의(유선)

-01:21 안전총괄실장 > 정책기획관 상황공유 및 대응협조 (유선)

**<용산구 기관보고 질의답변>**

“사고발생 당시 현장 신원 파악 대응” 관련하여 “현장에서의 신원 파악이 중요하나, 유가족 증언이나 인터뷰를 살펴보면 희생자 옆에서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돌려보냈으며, 설문조사 결과 자녀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다른 장례식장이나 영안소까지 보낸 희생자가 46명이 됨. 현장에서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을 막아 하루 이틀을 헤매게 만든 것이 이 참사의 또 다른 고통임.”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서울소방재난본부 주요조치사항>**

<대응3단계 발령(23:48) 서울시 단위 대응체계 확립>

- 부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주요간부, 중앙부처 관계자 등 통합지휘체계 구축
- 대규모 사상자 대응을 위한 서울시 광역 응급의료체계 가동
- 사망자 급증, 임시 영안소 확대 운영(현장, 순천향대병원, 원효로 체육관)
- 사망자 신원확인, 실종자 접수처 및 가족 대기소 마련
- 정확한 대시민 정보제공을 위한 재난현장 언론브리핑 및 언론모니터링

**<대통령 국정상황실 보고내용>**

**1. 초기 대응 (10. 29. ~ 30.)**

- 10. 29. 22:53, 상황 접수(소방청→국정상황실) 및 23:03, 대통령 보고
- ※ 행정안전부(22:57),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23:01)로부터 추가 접수
- 10. 29. 23:21, 대통령 1차 지시 및 23:48, 대통령 2차 지시
  - (1차) 피해시민에 대한 신속한 구급·치료, 헬러원 행사장 안전조치 등
  - (2차) 응급의료체계 신속 가동(응급의료팀 파견 등)
- 10. 30. 00:42, 대통령 주재 최초 긴급 상황점검회의(국가위기관리센터)
- 10. 30. 02:30, 대통령 주재 2차 긴급 상황점검회의(정부서울청사)
  - (최초) 신속한 의료기관 이송·치료, 앰불런스 이동로 확보, 교통 통제 등
  - (2차) 원인·피해규모 및 희생자 신원 신속 파악, 중앙대책본부 가동 등
- 10. 30. 09:45, 대통령 담화문 발표 및 09:58, 이태원 참사 현장점검
  - 국가 애도기간 지정, 장례·의료 지원에 만전, 원인 조사 철저 등
- 10. 30. 10:25, 대통령 주재 중앙대책본부 회의(정부서울청사) - 합동분향소 설치, 특별재난지역(서울 용산구) 선포 등

**2. 희생자 애도 및 사후대책 추진 (10. 31. 이후)**

- 10. 31. ~ 11. 5., 대통령, 서울시·용산구 합동분향소 조문(매일)
- 11. 1., 대통령, 희생자 빈소 조문
- ※ 11. 2., 여사, 희생자 빈소 조문 및 부상자 위문
- 11. 4. ~6., 대통령, 추모 법회·예배·미사 통하여 애도 및 정부 책임 강조
- 11. 7.,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용산 대통령실)
  - 재난안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할 것
  - 안전관리의 권한·책임,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 필요
  - 철저한 진상 규명, 안전관리체계의 전반적 혁신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최선

(다) 청문회

①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현장과 용산 다목적체육관 앞에서 자식의 생사 여부 및 시신을 찾는 가족의 접근을 금지한 것”에 대해 “시신의 신원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얼굴 확인을 원하는 가족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현장 상황관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접근을 막은 것으로 보고받았음”이라고 답변함. 이에 따르면 유가족 관리와 조치사항이 윤희근 경찰청장 선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판단되었고 사후적으로 보고되었음을 알 수 있음.

② 피해자 신원확인 결과를 언론에 공표할지 여부에 관한 지침에 대해 서울시 안전실장은 경찰에서 정했다고 답했고, 청문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본청결정인지 서울청 결정인지 물었으나 윤희근 경찰청장은 별도로 검토한 기억이 없다고 답함.

③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 당일 10시59분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답하였고, 이태원참사 초기에 서울시청이나 행안부로부터 구체적인 지휘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답함. 그리고 당시 현장에서 서울시 요청으로 임시시신안치소를 마련, 유가족대기장소, 실종자 접수센터 마련 등의 역할을 했다고 답함.

④ 2차 공청회에서 생존자들이 사망자 옆을 지키지 못하게 했던 이유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하였으나 여전히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느 주체도 이에 대해 책임지고 설명한 바 없음.

(라) 공청회

① 유가족들은 공통적으로 희생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받지 못했다고 진술함. 또한, 신원 확인 당시 경찰이 시신에 손대지 못하게 해 희생자의 몸도 살피지 못했다고 진술함.

② ◆◆◆ 진술인 (용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따르면, 직접 유가족이 희생자들을 찾아내야 확인이 가능했다고 함. 신원 조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를 밤새 순천향병원 마당에 세워 놓았으며, 아침이 되어서야 기자들을 통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을 알게 되고, 40군데가 넘는 병원에 전화를 했지만 한 군데도 확인해 주지 않았다고 함. 다목적 체육관, 순천향병원, 한남동주민센터, 또 다른 병원으로 찾아다닌 끝

에 12시간 만에 강동성심병원에서 희생자를 찾을 수 있었으며, 곧 연락을 줄 테니 움직이지 말라던 용산경찰서는 아무런 전화도 하지 않았다고 함.

③ ○○○ 진술인(용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따르면, 구급대원들이 누워 있는 사람들을 아스팔트 위에 임시로 눕혀 두었다가 이후 근처의 빈 상가 건물로 옮겼고, 그때부터 상가 안쪽 접근이 제한되었다고 함. 상가 안의 사람들이 옮겨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내 여자친구가 여기 있으니 신원증명을 위해 같이 가게 해달라'라고 남자친구가 말하니 분명 그렇게 해준다고 했음에도, 이후 다른 사람은 갈 수 없다고 길을 막아 결국 남자친구는 구급차에 함께 타지 못하였다고 함.

### (3) 공판 및 탄핵심판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 중 일부

○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참사를 인지한 직후인 2022. 10. 29. 23:22경 군중의 놀림과 끼임 상태가 해소되어 심폐소생술의 실시 등 구조와 함께 환자 및 시신의 이송이 이루어졌으며, 피청구인이 현장지휘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소방의 요청에 따라 경찰의 교통기동대, 차량 및 의무경찰 8개 중대 등이 지원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참사 인지 후 곧바로 중대본과 중수본을 설치·운영하지 않아 긴급구조 및 긴급구조지원 활동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 재난발생 현황 파악, 관계기관의 대처상황 파악, 내부보고,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유지 등 초동조치 단계에서 중대본과 중수본이 수행하는 역할 내지 기능이 일정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2. 10. 30. 01:50경 피청구인이 국무총리 주재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여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수습에 관하여 보고한 점, 곧이어 02:30경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국무총리를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 중대본 운영이 결정된 점, 행정안전부 훈령인 '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호에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 중수본을 중대본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중수본에서 할 수 있었던 재난대응이 중대본 운영의 형태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 (4) 기타

해당사항 없음

## 나.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추가조사의 필요성

### (1) 기존조사의 한계

① <이태원 참사 현장조사 내용 중 7. 신원확인 및 영안실 배치>에 따르면 최초 신원확인은 2022. 10. 30. 00시 30분 강북삼성병원에서 이루어짐. 그리고 원효로다목적체육관, 순천향 병원 등 각 19개 장소에 191명 과학수사대가 출동하여 신원확인을 했다고 함. 성인은 지문을 채취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DNA를 채취한 후 복귀하여 시스템상으로 신원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그러나 유가족들이 희생자가 안치된 병원의 위치 등 희생자의 상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시각은 10월 30일 오후임.

② 당시 현장에서 희생자의 지인이나 가족들이 소방, 경찰, 용산구 공무원 등 관계자들에게 신원을 확인하고 유가족에게 이동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구급차 동승을 요청하거나 이송되는 병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함. 그러나 소방, 경찰, 용산구 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들은 신원확인하지 않았으며 구급차 동승을 거부하고 이송되는 장소나 병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

③ 참사 직후 유가족이 다목적 체육관에 많이 모여 있었으나, 관계 공무원들은 유가족에게 신원확인 해줄 수 없다고 하며 우선 실종자 신고부터 하라고 안내함. 유가족에게는 연락이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후 내부 결정에 의해 희생자들을 다목적체육관에서 각기 다른 병원으로 이송함. 대부분의 유가족은 실종신고를 한 후 집에서 대기하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공식적인 연락이 오기 전까지 계속 대기하는 상황이 지속됨.

④ 또한, 이태원 근처에 장례식장이 있는 병원들이 있었음에도 서울에서 먼 병원으로 이송된 경우가 많음. 희생자와 연고도 없는 병원으로 이송하여 유가족이 시신 인도받은 후 다시 검사에게 요청하여 지역 장례식장으로 이송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음.

그러나 이러한 결정과 이유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조사된 바 없음.

## (2) 추가조사의 필요성

### (가) 현장에서 희생자의 지인 및 유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거부 관련

① 참사 이후 희생자의 신원확인 및 유가족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지시한 것이 누구인지, 그리고 시간대별로 어느 주체까지 보고받고 결정에 동의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② 국정조사내용을 보면 현장에서는 소방, 경찰, 용산구 관계자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사 직후는 해당 관계자들이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음.

③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후에 지인 및 유가족의 접근을 막았었다는 것을 보고받았다고 답하였는데, 누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음.

#### (나) 정확한 신원확인 시간 관련

DMAT 및 과학수사대에 의해 신원확인이 이루어진 시각이 정확히 언제인지, 각기 다른 시간대별로 이루어졌다면 가족들에게 바로 알리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다) 희생자 병원이송 결정 내용 및 유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지연 과정 관련

① 참사 이후 희생자의 신원확인 및 유가족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지시한 것이 누구인지, 그리고 시간대별로 어느 주체까지 보고받고 결정에 동의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② 희생자를 다목적체육관에서 장례식장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은 누가 한 것인지, 가족들에게 희생자가 이송될 병원에 대해서 정보제공하여 가족들이 병원으로 빠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병원이송이 이루어진 후 경찰과 공무원들이 정보를 제공받아 파악할 때까지 가족들에게 정보전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③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따르면, 10월 30일 00시 42분경 대통령 주재 최초 긴급 상황 점검회의(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있었고, 이후 계속 상황점검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유가족 지원에 관한 결정이 특정 기관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④ 서울시 기관보고서에 따르면, 30일 01시 33분 행정2부시장이 시민건강국장에게 “대규모 사망자 발생으로 시신안치 병원확보 지시(유선)”를 4차례 함. 그 후 02시 29분 임시영안실(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을 설치하였고, 02시 30분 행정2부시장이 경찰청 정보관에게 “신속한 사망자 신원확인 지원”을 요청함. 그리고 02시 44분 대통령 주재 긴급현안 회의가 열리고, 회의에서 중대본 구성 의결 및 사고 수습 대응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



집. 당시 이미 신원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서울시에서 시신안치 병원확보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었으므로 유가족에게 희생자 이송병원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한 논의는 02시 44분 대통령 주재 긴급현안회의에서 논의되었거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가동된 이후 회의에서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다. 추가조사과제

##### (1) 추가조사과제의 내용

(가) 현장에서 희생자의 지인 및 유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거부 관련

① 참사 직후 현장에서 희생자의 신원확인 하겠다는 지인들의 신원확인 요청, 이송 병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구급차 동승 요청 거부한 이유 및 이에 대한 논의·결정 내용

② 수습과정에서 다목적 체육관에서 희생자의 신원확인 및 유가족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 과정 및 그 내용

③ 유가족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보고받고 동의한 주체들과 그 내용

(나) 정확한 신원확인 시간 관련

① “참사 현장 > 이태원173 임시영안소 > 다목적체육관 > 장례식장이 있는 병원” 희생자 이송 과정에서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된 시간

② 희생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및 주체들(지자체 공무원, 지역 내 경찰 등), 이들에게 정보공유된 시간

③ 신원확인여부 언론공표에 대한 경찰 및 서울시 논의 내용

(다) 희생자 병원이송 결정 내용 및 유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지연 과정 관련

① 유가족에게 희생자 이송병원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한 논의 및 수습에 대한 세부사항

이 논의된 회의 특정, 논의내용, 결정사항

② 신원확인 후 유가족에게 바로 정보제공하지 않고 다른 기관들이 모두 정보제공 받은 후 가장 마지막에 연락한 이유

(2) 주요 조사 대상

순번	소속기관명/직책/성명	비고
1	소방청	
2	경찰	
3	용산구	
4	서울시	
5	행정안전부	
6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3) 조사 방법

- 대인조사 (조사기관 내 현장실무관계자 및 현장대응 결정권자)
- 유족, 생존자 인터뷰 조사

(4) 참고 자료 목록

순번	참고 자료 명	출처	작성일자
1	국정조사결과보고서	국회	
2	참사 이후 신원확인결과 언론공표 청·차장 지침 문건 일체	경찰청 제23차 국정조사요구자료	2023. 1.

2. 유가족 신원확인 및 시신인도과정에서의 문제점

가. 기존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

(1) 특수본 수사

- 해당사항 없음

## (2) 국정조사

### (가) 기관보고

<p><b>&lt;용산구 기관보고 중 참사 당일 수습사항&gt;</b>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및 자체 대책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시/장소: 10월 30일 10:00, 18:00</li><li>- 주제: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li><li>- 참석: 구청장, 부구청장, 5급 이상 관련 간부공무원</li><li>- 내용: 사고 발생상황 및 조치상황, 사고수습을 위한 대응방안</li><li>- 회의내용: 실종자 접수센터 운영 등 사고수습과 관련된 근무인력 신속지원/ 용산구 애도기간 운영/ 그 밖에 사망자 장례비 지원 및 재난심리상담 지원 등 사고수습과 관련된 사항 등</li></ul>
---

<p><b>&lt;서울경찰청 보고내용&gt;</b> [참사이후 수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응체계 구축/ 사후수습/ 내부심리지원 보고</li><li>- 사후수습: 사상자 유가족 심리치료 연계, 교통안전관리, 유실물 관리(유실물센터 운영, 11.13 이후 용산서로 이관 운영 중 (1,416점 중 448점 반환)), 수사 및 게시글 삭제 등 다각적 수습활동 추진</li></ul>
--

<p><b>&lt;서울용산경찰서 보고내용&gt;</b> [참사 이후 조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현장 수색·상황 관리와 신원확인 등 지원 (00:45경 경찰서장, 용산서 전 직원 비상소집 발령 지시 &gt; 비상소집 응소 직원은 이태원 일대 요구조사 수색과 유류품 수거 업무에 투입)</li><li>- 03:00 경 다목적체육관·순천향대병원에 각각 과장급을 책임관으로 정보·교통 관련 기능 배치, 현장 질서유지와 상황 대비</li><li>- 09:00경 실종자 접수처인 한남주민센터에 한남파출소장 등 배치, 실종신고자 대상으로 신원미상자 신원확인 등 지원활동 실시</li><li>- 유실물센터 운영; 10.31-11.13 까지 원호로 다목적실내체육관에 유실물센터 운영/ 유실물센터 운영 종료 후 미반환 유실물은 용산경찰서로 이전, 변질·부패방지 조치 후 개별 진공 포장하여 보관 중</li></ul>
---

<p><b>&lt;대검찰청 보고내용&gt;</b> [참사 당시 검찰의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검찰청은 참사 직후 대검찰청에 검찰 차원의 ‘사고 대책본부’, 서울서부지검에 ‘종합 대응반’을 설치하여, 변사사건 처리, 영장청구 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음</li><li>- 또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요 사건으로, 현장상황과 연계하여 사고 및 사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시신을 신속히 유족에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직접</li></ul>
--

검시가 필요하므로 희생자 전원에게 대한 직접 검시를 지시하면서, 희생자의 시신을 신속하게 유족에게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만 유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부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참사 직후 전국 19개 검찰청 검사 99명이 직접 검시하였고, 유족이 요청했던 3명에 대해 부검 실시.

- 그 외에 대검찰청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마약과 관련된 별도의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음, 언론에 보도된 광주지검 사례는 개인판단임.

(나) 청문회

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참사 이후 과수대원 200명 가량을 투입하여 신원확인을 하였음. 지문채취 후 병원에 시신을 이송하게 하였고, 유족분들께는 과수계장을 보내 검시 과정을 충실하게 설명하라 하였음.” 이라고 답한 바 있음.

②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인도받은 시신에 옷이 입혀져 있지 않았다는 유족의 제보와 관련하여, 이것이 통상적인 절차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신원확인 과정에서는 지문을 뜨고 코를 이용해서 DNA를 채취하는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시신에 대한 별다른 조치는 없음. 검시를 할 때에는 일반검시 절차와 같이 외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옷을 제거하고 검시를 하고 그 이후 천을 덮어서 인도를 한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답함.

③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권고 사항에 따르면 시신 인도 시 안치 병원과 장례식장 지정을 유가족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장례절차 안내 후 합동분향소 설치에 관해서도 유가족과 협의하도록 함. 그런데 대한민국 경찰은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라 희생자들을 처리했다고 하는데, 이 규칙에도 ‘변사자와 유족 등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음. 근데 이는 안전사고가 아니라 국가에 의한 타살이므로 ‘변사’도 아님. 어떤 정치적 의도는 없었는지?” 라는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음.

④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청 차원에서 유가족들이 시신 인도 및 유류품 인계 과정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의문과 부당한 조치들에 대해서 경찰에서 소상히 설명하고 브리핑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대해 “유가족 전담팀을 둔 이유가 유가족들을 돕기 위함이며,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음.”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유가족이 신원확인 및 시신인도 받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경찰은 조사도 하지 않았고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밝힌 바 없음.

(다) 종합의견

#### 4.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

##### (1) 시신·유류품 확인 표준처리절차 마련

○ 참사 발생 이후 시신확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가지가 모두 탈의된 채로 유가족에게 인도되었는데, 이는 각 병원의 검시과정에서 외상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옷이 모두 탈의되었고, 이후 시신에 천을 덮어 유가족에게 인도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검시 절차에 따라 옷이 모두 탈의되는 경우에도 유가족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하거나 피해자 및 유가족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시신이 인도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유가족이 자신의 가족을 확인할 목적으로 임시 안치소 등에 찾아 갔으나 통제를 받아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피해자 휴대폰의 주인 및 유가족이 확인된 상황에서 휴대폰을 유가족에게 즉각 전달하지 않고 발인일이 되어서 전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피해자 사망 이후 시신확인 과정에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신·유류품 확인 표준처리절차를 마련하고 담당자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시신 검시 과정에서 인도주의적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보건복지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과 서울시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정부합동 ‘사회재난 피해자지원 안내서’ 등에 사회적 재난의 희생자에 관한 인도적 조치의 절차 및 관련 기관의 의무에 대해 잘 설명되어 있음.

- 뿐만 아니라, 전문가 공청회에서도 사회적 재난에서 희생자의 경우, 사법검시를 넘어 행정검시에 대한 제안도 있었음.

- 사회적 재난에서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의 시신 인도 및 장례 과정에서의 기존 변사사건 중심의 처리 규칙을 넘어서 인도주의적 참여 등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행정 검시를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신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3) 공판 및 탄핵심판

해당사항 없음

##### (4) 기타

해당사항 없음

## 나.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추가조사의 필요성

### (1) 기존조사의 한계

① 유가족은 희생자가 병원에 도착한 후 한참이 지나서야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한 경우가 대다수임. 당시 유가족들은 희생자의 몸을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못해서 몸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신원만 확인한 경우가 대다수임. 그런데 이때 희생자의 옷이 일부 또는 모두 벗겨져 있는 것을 확인한 유가족이 많음. 속옷까지 벗겨져서 나체인 경우가 있다는 점, 병원에 일찍 도착한 유가족 중 병원에서 희생자의 옷을 가위로 자르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검안과 검시 과정에서 희생자의 옷을 탈의했을 가능성이 높음.

② 국정조사결과보고서에서도 “각 병원의 검시과정에서 외상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옷이 모두 탈의되었고, 이후 시신에 천을 덮어 유가족에게 인도된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하였음.

③ 그러나 일부 유가족 증언에 의하면 검안과 검시를 두 번씩 진행한 경우도 있다고 하며, 희생자의 옷이 탈의된 정도가 각기 다르다는 점에서 희생자별로 검안과 검시가 통일된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2) 추가조사의 필요성

#### (가) 검안과 검시의 정확한 내용 및 유가족에 대한 사후 통보 결정 이유 관련

① 실제로 검안과 검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희생자마다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검안과 검시 진행에 대한 정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함.

②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청문회 당시 답변을 보면 당시 유가족에게 배치된 경찰들에게 일관된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당시 압사사건임이 명백한 상황이었는에도 불과하고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라 유가족이 신원확인하기도 전에 검안과 검시를 진행한 후 사후적으로 유가족에게 알리는 방식을 택한 결정 과정과 이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③ 희생자의 목에 칼로 그은 상처가 있거나 신체의 색깔이 일부 다르고 악품냄새가 나는

경우(이종철 유가족)가 있었다는 점에서 검안과 검시 과정에서 또는 그 전이라도 희생자 시신에 대한 별도의 검사나 조치가 있었는지 상세한 조사가 필요함. 대검찰청 국정조사 보고에 따르면 검사 99명이 직접 검시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검시에 참여한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세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검시를 진행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임.

④ 또한, 유가족이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희생자의 신체를 살피지 못하게 하고 만지지 못하게 하였다고 함. 이러한 제한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나) 경찰과 검찰의 부검 안내에서의 문제 : 부검 권유 및 마약 언급 관련

① 유가협에서 유가족에게 희생자에 대한 부검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마약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에 관해 조사했을 때,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경찰 또는 검찰이 부검을 권유한 건이 최소 18건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sup>1) 2)</sup>

② 경찰 또는 검찰이 구체적으로 ‘마약’을 언급하며 희생자의 마약 복용 가능성을 시사한 사례는 모두 5건이었음.

③ 윤희근 경찰청장은 2022. 11. 12.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희생자에 대한 마약 부검에 대해 “부검을 실시한 이유도 사망 원인을 찾기 위한 것이지 의뢰 내용에 마약은 언급조차 없었다”고 밝혔으며,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은 2022. 11. 29. 국회에서 열린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당시 마약 관련 보도가 있었고, 검사가 부검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 보도를 설명한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음.

④ 유가족에게 부검권유가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부검 권유가 특정 유가족에게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함. 특히, 경찰과 검찰이 할로윈 축제 당시 마약단속을 위한 계획을 세웠는데, 부검을 권유할 당시 희생자들의 사망원

---

1)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자체 조사 자료

2) - 어떤 유가족에게는 경찰과 검사가 찾아와 하루에 두 번씩이나 부검 권유를 한 사례도 있었음. 참사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30일 오후 2시께 경찰 한 명이 희생자가 안치돼 있는 병원 안치소에 찾아와 유가족에게 부검 의향을 물은 뒤, 같은 날 저녁 7시30분께 또 검사가 찾아와 부검 의향을 물었음.

- 이미 검시와 유가족의 얼굴확인까지 마친 희생자에 대해 경찰과 검찰 6~7명이 찾아와 부검 의사를 물은 경우도 있었으며, 소속이 다른 두 경찰이 따로 찾아와 의무인 것처럼 부검을 제안받은 유가족도 있었음. 경찰이 부검을 제안한 정도를 넘어서 부검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됨.

인과 마약관련성에 대해서 수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⑤ 희생자들이 남긴 400여점의 유류품에 대해서 마약검사를 했는지 여부, 했다면 왜 검사를 한 것인지 누가 결정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다) 희생자 유류품 인계 문제 관련

① 유가족 증언에 의하면, 희생자 핸드폰을 용산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었으나 수사 중인 물건이라고 인계하지 않았다고 함, 이후 핸드폰을 조사한 후 장례가 진행되던 중 돌려주었다고 함.

② 경찰이 일부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포렌식을 한 사실이 확인됨.<sup>3)</sup>경찰이 아이폰 공기계의 비밀번호까지 풀어서 누구에게 구입을 했는지 최초 아이폰을 판매한 사람까지 알아본 경우도 있음. 왜 희생자의 핸드폰에 대해 포렌식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그 정보를 어디에 이용했는지 어떻게 보관, 폐기했는지 등에 대해 전혀 알려진 바가 없음. 해당 유가족도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바가 없음.<sup>4)</sup>

③ 용산서는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유실물센터종료 후 미반환 유실물은 용산경찰서로 이전, 변질·부패방지 조치 후 개별 진공 포장하여 보관 중이라고 보고하였음. 용산서에서 희생자의 유류품에 대해서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유류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이유와 조사내용, 해당 조사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장 등 어떤 기관들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라)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경찰조사 및 진술서 작성

① 유가족이나 생존자들이 대부분 참사 당일이나 다음날에 경찰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됨.

② 유가족의 경우 시신을 인도받고 연고지 장례식장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를 받고 진술서에 싸인을 해야한다고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유가족 대부분이 경찰조사에 응한 것으로 확인됨.

3) 해당 문자메세지 내역이 존재함.

4) - 어떤 유가족은 29일 밤에 희생자와 통화도 했고 참사 이후에도 희생자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를 걸었으나 나중에 확인해보니 핸드폰에 수발신 내역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함. 29일 수발신 내역이 왜 삭제된 것인지, 누가 삭제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도 있음.



③ 한 생존자의 경우 현장상황 확인을 위해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서 당일에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지역이 다른 경찰에서 다시 조사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와서 두 차례 경찰조사를 받은 경우도 있음.<sup>5)</sup> 두 번째 조사에서 유가족과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 유가족 앞에서 왜 당신만 살아남았다고 생각하는지와 같은 질문을 받음.

④ 미성년자 생존자의 경우 경찰이 직접 찾아와서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보호자 동석도 없이 조사함.<sup>6)7)</sup>

⑤ 참사 직후 경찰조사는 유가족과 생존자에게 트라우마를 가중시킴으로써 2차 가해적인 성격이 있었음.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일괄적인 경찰조사를 누가 지시하고 결정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다. 추가조사과제

##### (1) 추가조사과제의 내용

(가) 검안과 검시의 정확한 내용 및 유가족에 대한 사후 통보 결정의 이유

① 희생자에게 시행된 검안과 검시의 방식에 대한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었는지 여부

② 실제로 검안과 검시에 참여한 인원과 방식 (신원이 확인된 상황이었으므로 개별파악 가능할 것)

③ 유가족이 도착하기 전에 검안과 검시를 진행하고 유가족에게 사후 동의받는 방식으로 진행한 이유 및 유가족이 희생자 시신 확인하지 못하게 한 이유

---

5) 생존자 000님

6) □□□님 유가족

7) <유가족협의회 자체 설문조사 내용 중>

"10월30일 오후 아이가 참사로인한 부상으로 입원중이었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예고도 없이 경찰이 찾아와서 부모인 저와의 동석을 허락하지않고 아이만 옆 병실로 데려가서 개별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 06년생 미성년자인 아이의 보호자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석을 허락치않았고 아이만 따로 데리고가서 50분간 조사를 하는것이 합법적 행위인가요?

2. 조사 직후 아이가 강한 불쾌감을 제게 표현하였습니다. 그 시간은 이태원에 같이 갔던 친구들의 생사가 불확실한 상황이라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낯선 경찰과의 조사시간은 이후 아이의 심리 회복에 매우 안좋은 영향을 끼쳤으리라 여겨집니다.

3.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으로 조사를 한것인지 그당시 기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 경찰과 검찰의 부검 안내에서의 문제 : 부검 권유 및 마약 언급

- ① 유가족에게 부검 안내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침이나 지시사항이 별도로 있었는지 여부
- ② 부검을 권유하거나 일부 유가족에게 마약 가능성 등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안내가 이루어진 이유
- ③ 희생자들이 남긴 400여점의 유류품에 대해서 마약검사를 실시했는지 여부

(다) 희생자 유류품 인계 문제

- ① 희생자 유류품 인계와 관련해서 지시사항이나 매뉴얼이 있었는지 여부
- ② 유가족이 희생자 물품 인계 요청했을 당시 거부한 이유
- ③ 용산서 등 관계 기관에서 희생자의 유류품에 대해서 조사했는지 여부 및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유류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이유와 조사내용, 해당 조사에 대해서 서울청장 등 어떤 기관들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라)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경찰조사 및 진술서 작성 관련 문제

- ①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일괄적인 경찰조사에 관한 논의 및 보고 내용
- ②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경찰조사 당시 질문 등 세부 내용, 조사 내용이 활용된 내역, 보관 상황 등

(2) 주요 조사 대상

순번	소속기관명/직책/성명	비고
1	경찰(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2	검찰	

(3) 조사 방법

- 대인조사 (검사와 검안을 진행한 담당자들, 유가족에게 부검 권유한 경찰 및 검찰, 용산경찰서에서 유류품 조사한 경찰, 유가족 및 생존자 조사한 경찰)
- 유족, 생존자 인터뷰 조사
- 서울경찰청 등에서 검사와 부검에 대해 논의한 자료 및 지침 관련 자료 조사
- 용산경찰서에서 유류품 보관 및 조사 관련하여 작성한 자료 조사
-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경찰조사에 관한 자료 조사

(4) 관련 법령

순번	법령명	비고
1	변사사건 처리규칙	행정규칙

(5) 참고 자료 목록

순번	참고 자료 명	출처	작성일자
1	국정조사결과보고서	국회	
2	유가족협의회 자체 설문 결과	유가족협의회	

3. 참사 직후 유가족 지원 부분

가. 기존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

(1) 특수본 수사

해당사항 없음

(2) 국정조사

<p><b>&lt;행정안전부 보고내용&gt;⑧</b></p> <p>1. 범정부 사고 수습 노력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10.30.~12.2.)</p> <p>※ 12.2일부로 중대본 체제에서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국조실)」와 「이태원 참사행안부 지원단」 체제로 전환하여 후속 조치 이행에 행정력 집중</p> <p>- 개요:국무총리를 본부장, 행안·복지부장관을 차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10.30. 02:30 ~)</p>
--

\* 1차장 행안부장관(총괄), 2차장 보건복지부장관(치료 및 장례지원)

- 조치사항: 사고 수습에 필요한 범정부 대책 논의 및 결정

## 2. 중대본 주요 결정사항

-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가애도기간·합동분향소 운영, 장례비·치료비 등 지급 결정 - 다  
중밀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추진(한국시리즈, 지역축제 등)

-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행안부 지원단 설치 결정 등

## 3. 특별재난지역 선포 (10.30.)

- 개요: 사고의 수습과 후속조치를 위해 '서울시 용산구' 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4. 국가애도기간 운영 (10.30- 지원 사항: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정부합동  
분향소 설치·운영비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11.5)

- 배경: 희생자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애도와 추모를 표하기 위하여 국가애도기간을 지  
정

※ (선례) 천안함 관련 희생자 애도를 위한 국가애도기간 지정(\* 10.4.25.~4.29, 5일간)

- 기간 / 조치사항: \* 22. 10. 30. ~ 11. 5.(총 7일간) / △정부·지자체 등 조기계양 △공무  
원 추모리본 패용 △합동분향소 설치\* 등 \* 합동분향소 : 전국 71개소 운영, 총 17만 9천여  
명 조문

## 5. 희생자 등 지원

(장례 및 치료 지원 (복지부, 서울시))

- 장례 지원: 지자체 공무원-유가족간 1:1 매칭하여, 지원 필요사항 확인 및 유가족 장  
례 지원\*

\* 사망자 유족에게 장례절차 안내, 희망 장사시설 연계, 장례비 지급절차 안내 등

- 치료 지원: 중상자는 1:1, 경상자는 병원 단위로 담당자 배치하여 지원

- 심리 지원: 민관 합동 통합심리지원단, 기관별 자체 프로그램 등을 통

해 유가족부상자, 목격자, 현장대응인력 등 대상 심리상담 제공

##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보고내용><sup>9)</sup>

### 1. 초기 대응 (10. 29. ~ 30.)

■ (2차) 원인·피해규모 및 희생자 신원 신속 파악, 중앙대책본부 가동 등

○ 10. 30. 09:45, 대통령 담화문 발표 및 09:58, 이태원 참사 현장점검

- 국가 애도기간 지정, 장례·의료 지원에 만전, 원인 조사 철저 등

8) 위 결과보고서 161면

9) 국정조사결과보고서 135면

○ 10. 30. 10:25, 대통령 주재 중앙대책본부 회의(정부서울청사) - 합동분향소 설치, 특별재난지역(서울 용산구) 선포 등

- 청문회 당시 유가족 명단 관련 질의응답<sup>10)</sup>

① 유가족 명단 공유 경위에 대하여 경찰, 서울시, 행안부의 진술이 엇갈림. 정확한 경위 확인되지 않음.

②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자료에 장례는 기본적으로 유족들 뜻에 따라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족의 의사를 물어보았는지”에 대해 “초기에 장례를 치르면서 한 분 한 분 여쭙어 볼 상황이 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였음.

### (3) 공판 및 탄핵심판

해당사항 없음

### (4) 기타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sup>11)</sup>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 박종현 담당

<질문> 이번엔 행안부 쪽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차관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중립적인 표현을 쓰시기 위해서 '사망자'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어제 해주셨는데 현재 119, 112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혹시 피해자라든지, 희생자라든지 표현을 바꿀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답변> 용어 문제는 일단 이것, 이태원 사고, 이때 '이태원 사고', '이태원 참사', '이태원 압사' 여러 가지 용어가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생략) 우리 내국인도 많이 가지만 외국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명 뒤에 '참사', '압사' 라는 용어를 쓰면 그 지역 이미지에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켜 준다, 그러면 가장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한테 갈 것이다, 그래서 압사나... 그러니까 압사, 참사 이렇게 하면 '그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인가 보다.' 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이태원 사고로 하자.' 라고 합의를 봤는데, 이런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아예 지명을 빼자.' 세월호나 이런 것은 사실은 지명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명을 빼는 방안도 의견을 제시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명을 빼고는 '헬러원 압사', '헬러원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 위 결과보고서 445면

이것은 또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태원 사고’ 라고 합의하는 데 걸린 시간은 길지 않았고요. 이렇게 정의가 됐고요.

그리고 피해자 사망... 피해자, 그리고 또 희생자 이런 표현은 최대한, 이제 왜 이런 것을 지적을 지금 하고 계시냐면 이게 정부가 이것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용어를, 그러니까 희생자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책임을 추궁 안 당하고 사망자라는 표현을 써서, 쓰면 책임... 희생자라는 표현을 쓰면 책임을 지게 되고 사망자라는 표현을 쓰면 책임을 안 지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어쨌든 저희는 재난 관련해서는 용어를 최대한 중립적으로 쓰는 그런 일종의 내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었고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질문> 그리고 두 번째는 용어 관련인데요. 재난 관련 용어는 어쨌든 부처 내부에서는 통일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최대한 중립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피해자와 희생자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신 근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피해자나 희생자는 중립적이지 않다는 근거, 그렇게 아주 심도 있게 그렇게 논의를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그런 표현보다는 사상자, 사망자, 부상자, 이게 좀 더 중립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 나.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추가조사의 필요성

① 유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중대본 차원에서 논의되고 관리된 것으로 보이나,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하였음.

② 유가족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유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유가족의 의견을 듣고 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하나 이러한 프로세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예를 들면, 사망자의 신원과 유가족 정보가 확인된 후 유가족에게 1:1 공무원이 매칭되었음. 당시 유가족들은 다른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유가족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고 싶다고 요청함.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하자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 다른 유가족에게 전달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함. 어떤 유가족은 장례식장 1층을 이용하던 중 2층 장례식장에 다른 유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계단에서 다른 유가족을 만날 수 없다고 하며 제지하여 만나지 못함. 유가족들은 장례식장에서부터 지속적인

11) 2022.11.01 행정안전부 기자 브리핑

로 같은 지역에 있는 또는 어떤 유가족이라도 연락처를 공유받고 싶다는 뜻을 경찰, 용산구청, 서울시, 행정안전부에 전달함.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유가족 명단이 없으니 알려줄 수 없다는 답을 반복함. 희생자 장례식장에서 대통령이 근조화환을 모두 보낸 것으로 봤을 때, 서울시만 유가족 명단과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실이 아는 내용을 행정안전부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려움. 특히, 유가협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모일 수 있도록 유가족 연락처를 공유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으나 행정안전부는 유가족 명단이 행정안전부에 없다고 답함. 그러나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에게 유가족 명단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장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확인해볼 수 있었음. 행정안전부는 확인도 하지 않고 일관되게 정보제공을 거부하였음.

또한, 유가족이 신원확인을 하기 전 이미 10시 25분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합동분향소 설치가 결정되었는데, 정부나 지자체는 유가족에게 합동분향소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정부합동분향소 설치 이후 정부합동분향소 설치에 대해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음. 당시 합동분향소 설치사실을 기사로 알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당시 몰라서 분향소 방문하지 못한 유가족도 많음. 「서울시 재난대응분야 구조·구급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및 「재난현장 초기대응 매뉴얼」 따르면 분향소 설치 시 유가족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으나, 당시 정부는 유가족에게 어떠한 의견도 묻지 않았음. 합동분향소는 영정과 위패 없이 국화만 놓는 방식으로 운영됨으로써 유가족들의 공분을 샀음.

③ 국정조사에서는 유가족 지원에 관한 계획 및 논의 등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유가족 지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논의되었을 뿐 하나의 쟁점으로 조사되지 않았음.

④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피해자지원에 대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유가족에 대한 초기 지원 등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했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이태원 참사에서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다. 추가조사과제

### (1) 추가조사과제의 내용

#### (가) 유가족 연락처 공유 거부

① 유가족 연락처 공유 거부 결정이 이루어진 이유와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유가족 연락처 공유 문제 또는 유가족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한 논의여부, 논의 내용, 결정 사항 및 결정 주체

② 유가족의 요청에 대해 공무원들이 방침상 알려줄 수 없다는 일관적인 답변을 한 점을 고려했을 때, 유가족 연락처 공유에 대한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이러한 결정이 어떤 주체에 의해서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는지 조사가 필요함.

**(나) 정부합동분향소 설치 관련**

① 합동분향소 설치 시 유가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지적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지적되었으나 무시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또한, 위패와 영정 없는 분향소 운영을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정부합동분향소 설치에 관한 논의 및 결정 사항

**(다) 명칭 사용 관련**

① 참사 초기 ‘참사’ 대신 ‘사고’, ‘희생자’ 대신 ‘사망자’라는 명칭 사용 결정, 근조리본을 거꾸로 달아야 한다는 결정이 있었음.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 당시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대응정책관 박종현에 따르면, 이러한 명칭 사용 등은 특정 주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중대본 회의 또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임.<sup>12)</sup> 이러한 지시가 어떤 이유로 결정된 것인지, 용어에 관한 내규가 정확히 어떤 내규를 의미하는지, 명칭을 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심경보다도 경제적인 파급효과 등이 먼저 고려되었는데 회의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은 고려된 바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참사, 피해자 등 용어 사용에 관련된 내규, 해당 주체가 논의된 회의 내용 및 결정 사항

**(2) 주요 조사 대상**

순번	소속기관명/직책/성명	비고
1	행정안전부	

12) 2022.11.01 행정안전부 기자 브리핑



2	서울특별시	
3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3) 조사 방법

- 대인조사 (기관별 조사 주요 대상 내 관계자들)
- 유가족 인터뷰 조사

(4) 관련 법령

순번	법령명	비고
1	「서울시 재난대응분야 구조·구급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재난현장 초기대응 매뉴얼」	

(5) 참고 자료 목록

순번	참고 자료 명	출처	작성일자
1	국정조사결과보고서	국회	
2	서울시 재난대응분야 구조·구급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서울시	
3	재난현장 초기대응 매뉴얼	서울시	

4. 피해자 지원 체계 및 구체적 지원의 적정성

가. 기존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

(1) 특수본 수사

해당사항 없음

(2) 국정조사

(가) 기관보고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용산경찰서: 현장 출동직원 심리상담에 대한 계획 보고</li> <li>- 용산구청: 재난상담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 보고</li> </ul> |
|--|

- 서울소방재난본부: 10.29 참사 관련 소방공무원 PTSD 관리조치에 대해보고(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마음건강서비스 지원, 심리안전 프로그램 운영)
- 서울특별시: ① 유가족 및 부상자 지원 (심리지원) 유가족·부상자·현장인력·시민 등 대상 6,660건 상담(우울, 불안, PTSD 등)/ (소상공인 지원) 용자(2%) 지원 및 용산구 특별교부 70억 (소상공인 지원은 11.28경부터 시행) ② 유가족, 부상자 등 지원체계 구축(1:1 전담공무원 파견, 전담공무원 지원 관련 체계화 필요,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체계적인 재난심리지원 필요, 안정적인 추모 공간 마련 및 유가족 소통지원 필요, 이태원 일대 방문객 및 상인 매출 급감했으나,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 근거 규정 없어 실질적 지원 한계) ③ 개선방안(유가족 지원 전담공무원 파견·운영 매뉴얼 구체화, 재난발생 초기부터 체계적인 재난심리지원 가능토록 개선,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한 추모기록 온전한 보전·관리, 정부·유가족과 소통·협력을 통해 추모 공간, 유가족 소통 공간 조성 지원, 피해 소상공인 대상 직·간접 지원 및 지원근거 개정 건의)
- 서울경찰청: 내부 심리지원 (마음동행센터 상담사 8명, 민간 상담사 약 20여명이 출동경찰관 근무지로 직접 방문하여 심리지원 실시, 2022.11.1.까지 327명이 지원받음)

(나) 공청회

- 000 진술인(용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① 시체 검안서를 확인했으나 ‘10시 15분 이전 추정’ 이라고만 적혀 있어 정확한 사망시간을 알고 싶으나 구급일지 확인이 어려움. ② 참사 이후 가족은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 그러나 의료비 지원에 대해 행안부 원스톱지원센터 사전 안내 등이 전혀 없었음. 뉴스를 통해 지원 사실을 인지하여 직접 수소문함. 서류 접수 과정에서도 통합지원센터, 구청, 시청에서 안내하는 사항이 모두 달라 혼란스러웠으며 그 과정은 너무 힘들었음.
- ◇◇◇◇ 진술인(용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① 구급일지 요청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서울소방청, 경찰청,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등이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 계속 지연되었음. 그러나 결국 받은 구급일지에도 사고현장에서부터의 기록은 없었음. 사고시점부터 순천향병원까지 기록을 찾기 위해 다시 한 번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연번 기록이 분실되어 신원 확인이 안 되어 줄 수 없으며 구급차 블랙박스도 없어졌다는 답변을 받았음. 또한 희생자에 대한 기록에 대해 바로 경찰청, 용산경찰서, 성남중앙경찰서, 국과수에 정보공개 신청을 했고 12일 정보공개 요청 결과를 통지받았으나,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을 보여줄 수 없다는 사유로 비공개 처리되었음. 짧은 시간 동안 경찰의 행정 처리와 부실 수사, 수사 방치에 진절머리가 나게 치가 떨림을 느꼈음. 지금까지도 희생자의 행적을 알 수 없음.

- □□□ 진술인(용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트라우마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 요청을 했더니 당장의 상담은 힘들다며 2주 후에 시작하자고 함. 2주 후에 방문한 곳에서는 같은 자리에서 아빠와 사춘기 아들을 동시에 상담하며 번갈아가며 같은 내용을 물었음.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조서를 꾸미는 정도의 상담이었으며 2명이 상담을 받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20분이었음. 더 큰 문제는 ‘잠을 못 잔다. 경찰의 잦은 연락이 감시를 받는다는 느낌이 든다’ 라고 상담과정에서 말을 했는데, 집에 돌아오니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상담 다녀오셨더라고요. 저희가 연락하는 것이 많이 불편하셨나 봐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됨.

- ◆◆◆ 진술인(용산 이태원 지역 상인): 이태원 상권이 다 죽었는데 새로운 계기가 필요함. 정말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며, 현장에 와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바람. 유가족분들께서도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서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람.

### (3) 공판 및 탄핵심판

해당사항 없음

### (4) 기타

- 행안부 지원단 피해자 지원 관련 자료 확인이 필요함.

## 나.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추가조사의 필요성

### (1) 재난 피해자 지원의 적정성

① 피해자의 범위는 유가족, 생존자, 구조자, 목격자, 상인, 주민, 체류자 등 매우 광범위하며 그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주체들에게 필요한 지원의 내용을 조사하고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함.

② 또한, 재난 피해자 지원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

③ 여러 기관들이 의료·심리지원,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나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음. 참사 초기에는 가장 긴급하게 의료·심리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만족도가 높지는 않음.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받은 지원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피고 미흡한 점에 대해 조사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④ 지원에 있어서 수요 및 필요한 지원의 내용 조사, 지원계획 수립, 시행기관들에 대한 안내, 피해자들에 대한 안내 및 정보제공, 지원에 대한 통계 및 평가, 향후 개선방안 등의 절차를 통해 수정·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전히 이러한 프로세스 없이 일시적으로 지원하기에 급급함.

⑤ 행안부 지원단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각 기관들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임. 의료·심리 지원의 경우에는 행안부, 복지부, 지자체, 병원, 건강보험공단의 유기적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피해자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피해자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2) 의료 및 재난심리지원의 적정성

①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3조의2에서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를 규정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이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상담활동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음. 이에 따라서 참사 초기 심리회복을 위한 행안부와 지자체 등의 계획이 나왔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지금까지도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② 행안부는 관계 기관 간의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유가족 지원을 하겠다고 공표했으나, 유가족 증언에 따르면 참사 초기 유가족들이 연락하기 전까지는 의료·상담에 대해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또한, 유가족이 직접 수소문해 알아보고 연락을 한 경우에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행안부, 지자체, 병원마다 안내의 내용이 각기 달라 혼선이 있었음.

③ 생존자의 경우에도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전화상담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했는데 정신과 약물복용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안내받지 못하는 등 유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3) 기타 유가족 지원의 적정성

① 행안부와 서울시는 참사 초기 유가족에게 1:1 공무원을 배치하여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움. 그러나 장례비와 구호금을 지급하는 것 외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한 바 없음.<sup>13)</sup>

② 유가족은 장례 이후 “구급일지 등 희생자 관련 기록 요청, 일상생활지원(돌봄지원, 생계지원, 실업급여 등 고용지원), 의료비 신청 등”에 있어서 세부적인 안내가 필요했으나, 지원절차 및 지원내용에 대한 안내 및 정보제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1:1 매칭 공무원의 지원은 물론 정부 기관에서 전체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계획 설명 브리핑 등도 없었음, 전체 유가족에게 문자로 지원 사항을 안내하는 정도에 그침.

③ 결국 유가족은 개별적으로 각 기관에 연락하여 정보를 제공 받거나 지원에 대한 세부 안내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마저도 기관별로 알고 있는 사항이 달라 혼선이 있었음.

### (4) 생존자 지원의 적정성

①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당시 참사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생존자에게 CPR 등 응급조치를 시키는 등 참사 현장에서 생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② 참사 이후 정부는 외상이 있는 생존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였음.

③ 생존자의 경우 외상이 없더라도 인파가 밀집한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점 등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생존자들이 겪는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생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 및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④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생존자에 대한 부분을 별도 주제로 선정하여 생존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도 생존자를 별도의 주제로 놓고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

13) 장례지원의 경우에도 유가족에게 장례를 빨리 치르도록 재촉하거나 유가족이 감시받는다느 느낌을 받을 만큼 유가족을 지켜보는 정도의 활동을 하는 데 그쳤음.

#### (5)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

- ① 소방, 경찰, 용산구 공무원 등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의 심리지원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음.
- ② 그러나, 각 공무원들에 대한 심리지원이 현재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③ 현장 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은 참사 이후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태원에서 이루어지는 할로윈 축제에서 다시 안전 및 인파관리 업무 등을 담당함.
- ④ 따라서 공무원들에 대한 심리지원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 정부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

#### (6) 상인 등 공동체 회복 관련 지원의 적정성

- ① 서울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 매출이 이태원 참사 이후 평균 약 60% 감소한 데 대해 서울시가 긴급 자금 융자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었고, '이태원 상권 회복자금' 100억 원을 조성하여 이태원 1·2동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중소업체 총 2409곳에 자금을 빌려준 바 있음. 또한,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 화폐인 용산구 서울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였음. 이 밖에도 서울시는 상권 회복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음.
- ② 서울시는 국정조사에서 참사 피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소상공인에 대한 직·간접 지원에 관한 근거를 추가하는 개정작업을 논의하겠다고 보고 한 바 있음.
- ③ 이러한 정책이나 계획의 이행내용, 그 효과와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다. 추가조사과제

#### (1) 추가조사과제의 내용

**(가) 재난 피해자 지원이 적정했는지**

① 지원에 있어서 수요 및 필요한 지원의 내용 조사, 지원계획 수립, 시행기관들에 대한 안내, 피해자들에 대한 안내 및 정보제공, 지원에 대한 통계 및 평가, 향후 개선방안 등의 절차 등 피해자 지원체계 전반

**(나) 의료 및 재난심리지원이 적정했는지**

① 재난 참사 피해자에 대한 의료·심리 지원 계획, 실제 지원 내역(통계 등), 자체 평가 내용, 장기계획 수립여부 조사

② 재난 피해자 심리상담 업무를 담당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세부계획의 내용, 심리상담 담당자들이 받은 사전 교육 및 매뉴얼, 자체적으로 진행한 심리상담 이행 및 그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조사

③ 참사 초기 국가트라우마센터 내 상담 내용 비밀 유지 위반에 대한 조사

**(다) 기타 유가족 지원이 적정했는지**

① 행안부와 서울시의 1:1 매칭 공무원을 통한 지원 계획 세부 사항 및 시행 내용, 자체 평가 내용

② 의료·심리 지원을 제외한 일상생활지원에 관한 세부 계획, 행안부와 서울시가 유가족 지원에 관해서 검토하고 협의한 내용, 장기계획에 대한 논의나 수립이 있었는지 여부

**(라) 생존자 지원이 적정했는지**

① 생존자가 겪고 있는 참사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조사

② 외상이 없는 생존자에게 필요한 의료·심리 지원의 내용

③ 생존자에 대한 지원계획 세부 내용, 생존자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내용

**(마)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이 적정했는지**

- ① 소방, 경찰, 용산구 공무원에 대한 심리지원 세부 내용
- ② 공무원에 대한 중장기 심리지원 계획
- ③ 반복되는 현장활동 대응에서 겪을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 및 필요한 지원내용에 관한 조사

**(바) 상인 등 공동체 회복 관련 지원이 적정했는지**

- ① 정부 및 서울시, 용산구의 상권 회복 계획 및 방안, 시행내용, 효과
- ② 재난안전관리법 등 법령상 상인지원 규정 마련을 위한 정책논의 여부

**(2) 주요 조사 대상**

순번	소속기관명/직책/성명	비고
1	행안부 지원단	
2	보건복지부	
3	소방	
4	경찰	
5	서울시	
6	용산구	
7	건강보험공단	

**(3) 조사 방법**

- 대인조사 (지원을 받은 대상자 및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 심리상담 담당자들, 지원을 받은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들)
- 연구용역 (대상자별 심리상황 및 심리지원 등에 관한 연구/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등/ 상권회복을 비롯한 재난 참사 이후 공동체 회복에 관한 연구)

**(4) 관련 법령**



순번	법령명	비고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5) 참고 자료 목록

순번	참고 자료 명	출처	작성일자
1	정부 이태원 사고 대국민 심리 지원(재난구호과)	행정안전부	2022.11.15
2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	행정안전부	2022.10.30-12.2
3	이태원 참사 사상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2023.3.19
4	서울시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 계획 및 시행 내용	서울시	2022.11-2023.

5.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혐오표현으로 인한 2차 가해

가. 기존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

(1) 특수본 수사

- 해당사항 없음

(2) 국정조사

①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2차 가해 관련 진영논리로 현수막을 붙이고 있는 것에 대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요구에 대해 철거를 했으나 계속 다시 부탁하고 있다고 하며 2차 가해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며 구청과도 소통하여 챙기겠다고 하였고, 유승재 용산구청 부구청장도 동일한 취지로 답변함.

②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2차 가해방지와 관련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유가족의 상처에 대한 2차 가해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에서 수사·입건을 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단속 활동 지속하고 있으며, 중대본에서 비서진, 정책보좌관에게 특별지시를 했고, 2차 가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개인정보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업무협조 중이라고 함. ‘참사 후 열흘간 2차 가해와 관련된 댓글 7,000만 건에도 행정안전부 2차 가해 대책 내용은 없으

며 2차 가해 예방 보도자료 한 번도 내지 않았고, 경찰의 사이버 대응단은 겨우 5인이며 대응실적은 3건 수사 중, 차단요청은 568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총 34건이 수사 중에 있다는 답변을 함.

③ 국정조사 2차 공청회에서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참사 이후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무차별적인 인격 모독이 계속되고 있으며, 가장 큰 2차 가해는 장관, 총리, 국회의원들의 말이었다고 진술함.

④ 2차 가해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방안에서는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협업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경찰 차원에서는 2차 가해자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적인 현수막 게시에 대한 즉각적인 철거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라고 함.

### (3) 공판 및 탄핵심판

김미나 창원시 의원은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유가족에게 혐오표현을 함으로써 모욕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결정을 하였음.

#### 나. 기존 조사의 한계 및 조사 필요성

① 참사 초기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용산구청장, 국회의원 등은 참사 발생의 책임을 회피하고 참사의 원인을 희생자에게 돌리는 발언을 하였고, 유가족이 진실규명을 요구하자 유가족이 희생자의 죽음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모욕적 발언들을 지속함. 해당 발언들은 세월호 참사 때도 동일하게 문제가 되었던 내용이나 공직자들에 의해 명예훼손적 발언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짐.

② 녹사평역에 위패와 영정이 있는 시민 분향소가 차려진 후 보수 단체와 보수 유튜버들이 분향소 앞에서 유가족들을 향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고, 야당이나 유가족을 지원하는 단체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음. 이에 대해 유가족은 고통을 호소하였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회는 용산구와 서울시에 철거 등 조치를 요청했으나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 유가족은 신자유연대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자유연대가 설치한 현수막의) 주된 내

용이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비판하는 것이고,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나 유가족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며 기각함.

③ 온라인상에서 핼러윈데이 축제와 참사 자체, 희생자, 유가족을 모욕하는 혐오표현이 양산되었고, 희생자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유포되고 신상이 공개되었으며, 이로 인해 희생자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 등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짐.

④ 159번째 희생자의 경우 생존자로서 죽은 친구들을 모욕하는 댓글들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음.

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혐오표현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없고, 피해자들은 계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특히 생존자의 경우 2차 가해성 발언으로 인해 공론장에서 참사에 대해 발언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

#### 다. 추가조사과제

##### (1) 추가조사과제의 내용

(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혐오표현은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였으며, 어떤 추이로 전개되는지

(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혐오표현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처리, 진행되고 있는지(법원의 재판결과 포함)

(다) 명예훼손 및 혐오표현으로 피해를 본 재난 피해자를 위한 피해회복방안은 무엇인지

(라) 재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혐오표현은 어떻게 방지될 수 있는지

##### (2) 조사 주요 대상

순번	소속기관명/직책/성명	비고
1	행안부 지원단	
2	보건복지부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	방송통신위원회	
5	서울시	
6	용산구	

**(3) 조사 방법**

- 대인조사 (조사 대상 내 관계자, 생존자, 159번째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한 유가족)
- 연구용역 (재난 피해자 명예훼손 등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뉴스 댓글의 비정상적 패턴 실태조사 및 분석)

**(4) 관련 법령**

순번	법령명	비고
1	형법	
2	정보통신망법	

**(5) 참고 자료 목록**

순번	참고 자료 명	출처	작성일자
1	김미나 창원시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문	법원, 유가협	2023.09.20
2	신자유연대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판결문	유가협	2023.02.06